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배 현 숙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국내와 해외의 미용직업교육 체제와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제도 비교 분석

-프랑스어권 국가를 중심으로-

2017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뷰티융합학과 피부미용학전공

백 지 연

국내와 해외의 미용직업교육 체제와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제도 비교 분석

-프랑스어권 국가를 중심으로-

배 현 숙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뷰티융합학과 피부미용학전공

백 지 연

인 준 서

백지연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논문개요

과거 공식적인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제도의 부재로 인하여 무자격자들의 피부 관리가 성행하면서, 법적 제도권 내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객관적으로 직업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자격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뷰티 산업 분야에서 피부 미용의 직무를 수행하는 피부미용사는 과거에는 헤어와 관련된 일반 미용사 자격에 포함되었지만 뷰티 산업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2008년부터 미용사(일반) 자격에서 분리되면서 미용사(피부) 국가자격이 제도화 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미용직업교육 및 피부미용사 자격제도를 직업교육 체계와 국가자격제도가 발달된 프랑스어권 국가들과 비교하여 한국의 국가자격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문적인 자격제도의 확립과 직업교육 및 자격제도의 바람직한 연계체계의 모색을 도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른 여러 선진국의 자격제도와 관련된 연구에 비해 국내외에서 프랑스어권 국가의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증 제도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영어권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한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어권 국가를 중심으로 미용직업교육과 자격제도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 문헌연구(Documentary study)를 주요 기반으로 진행하였다. 국내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제도, 직업교육 등을 중심으로는 기존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을 활용하는 방법을 택하였고 프랑스어권 국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자료들의 활용도가 낮은 편이므로 해외 논문, 연구 보고서, 간행물, 관련 법령, 각종 정부 기관들의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하여 2차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여 비교한 결과, 한국의 미용직업교육과 자격제도는 프랑스어권 국가에 비해 불안정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 문제는 미용직업교육체제와 관련이 있다. 한국의 피부미용사 자격취득 교육과정은 단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학위와 피부미용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프랑스어권 국가들은 중등교육과정에서부터 미용직업교육이 시행되며 지정된 교육연한과 과정을 이수한 뒤 국가시험이나 연방시험을 통해 학위 및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장기교육과정에 자격제도를 포함시켰다. 교육과정에는 이론교육과 실기교육, 실무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도제훈련제도 및 실무교육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의 실무경험을 효과적으로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가에 따라 실무교육은 자격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반면 한국은 학위와 자격과의 연관성이 낮은 편으로 미용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학위와 함께 미용사(일반) 면허가 수여되는데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프랑스어권 국가들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국가가 승인한 대학의 미용학과나 직업학교에서 국가직업능력표준(NCS)제도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일-학습 병행 과정평가형 자격은 피부미용사 자격이 아닌 미용사(일반)으로, 피부미용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부미용사 자격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위과정은 아니다. 한국에서도 피부미용교육과정에 학위-자격 연계 제도를 도입한다면 장기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 고급 미용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프랑스어권 국가들의 직업교육체제에서 활용되는 일-학습 병행체제 교육이 시행되면 실무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빠르게 습득하여 현장 투입 시 실무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 또한 일-학습 병행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학위-자격 연계 제도를 통해 전문적이고 집약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피부미용사 직업의 전문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국가직업능력표준(NCS)제도가 도입된 지금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 습득한 직업능력과 자격이 평가 절하되거나 자격과 실무 능력의 등가 연계가 낮은 경우 노동시장에서 외면당할 수 있고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문제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안정적인 직업교육과 자격제도를 운영하여 학습자가 노동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취득한 자격을 가지고 활발한 진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미용기기 사용에 대한 문제점과 불명확한 직무 기준이다. 공중위생관리법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피부미용사가 관리를 위해 미용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미용기기 관련 법제가 없다. 피부미용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고, 의료법상으로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이다. 그러나 에스테틱이나 샵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미용기기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다. 남인순 의원(대표 발의) 등 국회의원 15명은 2014년 12월 22일 피부미용기기를 합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중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2016년 현재까지 입법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미용기기와 의료기기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분류 체계와 관련 법규가 제도화되어 안전성이 확보되면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미용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뷰티 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미용기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면 피부미용사들이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생기는 부작용과 유사 의료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안마사와 피부미용사의 직무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안마사들은 마사지나 지압이 안마사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피부미용사는 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마사지라는 용어는 피부미용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며, 고객의 관점에서도 ‘매뉴얼 테크닉’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생소하게 느끼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해도를 높이고 피부미용과 관련된 마사지임을 명시하기 위해서라도 용어 사용에 대한 재고는 반드시 필요하다. 피부미용의 목적과 안마의 목적, 피부미용사의 직무범위와 안마사의 직무범위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여 서로 양립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구체적인 직무범위와 요구 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프랑스어권 국가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피부미용사의 직무범위와 요구 능력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시하는 직무내용은 간략할뿐더러 기기 관련 사항처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어권 국가들의 피부미용사의 직무범위는 넓고 상세한 편이다. 프랑스어권 국가들과 같이 실제 직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술이나 직무범위, 실무 수행에 필요한 요구 능력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문제는 단계별 자격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어권 국가들은 피부미용사 자격을 단계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거나 기본 피부미용사 자격을 기반으로 상위 자격과 전문 직업이 파생되는 반면, 한국에는 피부미용사 이외에 관련 자격으로는 미용장 자격만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미용장 자격은 피부미용장이 아닌 토탈 뷰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미용사 상위 자격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프랑스어권 국가들은 기본 자격 취득 후 상위 단계의 교육과정에 진학하여 고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자격단계 및 수준에 따라 직무범위와 종사할 수 있는 직업군에 차이가 있고 상위 단계의 직업교육은 보다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도 직업교육과정을 세분화하여 단계별 자격제도를 도입한다면 자격의 전문화와 고급인력 배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II. 이론적 배경	6
1. 피부미용사	6
2. 직업교육과 자격제도	12
3. 피부미용사 직업교육과 국가자격제도 관련 선행연구	16
III. 연구 방법	20
1. 연구 범위	20
2. 연구 방법	22
3. 연구 절차	23
IV. 연구 결과 및 고찰	24
1. 직업교육과 자격제도	24
1) 한국	24
(1) 직업교육과 자격제도	24
(2) 미용교육과 자격제도	31
2) 프랑스	35
(1) 직업교육과 자격제도	35

(2) 미용교육과 자격제도	41
3) 스위스	50
(1) 직업교육과 자격제도	50
(2) 미용교육과 자격제도	57
4) 캐나다 퀘벡주	64
(1) 직업교육과 자격제도	64
(2) 미용교육과 자격제도	69
5) 벨기에	71
(1) 직업교육과 자격제도	74
(2) 미용교육과 자격제도	84
2. 피부미용사 직무범위 비교	90
1) 한국	90
2) 프랑스	92
3) 스위스	97
4) 캐나다 퀘벡주	102
5) 벨기에	106
3. 각국의 피부미용사 제도 비교분석	112
4. 한국 피부미용사 자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8
1) 직업교육체제	118
2) 미용기기 사용과 직무 기준	120
3) 직무범위	124
4) 단계별 자격제도	125

V. 결론 127

참고 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프랑스어권 국가의 피부미용 관련 용어	10
표 2. 공중위생관리법이 규정하는 4가지 해당 조건	26
표 3. 피부미용사 국가자격 필기시험 과목	28
표 4. 피부미용사 국가자격 실기시험 과목	29
표 5. 국내 미용관련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교	33
표 6. 동일한 레벨의 자격 및 학력수준 체계	38
표 7. 프랑스의 단계별 미용 자격	42
표 8. CAP 자격시험	43
표 9. Bac pro와 BP 자격시험	45
표 10. RNCP에 등록된 미용 관련 자격	49
표 11. 스위스의 직업교육 체제	55
표 12. 피부미용사 CFC 교과목	58
표 13. 스위스의 미용 관련 국가자격	60
표 14. 피부미용사 BF 시험	62
표 15. 미용 DEP 과정 교과목	70
표 16. 전기 체모 ASP 교과목	71
표 17. 공통과정과 분화과정 교과목	85
표 18. 프랑스어권 언어공동체의 단계별 피부미용 중등직업교육과정	88
표 19. 한국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의 수행준거	91
표 20. RNCP가 제시하는 피부미용사 국가직무능력표준	92
표 21. 미용 화장품 향수 분야 CAP자격의 직무범위	95
표 22. ASE CFC가 제시하는 피부미용사의 직무범위	98
표 23. CFC가 요구하는 직무능력	100
표 24. SCIAN 분류에 따른 피부미용분야	103
표 25. 피부미용사 직업표준이 제시하는 직무능력	104

표 26. CCPQ가 규정하는 피부미용사 직무범위	107
표 27. 프랑스어 언어공동체가 제시하는 직무범위	109
표 28. 피부미용사에게 요구되는 영역별 능력	110
표 29. 각 국가별 피부미용사 교육기관과 자격취득방법	112
표 30. 국가별 피부미용사의 구체적인 직무범위 비교	116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 모형	23
그림 2. 스위스 인구의 언어별 사용지역	50
그림 3. 퀘벡주의 위치	64
그림 4. 퀘벡주의 단계별 교육과정	67
그림 5. 벨기에의 지방정부	75
그림 6. 벨기에의 언어공동체	75
그림 7. 프랑스어 언어공동체의 교육과정	7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기원전 8세기 후반으로 아름다움의 정의에 대한 질문을 처음으로 제기한 사람은 플라톤이었다. 아름다움은 오랫동안 여성과 연관되어 있었고 사회 통념과 시대상에 따라 아름다움에 대한 관념에는 차이가 있었다. 여성들은 16세기에는 얼굴을, 17세기와 18세기에는 가슴을, 19세기에는 다리를 강조하여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19세기 중반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아름다움’은 사회적 관심사로 변화하였고, 패션 잡지와 도시적 생활양식의 등장은 이를 가속화시켰다. 아름다움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고 서로 보고 보이기 위한 것이 되었다. 현대사회에서 아름다움은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경쟁과 같다.(B. Durantet, 2010)

이처럼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추구는 매우 오래 전부터 이루어졌으며, 현대사회에서의 아름다움은 대중적 관심사로 사회적 지위, 성별, 연령을 넘어 보편화되었다. ‘아름다움’은 각각의 개인을 구별하는 수단인 동시에 사회 집단, 성별, 세대 간 다른 형태로 표출되는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다.(G. Vigarello, 2009) 이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산업으로 성장(G. Jones, 2010)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뷰티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관련 종사자의 수요와 공급 또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뷰티 산업은 인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서비스제공에 사용되는 화장품, 미용용품 미용기기 등의 제조·생산·개

발과 관련된 산업(안인환 외, 2011)으로 헤어 미용, 피부 미용,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의 기타 미용 및 화장품 제조 산업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2009년 기준 뷰티 산업 매출액은 약 4조 5,068억에 달한다. 통상적으로 뷰티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뷰티 시장은 현대 사회의 소비자의 니즈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정부는 뷰티 산업이 웰빙 지향, 감성 소비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 수출·관광 콘텐츠로의 중요성 부각 등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이 있음을 인식하여 뷰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 방안을 발표하였고,(보건복지가족부, 2009: 진정화, 2011에서 재인용) 피부미용 분야에서도 신산업 및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의 인력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피부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였다.(차의진 외, 2011)

뷰티 산업 분야에서 피부미용의 직무를 수행하는 피부미용사는 과거에는 헤어와 관련된 일반 미용사 자격에 포함되었지만 뷰티 산업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2008년부터 미용사(일반) 자격에서 분리되면서 미용사(피부) 국가자격이 제도화 되었다.

한국기술자격 검정원은 피부미용의 범위와 직무를 얼굴 및 신체의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 보호, 개선, 관리하기 위하여 각 부위와 유형에 적절한 관리법과 기기 및 제품을 사용하여 피부미용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기관련 사항은 국내 법규상 미용기기의 분류 자체가 없고 개정된 시행규칙은 안마사법과 부딪히게 되는 등 갈등구조에 서있는 실정(배윤희, 2011)으로,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부터 다양한 문제점들이 거론되고 있다.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피부미용사는 전문 직업의 영역에 포함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열악한 직업 환경과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및 지위는 피부미용사 직업 전문성의 향상과 뷰티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어권 국가들의 미용직업교육 체제와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제도를 국내 피부미용사 직업교육 및 국가자격제도와 비교하여 한국의 현행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우리나라의 미용사 자격제도가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불안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음은 국내 피부미용사 관련 선행연구에서 이미 지적한바 있다. 이러한 상황의 원인 중 하나로 자격제도 존치의 정당성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학문 활동이 대체적으로 미약했다는 점과 더불어 외국의 미용사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활동이 미진했었다는 점도 그 이유가 되기에 충분하다.(이한웅, 2008) 피부미용은 범국가적으로 아름다움의 추구라는 원초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자격제도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 보편성보다는 상대적 특수성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 비해 미용직업교육과 국가자격제도가 발달된 프랑스어권 국가의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제도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높은 수준의 미용직업교육 체제와 안정적인 피부미용사 자격제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어권 국가들은 국내 연구에서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프랑스만이 예외적으로 국내 피부미용사 자격제도 관련 연구에서 주요 담론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오래된 자료 및 잘못된 정보의 재인용 등의 문제로 인하여 기존 연구의 학술적 활용도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스위스는 이미 직업교육체제 및 화장품 및 에스테틱 문화가 상당히 발전된 국가로 알려져 있고, 벨기에와 캐나다 퀘벡 역시 한국과 비교하였을 때 높은 수준의 직업교육체제와 국가자격제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이 중 연방국가인 캐나다의 경우 직업교육체제와 자격제도가 주정부마다 차이가 있는데, 국내 연구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영어권 지역의 피부미용사 제도에 관한 내용만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어권 지역인 퀘벡주 관련 정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고의 목적은 보다 안정되고 전문적인 피부미용사 자격제도의 확립 및 미용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바람직한 연계 체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과 프랑스어권 국가의 미용직업교육과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제도를 고찰하는 데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과 프랑스어권 국가의 피부미용사의 직무범위와 피부미용사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현행 국가자격제도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분석하고 적용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주요국과의 비교 연구 대상을 넘어 국내와 프랑스어권 국가의 구체적인 직업교육 배경 및 교육정책, 각국의 국가자격제도에서 파생된 특성을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더불어 기존의 영어권이 아닌 프랑스어권 국가로의 미용직업교육 유학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피부미용사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아폴론에게 미학적 완벽함을 부여했다. 그는 젊었고 컸으며 근육이 발달했고, 검은색 긴 머리에 쥘을 가지고 있었다. 수세기가 지난 지금 미용 관련 직업군이 촉망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젊고 아름다우며 건강한 상태로 머무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V. Matéo, 2006) 다시 말해, 아름다움은 현대에 고안된 개념이 아니며, 인류의 기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처럼 피부미용은 인류 문명의 기원과 함께 그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남성과 여성은 화장품을 사용하였다. 화장품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인 'Kemet'에서 파생되었는데, 이 단어는 나일강 기슭의 검은 땅을 지칭한다.(F. Benhamou, 2008)

피부 미용을 의미하는 에스테틱(Esthetic)이라는 단어는 약 200년 전 독일의 학자 바움갈덴(AG baumgarten)이 '미는 인간에게 만족감과 쾌감을 주는 대상이며, 보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감성의 미학 차원에서 처음 사용하였다.(황순욱 외, 2008)

에스테틱의 사전적 의미는 '미의; 미학의; 심미적인'이라는 뜻이지만 통상적으로 미적 차원의 피부 관리나 피부 관리 공간을 에스테틱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한다.(주혜라 외, 2009)

피부미용사에 대한 정의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피부미용 관리를 직업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피부미용사라 지칭한다. 영어로는 Aesthetician, Beautician, Skin care specialist 등으로 표현되며, 독일어로는 Kosmetiker이다. 프랑스어는 일반적으로 얼굴 관리에는 Esthéticien(ne), 바

디 관리는 Practicien(ne) en Spa, Spa Practicien(ne), Practicien en Massages de Bien-être 혹은 Masseur(se) de Bien-être라는 명칭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 독일 직업박람회를 통해 피부관리사라는 직업 형태를 최초로 접하게 되었으며 정부의 여성기능교육의 일환으로 1981년 이후 YWCA 여성 직업 개발부에서 주관하여 피부미용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다.(황순옥 외, 2008)

한국에서 피부미용 관리 분야는 ‘공중위생관리법’의 미용사 영역에 포함되는데,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의 6개 업종과 관련이 있다. 이 중 미용업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이라 명시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이들 업종 중 미용업과 이용업과 더불어 면허가 요구되는 전문 직종이라는 것이다.

피부미용사의 취업 가능한 연계 분야는 에스테틱 경영, 에스테틱과 스파의 피부미용사 및 매니저, 메디컬 스파나 피부과의 피부미용사, 화장품 판매업, 화장품 기업 기획팀, 교육기관 강사, 뷰티 전문 방송인, 뷰티매거진 에디터 등이 있다.

2010년 중앙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직업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피부미용사에 대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통계청 조사에서도 뷰티 산업 분야 중 특히 피부미용관리업체 수가 매년 크게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서비스업 조사에서 피부 미용 시장의 규모를 5,722억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2006년 기준 피부미용관리 업체 수는 17,353개소, 종사자수는 5만 3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2015년 현재 그 규모는 더욱 확대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프랑스어권 국가들은 각국의 관련 법규에 따라 피부미용사의 직무 범위에 차이를 두는데, 프랑스의 경우 자격에 따라 Esthéticien(ne)(피부미용사)의 직무범위가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CAP 이상 자격 보유자에 한해 바디 관리(Soin corporel)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마사지에 준하는 행위는 Esthéticien(ne)보다는 Practicien(ne)들이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

Practicien(ne)과 관련된 자격은 국가학위와 상관없이 국가직업자격명부 (Répertoire national des certifications professionnelles: RNCP)에 등록된 Intervenant Spa et Bien-être, Hydro-Practicien, Technico-opérateur spa, Practicien et responsable de spa, Spa praticien(ne), Practicien(ne) bien-être, Hydrobalnéologue 등의 자격이 있다. 직업능력 자격(Certificat de qualification professionnelle: CQP) 교육과정이 있는 미용학교에서 CQP Spa praticien(ne) 과정을 이수하고 CQP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실제로 프랑스의 에스테틱이나 스파에서는 Esthéticien(ne)과 Practicien(ne)의 업무 영역을 일정 부분 구분하여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로의 직역을 거의 침범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RNCP에 등록된 CQP 중에는 에스테틱이나 스파의 매니저 직무와 관련된 CQP spa manager라는 자격도 있다.

프랑스, 스위스나 벨기에, 퀘벡 지역에서는 Esthéticien(ne)라는 명칭을 일반 피부미용사라는 의미의 용어로서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 피부미용 직무를 수행하는 피부미용사와는 다르게 특수 분야 피부미용사 직업군이 따로 존재한다.

프랑스에서는 메디컬 영역은 일반 피부미용사에게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몇몇 국가에서는 메디컬 관련 자격을 허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스위스에서는 CFC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경력기간을 가진 Esthéticien(ne)에 한해 상위 단계인 Brevet fédéral 교육과정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레이저와 같은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메디컬 피부미용사 자격증인 Brevet fédéral d'esthétique médicale이나 메디컬의 영역에서 반영구 메이크업을 수행할 수 있는 Dermapigmentologue 자격 과정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각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시험을 통과하면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벨기에와 프랑스에는 병원에서의 환자들 및 노인, 실업자들을 관리하는 Socio-esthéticien(ne) 혹은 Esthéticien(ne) social(e)이라 불리는 사회복지 피부미용사가 존재한다. 병원에서 근무하더라도 메디컬 측면의 피부 관리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스위스와는 차이가 있고 일반 피부미용사 업무와도 거리가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이 직업을 메디컬 영역과 연관된 직업으로 보고 있다. 벨기에는 중등직업교육과정을 통해 사회복지 피부미용사 자격을 취득하지만 프랑스는 RNCP에서 인정하는 자격이기 때문에 학위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프랑스는 물리치료사(Kinésithérapeute)와의 직역을 분리하여 피부 미용의 영역에서 Massage 단어의 단독 사용을 허용하지 않아 치료나 의료 목적이 아님을 명시하는 Modelage, Massage de Bien-être 혹은 Massage de relaxation 등의 단어를 사용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1946년 4월 30일 법령, 1960년 7월 4일 명령 60665호, 공중위생법 L489 조항, 1996년 10월 8일 명령 96-879호에 따라 의료적 마사지나 물리치료 마사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웰빙 마사지 테크닉과 연관이 있다'는 문구를 고객이 볼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명시하게 되어있다. (Conformément à la loi du 30 avril 1946, au décret N°60665 du 4 Juillet 1960, à l'article L489 du Code de Santé Publique et au décret N°96-879 du 8 octobre 1996, il ne s'agit nullement de massage médical ou de kinésithérapie, mais de techniques de bien-être.) 벨기에와 캐나다 퀘벡에서는 피부 미용과 관련하여 바디 관리 부분에서 Massage 행위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직업군이 존재한다. 벨기에에서는 Masseur(se), 퀘벡에서는 Massothérapeute라는 이름의 직업을 명시하고 있으며 Massothérapeute가 행하는 관리를 지칭하는 용어로 Soins de massothérapie를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퀘벡의 경우 주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Massothérapeute 기본 교육과정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DEP Esthéticien(ne) 자격 취득 후 615 시간의 AEP en soins du corps과정을 통해 바디관리 교육을 이수하거나 직업학교에서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어권 국가의 피부미용 관련 자격에 관한 내용은 연구결과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다음의 <표 1>은 프랑스어권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미용 관련 용어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프랑스어권 국가의 피부미용 관련 용어

미용 관리	얼굴/바디 관리	피부미용사 (얼굴/바디)
	얼굴 -Soin de visage	-Esthéticien(ne) : (국가 및 자격 및 단계에 따라 바디 관리 포함)
Soin esthétique	-Soin corporel	-Praticien(ne) en Spa
Soin de beauté	-Soin du corps	-Praticien(ne) en Massages de Bien-être
	바디 -Massage(Soin) de Bien-être	-Masseur(se) de Bien-être
	-Massage(Soin) de relaxation	-Massothérapeute
	-Massage(Soin) de détente	-Intervenant Spa et Bien-être
	-Modelage	

결론적으로 피부미용사는 피부미용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점은 같지만 한국은 얼굴관리 및 바디관리 등의 직무범위를 구분하지 않고 ‘피부미용사’라는 명칭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반면, 프랑스어권 국가들의 경우 Esthéticien(ne)(피부미용사)의 직무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명칭들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에 달리 피부미용 영역에 허용된 다양한 상위 자격과 직업군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미용직업교육과 자격제도

현재의 국내외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제도와 다양한 미용교육 체제를 구축하게 한 것은 '피부미용사'라는 직업과 이러한 직무를 훈련시키는 직업교육이 선행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자격제도가 직업교육을 근본적으로 바탕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실질적으로 '미용'분야는 다른 순수학문 분야에 비해 학술적인 측면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을 예의 중시하는 영역이기도 하고, 직업교육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교육 수준을 팽창, 향상시킬 수 있었다.

프랑스어권 국가들이 국가의 관리 하에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을 직업교육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사실은 직업교육에 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킨다. 학제나 교육 시스템이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고 학위나 자격제도 역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직업학교 입학 및 교육과정 이수, 졸업시험 합격 여부로 인해 국가자격을 취득하고 취득한 국가자격이 학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자격수준이 학력 및 학위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이점과 프랑스어권 국가의 특수성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국가자격은 이를 관장하는 법령에 따라 국가기술자격과 기술자격 이외의 국가자격으로 나누어진다.(박태준 외, 2000) 1973년까지 각 부처가 산발적으로 관리하던 국가자격은 제 1차 경제개발 계획 추진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이 제정되면서 종합적인 자격관리체도로 발전하였다. 국가의 일정 기준과 지침에 따라 기술 지식과 기능 능력이 검증된 사람만이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피부미용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직업개발훈련, 중등 혹은 고등 수준의 미용직업교육과 대학 및 대학교 수준의 미용교육이 각

각의 교육기관에서 별개로 분리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6년부터 국가가 승인한 대학의 미용학과나 직업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국가자격기술법’에 근거하여 과정평가형 미용사(일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내부 및 외부 평가를 거쳐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http://terms.naver.com/>, 자격증사전) 교육기관이 자체적으로 국가자격을 발급하여 학위와 자격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미용 관련 직무가 방대할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어 국가가 정한 표준에 맞추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걸림돌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일-학습 병행교육의 점진적 확산은 노동 시장으로의 인력 진출을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고, 학위, 자격, 실무 연계 체계는 직업능력을 보다 빠르게 향상시켜 현장 투입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을 지닌 제도임은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어권 국가들의 자격제도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자격제도는 비교적 국가자격과 학위와의 상호 연관성이 아직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다. 학위와 더불어 미용사 면허 혹은 미용사(일반) 자격을 취득할 수는 있으나 미용 국가자격과 학위가 동일한 것은 아니고 피부미용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미용사’ 면허를 발부받은 후에도 보완을 위해 ‘피부미용사’ 자격을 따로 취득하는 경우도 많고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을 취득한다고 해서 ‘미용’ 학위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상관관계는 보다 한정적이다.

한편, 프랑스어권 국가들은 학교와 정부, 사회가 같이 협력하여 인력시장에 능력이 검증된 인력을 공급하여 생산성을 효율적으로 높이고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 국가들의 직업교육 형태는 크게 일원화 체제(Voie classique)와 이원화 체제

(Voie en alternance)로 구분할 수 있다. 일원화 체제는 기업체와의 연계 없이 학교나 대학에서 전일제 직업교육만이 이루어지며, 이원화 체제는 학교와 기업이라는 두 가지 장소에서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과의 교대 및 병행을 의미한다. 주목할 것은 전자의 경우 신분이 학생(Statut scolaire lycéen ou étudiant)이지만 후자의 경우 신분은 학생이면서 직장인(Statut de salarié)이라는 점이다. 학생들은 선택한 직업의 실무 경험을 쌓으면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으며 계약에 따라 급여를 받거나 학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각 나라별로 중등 교육에서 고등 교육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직업교육이 수행되는데 공통점과 더불어 차이점도 존재한다. 프랑스와 벨기에는 학교 기반의 일원화 직업교육 체제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스위스는 이원화 체제의 직업교육 형태 중에서 앞서 언급한 견습생 형태의 도제형 직업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다.(송창용 외, 2009) 자격제도 역시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프랑스의 경우 학위를 포함하는 자격제도와 포함하지 않는 자격제도가 공존하고 있으며 국가학위, 공인자격, 산업부문 자격증이라는 세 종류의 자격제도가 존재한다.(박태준 외, 2000) 자격증 발급 주체와 자격증 획득 경로의 두 가지 기준에 의해 세 종류의 자격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국가교육 시스템 내에서 운영되고 교육훈련과정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국가자격제도,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정규교육훈련 과정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민간자격제도, 그리고 이 두 가지 제도 사이에 국가에 의해 운영되지만 교육훈련과정과는 직업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은 경력인증을 통해 국가자격을 발급받는 제도가 존재한다. 국가자격제도는 정규교육과정이나 특정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학위나 국가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민간자격제도는 개별 업종단체의 노사 대표에 의해 주도적으로 운영되며 이 업종단체의 직업능력자격(CQP)제도는 각 업종단체의 필

요와 소속 기업들의 요구에 기반하여 운영되며 산업별로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직업경력인증제도(Validation des Acquis de l'Expérience: VAE)는 직업능력이나 직업적 경험을 인정함으로써 해당 국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강순희 외, 2003) 프랑스의 자격제도는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자격제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업과 노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운데 업종별로 다양한 민간자격제도가 도입되었다. 프랑스는 민간자격제도의 운용에도 국가가 일정부분 관여(전현중, 1998)하고 있고 벨기에의 경우에도 정규 직업교육과정 이외의 경로로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과 관련된 프랑스어권 국가의 자격과 직업교육의 내용적 범위를 일부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 일반적으로 프랑스어권 국가들의 직업교육은 국가자격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최종 자격검정은 직업교육과정 이수와 국가시험 합격여부에 달려 있다. 이들 나라들은 자격제도를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정부는 자국의 자격제도를 유럽연합(Union européenne)에서 통용될 수 있는 자격제도로 발전시키려 노력하고 있다.(신명훈, 2001) 실제로 유럽경제지역(EAA) 내에서 회원국 간의 인력, 자본, 서비스, 상품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유럽연합과 유럽자유무역연합의 노력은 단일시장 형성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자격에 대한 상호 인정 체계는 유럽 내에서 향후 계속적으로 확장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피부미용사 직업교육과 국가자격제도 관련 선행연구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제도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 다양한 시각에서 수용되어 석 박사 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의 주요 주제로 다루어졌다. 국가자격제도와 관련하여 큰 맥락으로 나누어보면, 피부미용사 자격제도가 시행된 2008년을 기점으로 주제의 양상이 변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이전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미용기능사 국가기술 자격검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강연수, 2000), 한국 미용사 국가기술자격검정의 현실화 방안에 대한 연구(유현주, 2001) 등과 같이 피부미용사 자격제도 시행의 필요성 및 제도화 가능성에 대하여 논하였고, 2008년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는 현행 자격제도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자격제도 시행여부와 관계없이 2008년 이전의 국내 연구에서도 국내와 해외 주요국과의 자격제도 비교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국내 자격제도가 부재한 시점에 진행된 비교 연구의 설득력은 제도적으로 안정된 선진국의 사례를 소개하여 국내 피부미용사 제도의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에서 찾을 수 있다. 관련 연구로는 피부미용사제도 신설방안에 관한 연구(김기연, 2005), 한국 미용사 자격제도의 체계와 개선방안(손중석, 2006)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김기연은 미국, 프랑스 및 독일의 자격제도를 설명하면서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피부미용사 제도를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손중석은 영국, 미국, 호주, 일본, 독일 등의 사례를 국내자격제도와 비교하여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2008년 이후의 연구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내 자격제도를 해외 선진 국가들의 자격제도와 비교 논의하거나 자격제도나 자격시험 등에 관한 만족도나 인식도, 업무실패, 자격증 활용 실태 등을 조사하는 연구를 통해 현행 국가자격제도를 고찰하려는 시도가 많았다. 관련 연구로는 한국 미용사 면

허제도의 고찰과 국제적 조화방안(최은정, 2009), 미용사(피부) 국가기술자격
검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실기검정을 중심으로(류연옥, 2010), 피부미
용 국가자격제도 및 시험에 대한 피부미용사의 만족도(최성미 외, 2010), 미
용사 국가자격시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진희영, 2010), 피부미
용의 국가자격제도 및 업무실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배윤희, 2011), 한국
미용자격증과 면허증에 대한 인식조사: 뷰티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이형
숙, 2011), 미용사(피부)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및 활용 실태에 관한 연구(이현
정, 2012), 미용사(피부) 국가자격시험 지원요건 강화에 관한 연구 : 과목 및
필수 교육 시간을 중심으로(허은옥, 2013) 등이 있다.

해외 국가들의 자격제도와 관련된 연구들 중 프랑스어권을 중심으로 이
루어진 비교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다른 프랑
스어권 국가들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언급된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연구 결과를 보이며 영어권 국가에 비해 구체적이지 못하고 미흡한
실정이다. 대개의 경우 프랑스만이 다른 주요 국가들과 같이 거론되는 방
식으로 한정되었고, 프랑스와 연관된 기존 자료들의 재인용이 많아 잘못된 자
료와 정보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한편, 직업교육과 국가자격의 연관성은 직업교육 관련 연구들을 검토해
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국내외에서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을 취득하기 위
해서는 대부분 직업교육이 수반되며, 프랑스어권 국가들의 경우 직업교육과
정을 통해 취득한 학위가 학위이자 자격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국
내외 해외의 사례를 비교하는 피부미용사 자격제도 관련 연구들도 직업교육
체제를 언급하고 있다. 임희야는 전문대학 미용교육의 기술적 목표 성취를
위한 교과과정 개선에 대한 연구(2010)에서 프랑스와 일본, 독일의 미용교육
현황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국내 미용사 자격 및 면허제도의 문제점을 지
적하고 미용 관련 전문대학의 교과과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차의진은 한국과 독일 및 영국의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증 제도의 비교 연구(2011)에서 한국, 영국과 독일의 국가자격제도 및 직업교육체제를 비교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외의 국내 미용 직업교육 관련 연구들은 교육기관이나 계좌제 등의 교육과정과 교과목을 분석하여 직업교육의 발전방안을 시사하고 있는데, 국내 현행 미용교육기관의 강조된 기능은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연구들은 실무 현장과의 연계성과 실효성 추구를 토대로 이루어졌고, 미용 산업 발전 및 효과적인 미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보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김춘자, 2003), 직업전문학교 미용과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이인희, 2003), 미용관련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이민원, 2004), 피부 미용 관련 학과의 전공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최성임, 2006), 한국 전문대학과 미국 지연사회대학의 직업교육에 관한 비교 연구(안현순 외, 2007), 전국미용관련교육기관 및 학생 현황조사(노영희 외, 2009), 미용관련 직업능력 개발계좌제의 필요성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김주영, 2010), 특성화 미용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과정, 학교생활 만족도, 진로인식에 관한 조사연구(유경숙, 2010), 뷰티아카데미 교육생의 취업 시 고려요인 연구(김선영 외, 2011), 2년제 미용대학 교과과정에 따른 전공 선택 발전방안(홍수남 외, 2013), 미용대학의 교육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김기운 외, 2013), 대학부설 학점은행제의 교육과정 인식도 및 만족도 조사 : 미용학과 학생을 중심으로(신남재, 2014), 피부미용 관련학과 전공 분류 및 교육과정 개선방안(윤태효, 2014), 경력단절여성의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미용교육 및 취업실태에 관한 연구(전환희 외, 2015)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프랑스어권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피부미용사 관련 연구

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자국의 피부미용사 자격 및 직업교육 관련 내용, 자격시험을 위한 교육과정과 시험과목,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거나 피부미용사 노사 단체협약이나 직업 표준 등을 규정하는 정부기관의 자료들이 주를 이룬다. 주목할 만한 연구로는 퀘벡의 인간 관리 서비스 인력 분야 위원회 (Comité sectoriel de la main-d'œuvre des services de soins personnels)가 진행한 미용과 전기제모 바디 관리의 하위 산업 분야에 대한 부문별 예측 (Diagnostic sectoriel pour les sous-secteurs de l'esthétique, de l'électrolyse et des soins du corps) (A. pedraz-Delhaes *et al.*, 2011)이 있는데, 이 연구는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캐나다 퀘벡지역의 여러 가지 미용 직종 분야와 관련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국내외에서 프랑스어권 국가의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제도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며, 발전된 미용직업교육 체제와 피부미용사 자격제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권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프랑스어권 국가들을 관련 주제로 비교 논의함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범위

본고의 목적을 위해 연구 범위를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및 내용적 범위로 구분하고자 한다. 공간적 범위는 프랑스와 더불어 스위스, 캐나다, 벨기에의 프랑스어권 지역으로 한정하였는데, 영역을 확대하여 총체적으로 모든 프랑스어권 국가를 다룬다면 가장 이상적인 연구가 될 것이나 국내에 많이 알려진 국가들 중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들을 염두에 두고 범위를 한정시켜 분석을 진행하였다.

시간적 범위로는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제도 관련 국내 문헌 조사에 한해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된 2008년부터 현재 2016년으로 한정시켜 취득 절차와 커리큘럼, 관련 법령들을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내용적 범위는 한국과 프랑스어권 국가의 자격제도와 직업교육에 관하여 일부 한정하였다. 자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어권 국가들은 직업교육 정책에 따라 학위와 국가자격이 동일 맥락에 놓여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자체로 학위가 자격이면서 자격이 학위이기 때문에 직업교육제도와 연관이 깊다. 따라서 프랑스어권 국가들의 경우 교육 권한을 가진 각각의 국가 및 주, 연방 등이 인정하는 학위 및 국가자격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학위와 자격이 동일한 맥락에 놓였다할지라도 벨기에처럼 다른 경로로 학위와는 별개로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거나 캐나다 퀘벡과 같이 교육부 이외의 정부 부처를 통해서도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언급하였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직업능력 체계를 통해 동일한 수준의 학력과 직업능

력을 비교할 수 있다. 프랑스의 자격목록과 자격수준은 국가직업자격명부 (Répertoire national des certifications professionnelles: RNCP)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RNCP에 등록된 자격들은 직업능력 체계를 통해 동일한 학력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RNCP에 등재된 자격을 모두 언급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고, 엄밀히 말하면 학위를 포함하는 자격은 아니기 때문에 프랑스의 자격은 학위를 포함하는 자격들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학위의 경우, 예를 들어 약국화장품 전문가 직업학사(Licence professionnelle santé spécialité conseiller en produits dermo-cosmétiques)는 뉘 사바띠에 툴루즈 3대학(Université Paul Sabatier - Toulouse 3)의 학사 과정으로 RNCP에 등록이 되어있어 자격수준과 비교가 가능하지만 우선적으로 학위임이 명백한 경우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상황설명이나 이해를 돕기 위해 언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RNCP 자격을 일부 언급하였다.

또한 국제기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국가자격이 아닌 학위로서만 인정되는 미용관련 학위는 제외시켰다. 직업교육은 국가자격이 교육과정에 수반되거나 교육과정 수료 시 국가자격취득을 위해 자격검정이 의무화되는 직업교육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방법

본고의 일차적인 목적은 한국 및 프랑스어권 국가들의 미용 직업교육과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구체적인 차이점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으며 이는 문헌연구(Documentary study)를 주요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국내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제도, 직업교육 등을 중심으로는 기존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을 활용하는 방법을 택하였고, 프랑스어권 국가와 관련하여서는 잘못된 정보 및 선행연구 부족으로 인해 기존 자료들의 활용도가 낮은 편이므로 관련 해외 논문, 연구 보고서, 간행물, 관련 법령, 각종 정부 기관들의 인터넷 사이트 등을 참조하여 2차 자료를 채택하고 기술적인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의 구체적인 절차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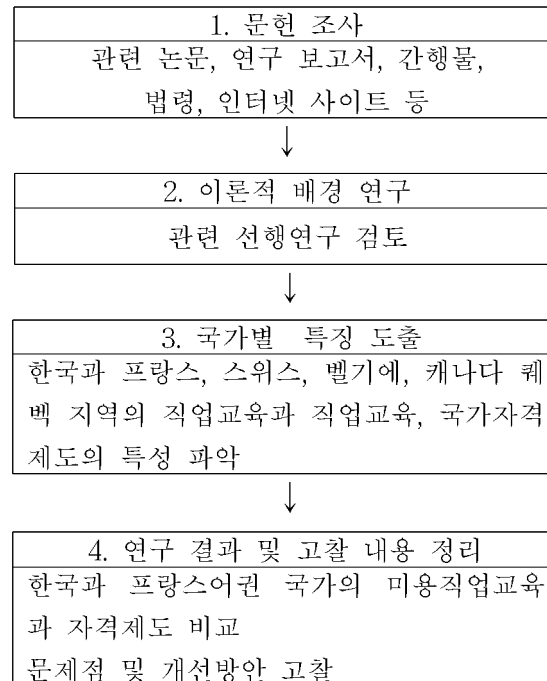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VI. 연구 결과 및 고찰

1. 직업교육과 자격제도

1) 한국

(1) 직업교육과 자격제도

직업교육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목표와 전개 양상이 다르게 진행되어 왔다. 과거 직업교육은 학사학위 미만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종사할 사람을 위한 준비교육으로, 매우 협소하고 제한적인 개념으로 정의되어 왔다. 하지만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함께 교육의 양적·질적 성장이 급속히 이루어진 지금은 직업교육에 대한 광의적 개념이 필요하게 되었다.(나승일 외, 2008)

우리나라의 직업교육은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직업교육의 외적 확대와 내적 충실을 동시에 기하는 방향으로 여러 정책 산업이 추진되었다. 정부는 보다 전문적인 산업 인력을 공급과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1973년 12월31일 국가기술자격법(법률 제2672호)을 제정·공포하였고 이듬해부터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시행하게 된다.(<http://rinks.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기술자격법 제 2조는 기술자격을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 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자격은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경제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데 필요한 기술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조정윤, 2012) 기술계와 기능계로 구분되어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1999년 법이 개정되면서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기능사 등 5등급으로 개편되었다.

이러한 국가기술자격제도는 노동부를 총괄부처로 하여 기술자격 분야별로 관련 16개 정부부처가 담당하고 있으며 시행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기술위주의 582개 종목을 검정, 시험문제를 출제 관리하고 있다. ‘미용사’는 기술 자격 분야 중 ‘공중위생’ 영역과 관련되어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로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2006년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에 미용사(피부) 종목을 신설하고 그 시험과목을 규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 예고한 바 있으며(황순욱 외, 2008) 2007년 7월 16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노동부령 제279호로 일부 개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미용사(피부) 국가기술 자격을 신설하였다. 즉, 2008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미용 국가기술자격이 미용사(일반)과 미용사(피부)로 분리되면서 자격제도와 업무 영역이 세분화되었다. 미용 업무의 전문화, 국민의 건강권 보장 및 보다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근거를 규정한 것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피부미용 업무를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공중위생분야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피부미용사는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의 관리 대상이 된다.

피부미용사 직무 수행을 위해서는 미용사 면허가 필요하다.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면허를 받기 위해 국가기술자

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미용사 면허가 없이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면허 없이 자격을 먼저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업무범위) 2항 4호에 따라 피부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후 미용사(피부)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증이 있어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만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위반된다. 공중위생관리법의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등) 제1항은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이 규정하는 4가지 해당 조건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공중위생관리법이 규정하는 4가지 해당 조건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1의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3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참고: <http://www.law.go.kr/>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08년 1월 1일 이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하여 피부미용사 자격을 취득하고 면허를 받은 자는 제4호에 해당되며 미용사(피부) 면허를 얻게 된다. 반면, 제1호와 제3호에 해당하거나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자는 미용사(일반)과 미용사(피부)의 구분이 없는 기존의 미용사 면허를 받게 되는데 이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업무 영역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한다.

현행법령상 실질적으로 피부미용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는 세 종류이다. 즉, 1)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 제1호나 제3호에 의거하는 미용사면허 2)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미용사 면허 3) 2008년 이후에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미용사(피부) 면허가 이에 해당된다. 법제처에 따르면,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행위를 하거나 미용사 면허가 있으나 해당 업무 영역이 아닌 분야의 업무를 행한 미용사는 무면허 행위로 간주되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피부미용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한 자격을 가지고 피부미용사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국내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제도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성되며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시험 출제 기준은 적용 기간 만료 시 변화할 수 있으며 상시시험으로 진행된다. 필기시험 과목은 1. 피부미용학 2. 피부학 및 해부생리학 3. 피부미용기기학 4. 화장품학 5. 공중위생관리학으로 총 6과목의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시하는 2016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필기시험의 세부 사항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피부미용사 국가자격 필기시험 과목

필기과목명	문항	주요항목	세부항목
피부미용이론	60	1.피부미용이론	1.피부미용개론, 2.피부분석 및 상담, 3.클렌징, 4.딤클렌징, 5.피부유형별 화장품 도포, 6.메뉴얼 테크닉, 7.팩· 마스크, 8.제모, 9.신체 각 부위(팔, 다리 등) 관리, 10.마무리, 11.피부와 부속기관, 12. 피부와 영양, 13.피부장애와 질환, 14.피부와 광선, 15.피부면역, 16.피부노화
해부생리학			1.세포와 조직, 2.뼈대(골격)계통, 3.근육계통, 4.신경계통, 5.순환계통, 6.소화기계통
피부미용 기기학		3.피부미용기기학	1.피부미용기기 및 기구, 2.피부미용기기 사용법
공중위생 관리학		4.화장품학	1.화장품학개론, 2.화장품제조, 3.화장품의 종류와 기능
화장품학		5.공중위생관리학	1.공중보건학, 2.소독학, 3.공중위생관리법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참고: <http://www.q-net.or.kr>

시험시간은 1시간으로 위에 언급한 6개 과목에서 4지 택일 객관식 60문항이 출제되며 60점 이상의 점수를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에서도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q-net.or.kr>)이 제시하는 2016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실기시험의 세부사항은 다음의 <표4>에 정리되어 있다.

표 4. 피부미용사 국가자격 실기시험 과목

시간	주요항목	세부항목
2시간	피부미용- 위생관리	1.피부미용-작업장위생 관리하기, 2.피부미용-비품위생 관리하기 3.피부미용사 위생관리하기,
	얼굴관리	1.얼굴클렌징하기, 2.눈썹정리하기, 3.얼굴 딥클렌징하기, 4.얼굴 매뉴얼테크닉하기, 5.영양물질 도포하기, 6.얼굴 팩, 마스크하기, 7.마무리하기
15분	신체 각 부위별 피부관리	1.신체 각 부위별 클렌징하기, 2.신체부위별 딥클렌징하기, 3.신 체부위별 피부관리하기 4.신체부위별 팩, 마스크하기, 5.신체부위 별 관리 마무리하기
	피부미용 특수관리	1.제모하기, 2.림프관리하기

참고: <http://www.q-net.or.kr>

한편, 우리나라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직업능력계좌제를 운영하고 있다. 직업능력계좌제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상담을 거쳐 직업능력 개발계좌를 발급하고, 훈련이력의 통합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피부미용 직업교육 역시 계좌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14년 기준 전체 5,819개 훈련과정 중 미용교육과정이 321개로 전체의 6%를 차지하고 있는데, 피부미용 및 체형관리사 과정(네일아트포함)은 총321개 과정 중 157개의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정환희 외, 2015)

NCS 기반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시행 대상이 미용사(일반)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을 통해서만 피부미용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독학으로도 응시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교육 및 빠른 현장 투입을 위해 계좌제를 활용하거나 직업고등학교나 미용고등학교에서의 중등직업교육 또는 일반 미용 학원, 직업훈련학교, 각 지역

의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 대학 및 대학교에 설립된 뷰티관련학과 등의 전문미용교육기관의 교육을 받는 것이 보다 전문적인 미용 인력이 되는 지름길이라 사료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동향분석을 살펴보면 2011년 접수인원이 가장 많았던 종목은 피부미용사로, 응시목적은 취업, 자격 취득경로는 학원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김동자 외, 2008)

피부미용 관련 국가자격에는 미용사 이외에 미용장 자격이 별개로 존재한다.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보유하면 미용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피부미용영역의 미용장 자격은 존재하지 않으나 미용장은 머리, 피부, 네일 등의 토탈 미용분야에서 보다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기술자격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미용장을 ‘미용에 관한 최상급 숙련능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직업관리, 소속기능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현장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라 정의하고 있다. 미용장의 직무내용은 ‘토탈 뷰티(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등을 각종 기기 및 제품을 사용하여 적절한 관리로 고객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기술과 현장관리 직무 수행’으로 필기와 실기 시험을 통과하여야 취득할 수 있다. 미용사가 미용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인정받아 취득하는 자격이라면 미용장은 고급 수준의 숙련된 기술과 관리 및 지도 능력을 검증받아야 한다.

(2) 미용교육과 자격제도

국내 최초의 미용교육은 1928년 ‘경성미용학교’에서 미용학원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1953년 정화고등기술학교가 설립되었고,(강나희, 2010) 1980년대 말까지 미용학원과 미용고등기술학교에서 여성들의 직업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미용직업교육이 이루어져왔다.(고경화, 2012)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뷰티 산업’이 크게 발전하면서 국내에서도 전문적인 미용교육이 시행되게 된다. 초기의 미용교육은 고등기술학교와 미용학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오다가 1997년 교육부 7차 교육과정에 가사, 실업 관련 교과에 미용교과가 고등학교 교육의 한 분야로 신설되면서 고등학교가 미용교육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전문대에서의 미용관련 교육은 1991년 영동전문대학에 미용예술과, 동주대학에 피부미용과가 설치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대학 교육을 통해 전문미용인을 양성하기 시작하였으며 1992년 12월에 개정된 공중위생법을 근거로 무시험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1999년 4년제 광주여자대학교 가정정보계열학부에 미용과학과가 신설되었다.(김은정 외, 2009)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고등기술학교, 고등학교, 대학에서 미용학과를 졸업하거나 학점은행제를 통해 관련 학위를 취득한 경우 무시험 미용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2009년 기준 무시험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미용 관련 교육기관은 학점은행제 및 직업학교를 포함하여 총 200여 곳이다.(김은정, 2010)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11년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내 미용관련학과는 2년제 대학에 106개, 4년제 대학에 33개의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이승희, 2012) 또한 2013년 기준 미용관련 학점은행제를 운영 중인 대

학과 산하기관, 직업학교(아카데미)는 총 58개로 나타났다.(<http://www.cosinkorea.com>: 코스인, 2013. 09. 16) 대학원에는 특수대학원의 석사 과정, 일반대학원의 석, 박사 과정 및 교육대학원의 미용교육 석사 과정 등이 있다. 뷰티 산업과 더불어 질적, 양적으로 미용교육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직업 고등학교, 실업 고등학교, 노동부 관할 직업 전문학교, 미용학원, 직업훈련학교,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학점은행제, 대학, 대학원 등의 사립교육기관과 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에서 그 목적에 따라 직업적이거나 보다 학술적인 미용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다음의 <표 5>은 국내 피부미용, 헤어, 메이크업 및 화장품학과가 개설된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교를 정리한 것이다.

표 5. 국내 미용관련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교

2년제 대학	강동대, 강릉영동대, 경남도립거창대, 경남정보대, 경북과학대, 경북도립대, 경북전문대, 경산1대학, 계명문화대, 고구려대, 공주영상대, 평양보건대, 광주보건대, 구미1대학, 국제대, 군장대, 경북대, 경인여자대, 김천과학대, 김해대, 대구공업대, 대구미래대, 대구보건대, 대구산업정보대, 대경대, 대동대, 대원대, 대전보건대, 동강대, 동부산대,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동아인재대, 동우대, 동원대, 동의과학대, 동주대, 마산대, 명지전문대, 목포과학대, 백제예술대, 벽성대, 부산경상대, 부산여자대, 부산예술대, 부산정보대, 삼육보건대, 상지영서대, 서라벌대, 서영대, 서정대, 서해대, 선린대, 성화대, 세경대, 송곡대, 송원대, 송호대, 수원과학대, 수원여자대, 순천제일대, 신안산대, 신성대, 신홍대, 안동과학대, 안산대, 안양과학대, 양산대, 여주대, 영남외국어대, 영남이공대, 오산대, 원광보건대, 우송정보대, 장안대, 재능대, 전남과학대, 전남도립대, 전북과학대, 전주비전대,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 조선이공대, 주성대, 진주보건대, 창신대, 창원문성대, 천안연암대, 청암대, 춘해보건대, 충남도립청양대, 충청대, 카톨릭상지대, 혜전대
4년제 대학교	건국대, 건양대, 경일대, 광주대, 김천대, 광주여대, 남부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동명대, 동신대, 목원대, 서경대, 성결대, 성신여대, 영동대, 영산대, 우석대, 우송대, 원광대, 을지대, 중부대, 청운대, 초당대, 한라대, 한서대, 한국국제대, 호남대, 호원대, 호서대

참고: 이승희, 뷰티산업관련 교육기관 현황,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 pp. 1-4.

미용관련 학과의 커리큘럼은 학과 및 2년제와 4년제에 따라 과목 구성과 교과 비중에 약간의 차이점은 있으나, 공통적으로 전공 기초, 헤어 미용, 피부 미용, 메이크업 및 네일, 화장품학, 교양 등의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미용관련 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무시험 미용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데, 이는 미용업과 관련된 사업체를 운영할 때 필요하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2016년부터 미용사(일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국가자격의 경우 직무가 분리

되어 피부미용사 자격을 취득하는 반면 무시협 면허나 과정평가형 제도를 통해 취득하는 자격은 미용사의 직무범위에 제한이 없다.

교직 이수가 가능한 4년제 대학에서는 교직 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중등정교사’ 2급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과거 미용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하는 경우 ‘실기교사’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2014년 입학자 이후부터 교원 국가자격은 4년제 대학에서 가능하다. ‘실기교사’ 자격을 이미 보유한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을 취득할 수 있으며,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경우 5년 이상의 경력을 확보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을 확보할 수 있다.

2) 프랑스(<http://travail-emploi.gouv.fr/>, 프랑스 노동부 사이트에 게재된 노동법 법문 참조)

(1) 직업교육과 자격제도

프랑스의 기본 학제는 유치원(Ecole maternelle)에서 이루어지는 학령 전 교육(만 2세 또는 3-5세), 초등학교(Ecole primaire)에서 시행되는 초등교육(6-10세), 전기 중등교육기관인 중학교(Collège)와 후기 중등교육기관인 고등학교(Lycée)에서 실시되는 중등교육(11-17세), 사립학교(Ecole privée), 대학(Université), 특수전문 고등교육 학교(Grands écoles) 등에서 받을 수 있는 고등교육(18세 이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중등교육과정으로 중학교에서부터 시작되며, 본격적인 직업교육은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진다. 프랑스는 직업교육에 있어서 학교 교육과 실무 교육이 효율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의 시도와 효과적인 조기 직업교육(Formation professionnelle)을 통해 직업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왔다.

프랑스의 직업교육은 주로 학교교육을 기반으로 이루어지지만 프랑스 노동부(Ministère du Travail, de l'Emploi,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et du Dialogue social)는 이원화 체제의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해 두 가지 형태의 노동 계약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스위스 및 독일 등의 국가에서 많이 시행되는 견습생 신분의 도제 훈련 계약(Contrat d'apprentissage)이고 다른 하나는 직업전문화 훈련 계약(Contrat de professionnalisation)이다. 나이가 만 16세 이상 만 25세 이하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도제 계약을 하는데 도제 계약의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견습생

이 되어 현장에서 실무교육을 배우는 것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 과정은 기업체와 연수 계약이 체결된 만 16세에서 만 25세의 젊은이들에게 허용된다. 고용된 사람은 월급을 받을 수 있으며 월급은 최저임금(SMIC)에 의거하여 나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반면, 학업을 중도 포기한 만 16세에서 만 25세 및 만 25세가 넘는 경우에는 직업전문화 계약을 하게 된다.(<http://www.cci-paris-idf.fr>), (M. Abhervé, 2008), (Pôle-emploi, 2015) 도제직업훈련은 다양한 수준의 기술과 직업자격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장경험을 결합시킨 훈련형태로 이론교육은 도제훈련센터(Centre de formation d'apprentis: CFA)나 직업고등학교에서 제공되며, 실습훈련은 기업에서 제공된다. 도제훈련과정에서 청소년들은 하나의 견습생이 되어 기업과 계약을 하게 되며 CFA에서 이론 및 실습교육을 받는다. 계약기간은 직종에 따라 1-3년까지 다양하며, 기업에서의 실습훈련은 훈련생들이 기업에서의 생활(규칙, 상하관계 등)에 친숙하도록 하고 작업현장에서 장비나 설비를 다루는데 익숙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조직으로의 사회화를 돕는다.(김태운, 2009: 장석인, 2010에서 재인용)

프랑스 학생들은 중학교 졸업 후 직업교육 경로를 선택하면서 직업적성증서(Certificat d'aptitude professionnelle: CAP) 또는 직업 직업교육증서(Brevet d'études professionnelles: BEP)를 취득하기 위해 2년 이상 준비하거나 직업 고등학교 학위(Baccalauréat professionnel: Bac Pro)를 받기 위해 3년 이상을 수학한다.(김미경, 2010)

CAP는 바로 직업 세계로 진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직업 Bac(Bac pro) 소지자는 바로 직업 세계로 진입하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전현중 외, 2014) 프랑스 교육부에 따르면 Bac 취득 후 2년의 교육과정을 거쳐 Bac+2(전문학사)에 해당하는 고급 기술자 자격증(Brevet de technicien supérieur: BTS), 관련 업종의 경영이 가능한 Bac+2(전문학사)에

해당하는 전문 경영 자격증 (Brevet de maîtrise: BM) 을 취득하거나 BEP 나 CAP 취득 후 일정 기간의 경력을 쌓은 뒤 보다 전문적인 직업능력을 인정받는 고급 직업교육 수료증(Brevet professionnel: BP) 등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프랑스의 국가 학위제도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반 학위 및 직업 학위가 모두 교육부의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하나의 학위증은 하나의 등급 (Niveau)과 하나의 전공(Specialité)으로 표시된다.(김기연, 2005) 프랑스 자격 제도에서 대부분의 자격은 정부에서 발급하는 국가자격으로 주요 발급 기관은 교육부이다.(김미경, 2010) 1942년 프랑스 정부는 중등학교 졸업생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운영 권한을 교육부에 위임함으로써 자격증의 상업화와 민간화로 인한 질 저하를 막고자하였다. 이때부터 프랑스 교육부는 자격 대부분을 독점하게 되었고 자격증의 신설과 제도 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산업계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신명훈, 2001) 프랑스의 자격 제도는 학력과 연계되어 6개의 자격제도로 운영되는데(유현주, 2001) 자격증과 학위의 개념이 호환되어 미용 국가자격증이 학위인 동시에 국가자격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목할 것은, 프랑스에는 학력 체계와는 다른 직업능력(Qualification)체계가 존재하는데 각 수준의 직업능력을 같은 수준의 학력과 비교가 가능하다. (전현중, 1998) 다음의 <표 6>는 프랑스의 직업자격제도 기준 체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동일한 수준의 자격 및 학력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표 6. 동일한 레벨의 자격 및 학력수준 체계

학력수준	자격/ 학위	요건 및 내용
Niveau VI 레벨 6	무학위 CEP	Sorties du premier cycle du second degré (6ème, 5ème, 4ème)
		초기 중등교육과정 (즉, 중등교육과정 3년) 교육 수료 Des formations pré professionnelles en un an (CEP, CPPN et CPA)
Niveau V bis 레벨 5의 2호	BEPC	초기 직업교육과정 1년 수료(CET, CPNN 또는CPA) Sorties de 3ème générale, de 4ème et 3ème technologiques
		일반 중등교육과정 4년 수료- 중학교 졸업/ 기술 분야에서 3-4년 수료
		Des classes du second cycle court avant l'année terminale. 단기 고등교육과정의 마지막 학년 이전까지 수료
Niveau V 레벨 5	CAP BEP	Sorties de l'année terminale des cycles courts professionnels (BEP, CAP)
		단기 직업훈련(BEP, CAP) 마지막 학년 이전까지 수료 Abandons de la scolarité du second cycle long avant la classe terminale.
Niveau IV 레벨 4	일반, 기술, 직업 바칼로레아 Bac BP BT Bac pro	장기 고등교육과정의 마지막 학년을 마치기 전 학업 포기 Sorties des classes terminales du second cycle long
		장기 고등교육과정의 마지막 학기 수료 Abandons des scolarisations post-baccalauréat avant d'atteindre le niveau III. Niveau de formation équivalent à celui du brevet professionnel (BP), du brevet de technicien (BT), du baccalauréat professionnel ou technologique.
		대학입학자격 시험과정 이후, Level III에 도달하기 전에 취학 포기
		BP, BT, Bac pro 등이 있으며 이와 동일한 수준에 해당

Niveau III 레벨 3	BTS DUT DEUG	Sorties avec un diplôme de niveau bac +2 ans (DUT, BTS, DEUG, écoles des formations sanitaires ou sociales, etc.)
	BM (고졸 후 2년 Bac+2)	대학입학자격시험 이후 2년의 교육과정 (DUT, BTS, DEUG, BM, 보건 혹은 사회복지 과정) 수료 후 학위 취득
Niveau II & I 레벨 2 또는 1	1 licence Maîtrise (고졸 후 3년 Bac+3)	Sorties avec un diplôme de second cycle, licence ou maîtrise. Sorties avec un diplôme de troisième cycle universitaire 대학 학위 2기 과정 3년의 대학 과정을 마친 후 학사 학위 취득
		Un diplôme de niveau égal et supérieur à bac+4 ou 5 : master, doctorat
Niveau I 레벨 1	(Bac+4 ou 5)	고등학교 졸업 이후 4년 혹은 5년간의 교육. 석사. 박사 학위 등 un diplôme de grande école (niveau supérieur à la maîtrise). 특수 전문고등교육기관(grande école)에서 학위 취득

참고: http://www.compas-tis.com/pub/Les_niveaux_de_formation.pdf

<http://www.insee.fr/fr/methodes/default.asp?page=definitions/niveau-diplome.htm>

<http://www.cncp.gouv.fr>

프랑스의 직업교육은 학교 교육을 주요 기반으로 학위와 자격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직업교육훈련과정은 졸업증이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 과정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졸업증이나 자격증은 직업교육을 통하여 관련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였음을 나타내는 증서이자 상급 학교 진학과 관련 분야 취업을 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신명훈, 2001)

한편, 프랑스의 자격목록과 자격수준은 RNCP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명부는 각 정부부처 대표, 고용자 대표, 노동자 대표, 직능대표 등으로 구성된 국가 직업자격 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s certifications professionnelles: CNCP)가 작성한 것이다. 각 직업별로 요구되는 자격(국가 학위 또는 국가가 인정하는 직업자격 등)이 나열되어 있고 각 직업별 관련 영역, 자격 수준, 필요한 직무능력 등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http://www.vae.gouv.fr/rncp>)

이 명부에 사용되는 직업 목록은 프랑스 고용극(Pôle Emploi)에서 사용하는 직업과 고용에 관한 목록(Répertoire opérationnel des métiers et des emplois: ROME)이라는 것인데 여기에는 531개의 직업과 11000개의 세부직업이 포함되어 있다.(<http://www.pole-emploi.fr>) RNCP에 등록된 승인 자격들은 프랑스 교육부에서 수여하는 학위는 아니라 할지라도 직업능력 체계를 통해 동일한 학력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직업과 관련 교육기관, 전공, 자격은 프랑스 국립교육직업정보사무소(Onisep) 사이트를 통해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2) 미용교육과 자격제도

프랑스에서는 교육법에 따라 지정된 교육 기간과 교과목을 이수하고 국가 시험을 치른 뒤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데, 미용관련 자격 역시 마찬가지이다. 미용 교육은 주로 직업고등학교와 사립학교 등에서 이루어지며 학교에 입학하려면 일반적으로 중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 기간과 내용은 과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학교에서의 이론 수업과 실기 수업, 화장품 가게, 일반 관리샵, 스파, 학교가 운영하는 에스테틱 등의 관련 산업체에서의 실습 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미용과 관련된 프랑스의 국가자격은 CAP, Bac pro, BP, BM, BTS로 CAP Esthétique-Cosmétique-Parfumerie(미용, 화장품, 향수 분야 직업적성증서), Bac pro Esthétique-Cosmétique-Parfumerie(미용, 화장품, 향수 분야 직업고등학교 학위), BP Esthétique-Cosmétique-Parfumerie(미용, 화장품, 향수 분야 전문 직업증서), BM Esthétique-Cosmétique(미용, 화장품 분야 전문 경영 자격증), BTS Métiers de l'esthétique, cosmétique, parfumerie(미용, 화장품, 향수 분야 고급기술자 자격증)등이 있다. 자격별 시험관련 주의 사항은 일반 학생, 자율지원자, 원격학습대상자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프랑스는 자격에 따라 미용 업무 영역을 제한하고 있다. CAP는 얼굴과 손발톱 관리만 진행할 수 있다.(프랑스교육부, 2016) BP나 Bac pro 자격을 취득해야 바디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디 관리를 수행하는데 있어 CAP 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다음의 <표 7> 은 단계별로 프랑스의 미용 자격을 정리한 것이다.

표 7. 프랑스의 단계별 미용 자격

BTS 3가지 세부전공 선택, Bac+2	BM 경영자격, Bac+2
↑	↑
BP 바디관리/ 일-학습 병행	Bac pro 바디관리/ 일반 학습, 도제훈련
↑	↑
CAP 얼굴 관리, 손톱과 발 관리(바디관리 불가능)	

가장 기본이 되는 자격은 CAP Esthétique-Cosmétique-Parfumerie로 국가자격 레벨 5에 해당하며 모든 전문 기술 분야의 종사자들은 첫 단계로 CAP를 취득하여야 하며 피부미용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CAP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프랑스 RNCP는 CAP Esthétique-Cosmétique-Parfumerie를 ‘미용 테크닉, 조연 및 화장품 판매, 향수 제품 전문가 과정’이라 정의하고 있다. 데콜데와 얼굴, 손과 발, 얼굴 및 손톱 화장, 제모가 주 관리 범위로 바디 관리는 포함되지 않으며 주로 고객 예약, 재고 관리, 수납, 고객 응대를 업무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CAP 과정은 일반 교육(프랑스어, 역사/지리학, 수학/과학, 선택 외국어 시험 등)과 직업 과정(미용 테크닉, 제품 판매와 서비스 제공, 환경건강예방, 생물학, 화장품학, 기구 및 장치 사용 테크닉, 응용 미술, 직업 환경 지식)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자격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태닝 기구 사용 교육증명서(Attestation de formation à l'utilisation des appareils UV)를 의무적으로 증명하여야 했지만 관련법에 따라 2016년 시험부터는 면제되었고 태닝 관리가 교육과정에 포함되었다.(<http://www.centre-europeen-formation.fr>) CAP 과정

은 학교 및 입학 조건에 따라 1년 또는 2년의 교육 연한을 가지며 시험은 미용 테크닉(Techniques Esthétiques), 제품 판매와 서비스 제공(Vente de produits et prestations de services), 직업 관련 과학 및 응용 예술(Sciences et arts appliqués à la profession)의 3단계로 진행된다. 다음의 <표 8>는 CAP 자격시험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8. CAP 자격시험

구분	시간	시험 내용
시험 1	실기시험: 3시간 30분 필기시험: 1시간	미용 테크닉 : 계수 7+ 환경건강예방 시험 계수 1 미용테크닉 -얼굴 미용 관리 테크닉/ 체모 테크닉/ 손톱화장 혹은 발 관리/ 메이크업 테크닉
		진단차트 작성 및 미용 관리에 대한 조언 제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 계수 3
시험 2	구두시험: 30분	-판매 상황극: 10분간 진행되며 고객 역할을 하는 시험관과 제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 등의 상황극을 통해 판매 능력과 직업 환경에 대한 지식 평가 -면접: 최대 20분간 진행되며 지원자가 제출한 전공 논문 심사
시험 3	쓰기 시험: 3시간	과학 및 응용 예술: 계수 4 직업 상황과 관련된 과학 지식과 관련 규정과 예술 -생물학/ 화장품학/ 기구 및 장치 사용 테크닉/ 미용 테크닉/ 직업 관련 응용예술

참고: Note à l'attention des candidats CAP Esthétique Cosmétique Parfumerie (Session 2016),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2015.

Guide du candidat individuel et du candidat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contenue CAP Esthétique Cosmétique Parfumerie,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2015.

지원자는 구두시험을 위해 지정된 기일 내에 전공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각각의 시험 점수는 각 계수(Coefficient)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계수가 높은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총점이 올라가게 된다. 각 영역별 계수

와 점수를 곱해 총점을 구하고 이를 모든 계수의 합으로 다시 나누어 총점 20점 만점 기준 평균 1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미용 테크닉 시험은 3시간 30분간 진행되며 필기와 실기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품판매와 서비스 제공 시험은 구두로 30분간 진행되며, 직업 관련 과학 및 응용 예술 시험은 쓰기 시험으로 3시간 30분간 실시된다. 자율 지원자를 제외한 모든 지원자는 미용 영역의 직업 환경에서 법적으로 규정된 12주간 실습 훈련 기간을 증명하여야 한다.(프랑스 교육부, 2016)

CAP 소지자는 Bac pro Esthétique-Cosmétique-Parfumerie와 BP Esthétique-Cosmétique-Parfumerie 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두 과정은 국가자격 레벨 4에 해당하며 Bac pro는 일반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업체와 학교 병행 교육, 통신 교육 등의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지만 BP는 반드시 기업체-학교 병행교육(Formation en alternance)을 통해서만 취득할 수 있으며 관련 영역에서 고급 수준의 직업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였음을 인정해주는 자격이다. Bac pro는 일반적으로는 3년의 교육과정이 필요하지만 CAP 소지자는 2년의 교육 연한을 갖는다. Bac pro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3년 과정의 경우 22주간의 현장 실습기간을, 2년의 교육연한을 갖는 학생들은 16주의 실습기간을 의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Bac pro는 7단계의 시험 과정을 거치며 BP의 시험은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자격 모두 지정된 기일 내에 구두시험을 위해 전공 논문을 제출하여야한다. Bac pro와 BP의 자격시험 관련 사항은 <표 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9. Bac pro와 BP 자격시험

Bac pro	BP
E.1. 자연과학시험	
-E11: 수학 (필기: 1시간)	U31: 고객 관리 및 응대
-E12: 물리학/ 화학 (실기: 1시간)	구두/ 계수 3/ 40분
E.2. 기술 시험 (필기)	-고객 응대, 조언, 판매 상황극 (10분)
-E21: 직무활동 구성 및 관리 (3시간)	-시험관이 선택한 주제에 대한 발표 (10분)
-E22: 미용/ 화장품/ 향수 분야 직업 상황 연구 (4시간)	-논문 발표 (20분).
E.3. 직업 환경 실습 시험	U32: 직업 관련 응용예술
-E31 : 고객 관리 및 응대(구두: 45분)	구두/ 계수 1/ 20분
-E32 : 미용 관리(필기/ 실기:3시간 30분)	-제시된 주제에 대한 구두시험
-E33 : 메이크업(필기/ 실기: 2시간 30분)	U10: 미용 관리
-E34 : 환경건강예방(필기:2시간)	실기/ 필기/ 계수 7/ 3시간 30분
E.4. 외국어 시험 (구두: 20분)	-제품 및 기구, 기술적 지식을 활용하여 연구 목적 또는 명확한 효과를 제시하는 관리 프로그램 고안
E.5. 쓰기시험	-어울리는 기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관리 테크닉 시연
-E51: 프랑스어 (2시간 30분)	- 특별한 얼굴 관리, 바디 관리, 이외 관리 시연
-E52 역사/ 지리학/ 윤리/ 시민정신 (2시간)	
E.6. 응용예술과 예술문화 (실기:1시간 30분)	
E.7 : 체육 시험	
외국어 선택 시험 (구두시험: 20분)	

참고: Guide du candidat individuel Baccalauréat professionnel Esthétique Cosmétique Parfumerie,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2016.

Note à l'attention des candidats Brevet professionnel Esthétique Cosmétique Parfumerie (Session 2016),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2015.

Note à l'attention des candidats Baccalauréat professionnel Esthétique Cosmétique Parfumerie (Session 2017),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2016.

Bac pro와 BP 소지자는 BTS 과정과 BM 과정에 진학할 수 있다. BTS Métiers de l'esthétique, cosmétique, parfumerie(미용, 화장품, 향수 분야 고급기술자 자격증)은 국가자격 레벨 3에 해당하는 고등 교육 학위로 Bac+2 전문학사학위에 해당한다. BTS Esthétique Cosmétique는 2012년 9월부터 법에 따라 BTS Métiers de l'esthétique, cosmétique, parfumerie로 변경되었다. 화장품, 마케팅, 고객과 비즈니스 파트너 관리, 회계, 관련 법규, 미용 기술 등에 대한 숙련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2년 과정으로 이론과 실기 수업, 실습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BTS MECP 과정은 전문가 및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조언자(Expertise et conseil scientifiques et technologiques) 경영, 관리(Gestion, management), 제작, 교육(Animation, formation)분야의 미용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직업 표준과 세부 과업을 제시하고 있다.

BTS MECP에는 A, B, C의 3가지 선택전공이 있는데 선택전공은 2학년 과정부터 이수 할 수 있다. 1학년 과정은 공통과정으로 1068시간이 편성되며 2학년 과정은 1048시간의 공통과정과 선택전공 798시간으로 구성된다. A전공은 기업체 경영, 제품과 서비스 제공, 인사 고용, 직원 관리, 프로젝트 수립 등의 경영관리(Management) 과정이다. B전공은 교육과 브랜드(Formation-marques)과정으로 브랜드 전략과 협상 기술, 판매 촉진, 정보 활용, 교육 기술, 고객 관리, 이미지와 브랜드 런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C전공은 화장품학(Cosmétologie)과정으로 관련 법령, 화학, 실험 수업, 제품 효능과 안전성, 컨셉 및 상품 고안, 마케팅, 제품화 가능성, 연구 등과 관련된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BTS 시험은 구두, 필기, 실기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개 5월 말에 시작된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11-12주의 현장실습(Stage) 확인서나 도제 계약서(Contrat d'apprentissage)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은 총 6단계로, 필

기시험을 보는 1차 시험과 미용 실기시험 및 구두시험을 치르는 2차로 나누어 진행된다. 1차 시험은 서술 필기시험으로 하루 단위로 3일간 3-4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관련 과목으로는 프랑스어, 물리학, 화학, 생물학, 생화학, 화장품학, 회계학, 법률 등이 있다. 2차 시험은 실기시험과 구두시험으로 진행되며 미용 기술 실기시험과 외국어 구술시험 및 논문 구두 발표로 구성되어 있다.(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2013)

시험에 통과하여 BTS 자격을 취득한 후 학업을 지속하고 싶은 경우 대학의 직업학사(Licence professionnelle) 과정에 진학할 수 있다.

BM은 미용, 화장품 분야 전문 경영 자격으로 BTS와 마찬가지로 국가자격 레벨 3에 해당하는 고등 교육 학위로 Bac+2 전문학사학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자격들과는 달리 프랑스 교육부가 아닌 프랑스 가내수공업 및 직업 회의소(Chambre des metiers et de l'artisanat)에서 수여되는 학위이다.(<http://www.cma-paris.fr>) 이론과 실기수업, 실습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용 전문 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관리직, 상업적 역할, 회계 및 재정 관리, 도제훈련생 양성과 교육 관리, 인적자원 관리, 외국어 등의 경영관련 일반 교육 영역과 미용 기술, 관련 법규, 판매와 구매, 화장품학, 생물학, 생화학, 해부학, 물리학, 화학 등의 직업교육 영역의 교과목을 이수한 뒤 시험을 통과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http://www.cnaib.fr>)

한편, 프랑스에는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회복지 피부미용사(Socio-esthéticien(ne))라는 특수 피부미용사가 있다. 의료 복지 분야에서 약자나 노인, 실업자, 환자 등을 대상으로 손톱화장, 손발 관리, 얼굴 관리, 제모, 화장 등의 미용 관리를 행한다. 병원이나 복지 시설에서 주로 근무하여 환자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위생학, 병리학 등에 대한 의료 지식이 필요

하며 정신적, 사회적 박탈감을 가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타심과 교감능력,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직업이다.

현재 프랑스 내에 사회복지 피부미용사 관련 교육은 2가지가 있다. 파리 4대학 의학부가 제안하는 의료분야 미용 전문가(Spécialisation esthétique en milieu médical) 단기 과정은 자격 및 대학 학위와는 관련이 없다. 투르(Tours)에 위치한 사회복지 미용 교육센터(Institut de formation à la socio-esthétique)에서 사회복지와 연관된 사립 미용 수업(Cours d'Esthétique privé à option humanitaire et sociale: CODES)을 이수하면 레벨 4에 해당하는 국가자격이 부여된다.(<http://www.pole-emploi.fr>) 교육과정은 602시간으로 입학 요건은 적어도 미용 CAP를 보유하여야 하며, Bac pro, BP나 BTS를 소지하고 2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된다.(<http://www.onisep.fr>) 이 기관에서 발급되는 Socio-esthéticien(ne)자격은 RNCP에서 인정하는 레벨 4 자격에 해당되지만 교육부에서 학위 및 자격을 수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서 논의한 일반 피부미용사 국가자격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직업군이며 교육과정 및 요구능력의 특수성과 메디컬 분야에서 피부미용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급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프랑스에는 학위를 포함하는 국가자격 이외에도 에스테틱 및 온천센터와 스파, 팔라쏘테라피 센터 등과 관련된 미용 직업군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비슷한 직업자격도 각기 다르게 등록되어 있다. 다음의 <표 10>은 RNCP에 등록된 피부미용사 자격과 미용 관련 자격을 일부 정리한 것이다.

표 10. RNCP에 등록된 미용 관련 자격

자격	코드
CQP spa praticien CQP 스파 프락티션	14637
CQP spa manager CQP 스파 매니저	14638
Hydro-Praticien 하이드로 프락티션	13637
Responsable centre de bien-être et spa 웰빙 센터 및 스파 책임자	12823
Technico-opérateur spa 스파 기술사	17827
Praticien et responsable de spa 프락티션과 스파 책임자	14254
Spa praticien(ne) 스파 프락티션	6911
Praticien bien-être 웰빙 프락티션	19342
Hydrobalnéologue 온천학 전문가	5990
Intervenant SPA et bien-être 스파와 웰빙 참여자	14436
CQP hydro technicien(e) en institut de thalassothérapie	20618
팔라소 테라피 센터 하이드로 테크니션	
Hydro technicien(ne) 하이드로 테크니션	9373
Responsable de centre de mise en beauté des mains et des pieds 손과 발 뷰티 센터 책임자	21676
Animateur formateur pour les entreprises de la beauté 뷰티 기업을 위한 전문가, 교육자	14386
Animateur formateur conseiller en beauté 뷰티 조언 전문가, 교육자	5407
Esthéticienne vendeuse 피부미용사 판매원	7111
Certificat conseillère beauté en parfumerie et esthétique 향수와 미용 제품 뷰티 조연가 증서	1402
Formateur pour marques et distributeurs beauté 브랜드와 뷰티제품 납품업자를 위한 교육자	12237
Animateur(trice) de vente en parfumerie et esthétique 향수와 미용제품 판매 전문가	9834
Certificat d'esthétique et de conseil de vente 미용과 제품 조언 증서	1307
Conseiller de vente en parfumerie et cosmétique 향수와 화장품 판매 조연가	12987
Conseiller(ère) en dermo-cosmétique 약국화장품 조연가	1306
Conseiller(ère) en image 이미지 조연가(메이크오버)	5557
Esthéticien(ne) animateur(trice) de SPA 스파 피부미용사 전문가	17810
Réflexologue 발반사마사지사	23816
Socio-esthéticien(ne) 사회복지 피부미용사	1690
Styliste onguulaire 네일 스타일리스트	76135
Artiste tatoueur 문신 예술가	24826
Conseiller(ère) en communication et image 커뮤니케이션과 이미지 전문가	14426
Esthéticien(ne) - conseiller(ère) beauté 피부미용사-뷰티조연가	22921
Agent thermal 온천센터직원	

참고: <http://www.rncp.cncp.gouv.fr/>

3) 스위스

(1) 직업교육과 자격제도

스위스는 26개의 칸톤(Canton)으로 구성된 연방 국가이다. 칸톤은 스위스 연방을 이루는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스위스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만슈어의 네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2014년 스위스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사용 인구의 비율은 독일어(63.3%), 프랑스어(22.7%), 이탈리아어(8.1%), 로만슈어(0.5%)의 순으로 독일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http://www.bfs.admin.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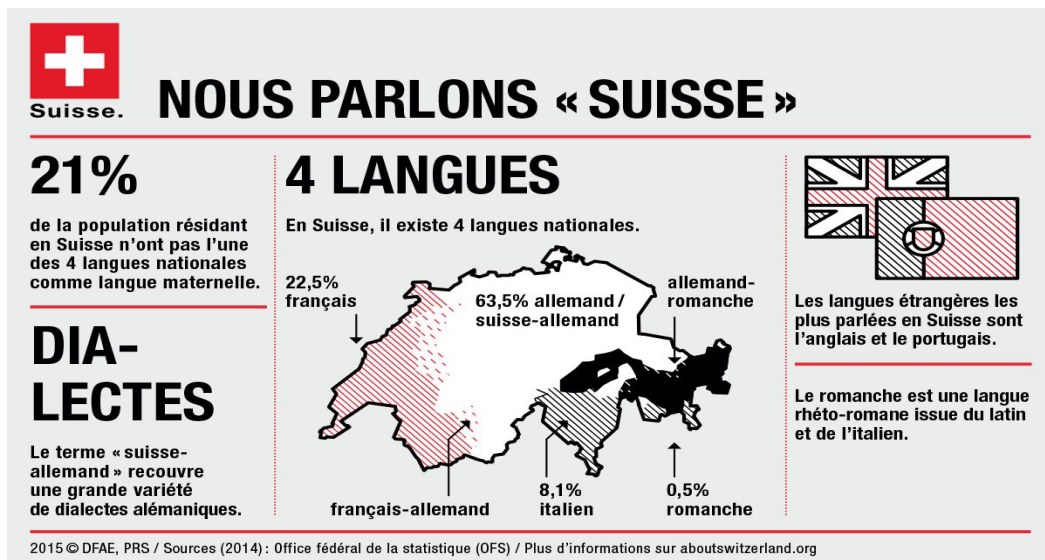


그림 2. 스위스 인구의 언어별 사용 지역

출처: <https://www.eda.admin.ch/>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지역은 공식적으로는 Suisse Romande(스위스 로망드)라 불리는 서쪽지역으로 제네바(Genève), 유라(Jura), 뉴사텔(Neuchâtel) 보(Vaux) 등의 4개의 칸톤이지만 베른(Berne), 프리부르(Fribourg), 발레(Valais), 3개의 칸톤에서도 프랑스어를 독일어와 함께 병용 사용하고 있다.(<https://www.eda.admin.ch>) 또한 UN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스위스의 외교 언어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데,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지역은 <그림 2>에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한편, 스위스의 경우 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칸톤 정부가 행사하기 때문에 칸톤에 따라 교육체제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스위스 중앙정부는 의무 교육에 관해 초등학교와 16살까지의 중학교 과정에만 관여하고 있다. 교육에 관해 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실행권한은 없지만 연방 공과대학 관리나 연구 등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간접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스위스의 직업교육은 연방 정부, 26개의 칸톤, 전문 협회 등의 다양한 기관들의 3자 협력에 의해 운영된다. 연방 정부 기관으로는 스위스 교육, 연구, 기술혁신부(Secretariat d'Etat à la formation, à la recherche et à l'innovation: SEFRI), 고등직업교육 연방연구소(Institut fédéral des hautes études en formation professionnelle: IFFP)가 관장하고 있다. 칸톤에서는 연방직업교육청 스위스 회담(Conférence suisse des offices cantonaux de formation professionnelle: CSFP), 연방 문교부 간부 스위스 회담(Conférence suisse des directeurs cantonaux de l'instruction publique: CDIP)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직업교육을 시행한다.(SEFRI, 2014) 연방정부는 교육의 질 관리, 법령 및 평가규정 제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주는 지역 수준에서의 교육 운영, 직업학교에서 제공되는 훈련 모니터링, 훈련기업 및 산업훈련센터 감독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전문협회는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 결정, 자격 및 시험

개발, 도제훈련 장소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전승환, 2014)

직업교육은 후기 중등교육과정(Degré secondaire II)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이수 후 고등직업교육과정(Enseignement supérieur/Degré tertiaire)도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세부적이고 집약적인 직업교육이 가능하다. 250가지 정도의 도제 훈련 직업교육과정이 있어 전문적인 훈련을 통해 노동시장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학교와 기업체간 상호 도제훈련 듀얼 시스템은 스위스 직업교육의 주요 특징으로, 트라이얼 형태의 기업간(Interentreprise) 직업교육은 25세 정도가 되면 참여할 수 있다.(A. Jacques *et al.*, 2002) 스위스의 도제훈련은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제도가 운영됨과 동시에 기업 내 현장훈련에 대한 철저한 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입직연령단축을 통한 조기 취업, 청년 실업률 감소, 생산성과 기업 수익 증가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강순희, 2014)

스위스의 직업교육은 크게 일반 학생들을 위한 초기직업교육(Formation professionnelle initiale), 고등직업교육(Formation professionnelle supérieure), 계속 직업교육(Formation continue à des fins professionnelles)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 학생들을 위한 직업교육은 도제 훈련제도(Apprentissage)를 기반으로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후기 중등교육과정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과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을 준비하는 2년 과정과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3~4년 과정으로 구분되는데, 직업학교 입학 후 교육과정 이수, 졸업시험 합격여부에 따라 자격 취득이 결정된다. 각 과정을 수료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2012년 기준으로 보면, 후기중등교육과정 학생 중 72.3%가 도제훈련 직업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반교육과정은 27.7%를 차지한다.(전승환, 2014), 3년 과정의 업무 능력 연방 증서(Certificat fédéral de capacité: CFC)와 2년 과정의 직업교육 연방 증명서(Attestation fédérale de formation professionnelle: AFP) 자격은 과정 이수 후 국가시험을 통과하면 취득할 수 있다. 직업 고등학교 학위(Maturité professionnelle)는 학업 결과에 따라 직업교육과정 도중, 혹은 이후에 준비할 수 있다. 4년 과정의 Maturité professionnelle를 받으려면 CFC를 취득한 후에 1년 정도의 교육과정을 거쳐야 한다.

고등직업교육은 보다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관련 분야의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가 과정에 비유할 수 있다. 중등직업교육과정 이수 후 보다 높은 수준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기준에 부합하는 기간의 경력을 쌓은 뒤 교육과정을 거쳐 시험을 통과하면 된다. 이 과정에는 직업 연방 시험(Examens professionnels fédéraux)통과 후 자격이 부여되는 직업 기술 연방 증서(Brevet fédéral: BF), 보다 상위 단계인 고등 기술 연방 시험(Examens professionnels fédéraux supérieurs) 통과 후 취득하는 고등 기술 연방 자격(Diplôme fédéral: DF) 이 있다.

또한 학생들은 후기 중등직업교육과정을 통한 자격 취득 후 바로 취업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교육을 받고 싶은 경우 입학 조건을 충족할 시 교육과정으로 편입하여 상위 학교로 진학이 가능하다. 고등교육과정은 레벨 A(Tertiaire A)의 대학과정과 레벨 B(Tertiaire B)의 직업교육과정으로 구분된다. Maturité professionnelle를 취득하면 입학시험을 치루지 않고 레벨 A의 대학과정에 해당하는 실무중심 대학교(Haute école spécialisée: HES)로 진학할 수 있다. Maturité professionnelle 소지자가 Passerelle maturité professionnelle - Hautes écoles universitaires 시험에 합격하면 일반 대학교나

연방기술종합대학(Ecole polytechnique fédérale: EPF)으로 진학할 수 있다.

레벨 B는 대학과정에 속하지 않으며 관련 학교는 고등직업학교(Ecoles supérieures)로 일반적으로 CFC 자격을 입학 조건으로 요구한다. 교육과정 이수 후 고등직업학교 학위(Diplôme ES)를 받을 수 있으며 학위 취득 후 Post Diplôme ES나 Certificate of Advanced Studies CAS 등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SEFRI, 2014), (L'Assemblée fédérale de la Confédération suisse, 2015)

또한 스위스는 일반 성인 및 평생 교육 분야의 직업교육에도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교육 기관 및 교육의 질에 대한 자체 인증 시스템인 'eduQua'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음의 <표 11>은 스위스의 직업교육 체제와 특성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표 11. 스위스의 직업교육 체제

교육과정	종류	특성
Formation professionnelle initiale 일반 학생들을 위한 초기 직업교육	Degré secondaire II	학교와 기업체간의 학교 이론- 기업체 실무
	후기 중등 교육과정의	도제훈련 듀얼직업교육
	Apprentissage	스위스의 대표적인 직업교육 형태
	도제 훈련	후기 중등교육과정 단계에서 부터 시작
		직업 고등학교 학위로 프랑스의 Bac pro에 해당(https://wirtschaftssprachen.hslu.ch/)
		일반 교육(수학, 언어 등)과 직업교육 혼합
	Maturité professionnelle	입학 시험을 보지 않고 같은 영역의 고등 전문 학교 HSE(haute école spécialisée) 학사과정 진학 가능
	직업 고등학교 학위	기간은 3(4)년이지만 CFC 취득 후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1년에서 2년 연장
		각 칸톤에서 요구하는 좋은 학업 능력을 지녀야 하며 CFC 이후 진학 가능
		3(4)년간 이론-실무 병행하는 도제 훈련 교육 이수 후 자격 취득 가능
	(CFC) 일반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지만 몇몇 학교에 한하여 성인 진학 가능	
	연방 증서 의무 교육 이수 후 진학 가능	
	2년간의 직업학교와 기업체간의 도제훈련과정 이 후 자격 취득 가능	
	학업이나 언어적인 어려움 때문에 3(4)년간 진행되는 CFC 취득이 어려운 경우 취득 가능	
	(AFP) 일반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지만 몇몇 학교에 한하여 성인 진학 가능	
	연방 증명서 의무 교육 이수 후 진학 가능	
Formation professionnelle supérieure	Brevet fédéral (BF)	일반 학생을 위한 직업교육 이수 후 연계 Examens professionnels fédéraux(연방 직업 시험) 통과 후 취득

	자격 취득 후 Examens professionnels fédéraux supérieurs(고등 연방 직업 시험) 과정에 입학 가능
직업 기술 연방 증서	2년에서 3년 동안의 실무 경력 필요 프랑스의 BTS에 해당 (https://wirtschaftssprachen.hslu.ch/francais/2013/07/13/equivalence-des-diplomes-suisse-et-francais/) 2012년부터 시행
Diplôme fédéral (DF) 고등 기술 연방 자격	2012년부터 시행 Examens professionnels fédéraux supérieurs(고등 기술 연방 시험) 통과 후 취득 1년에서 3년 동안의 관련 분야에서의 경력 필요 입학시험을 통과하거나 CFC 자격 및 동등한 자격자 입학 가능
Ecoles supérieures (ES) 고등직업학교	스위스 내 400여개의 전문 과정 개설 일반적으로 2년이지만 과정, 학교에 따라 변동 수료 후 시험 통과 시 Diplôme ES(고등직업학교 학위) 취득
Haute école spécialisée (HES) 상급 전문학교	CFC 자격 및 Maturité professionnelle(직업 고등학교 학위) 취득 필요 고등직업교육과정 중 레벨 A에 해당하는 대학과정에 해당

참고: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en suisse, SEFRI, 2014.

<https://wirtschaftssprachen.hslu.ch/>

<https://www.orientation.ch/>

(2) 스위스 미용 교육과 자격제도

다양한 스위스의 직업교육 중 피부미용사와 관련된 자격은 CFC d'esthéticienne(피부미용사 업무능력 연방 증서), Brevet fédéral d'esthétique médicale (메디컬 미용 고등 기술 연방 증서), Brevet fédéral d'esthétique bio-vitale(바이오 바이탈 미용 고등 기술 연방 증서)이다. 스위스의 미용교육은 칸톤의 교육 규정에 의해 규제를 받기 때문에 칸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미용교육은 직업학교와 사립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지정된 교육 기간과 교과목, 도제훈련을 이수하고 각 칸톤에서 관장하는 시험을 치른 뒤 연방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지정된 전문 미용협회들이 자격 관련 교육과 연방시험에 관여하고 있는데 언어 사용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프랑스어권(Romandie/Suisse romande)의 피부미용사 직업교육 내용과 시험을 관장하는 주요 협회는 CFC의 경우 스위스 피부미용사 업무능력 연방자격증 보유자 협회(Association Suisse des Esthéticiennes avec Certificat Fédéral de Capacité: ASE CFC)이고, BF 자격은 스위스 피부미용사 에스테틱 운영자 협회(Association Suisse des Esthéticiennes Propriétaires d'Instituts de beauté: ASEPIB)이다. CFC 시험은 독일어권은 Schweizer Fachverband für Kosmetik(SFK)가 이탈리아어권은 Associazione Estetiste della Svizzera Italiana(AESI) 협회와 관련이 있고, BF 시험은 독일어권은 Schweizerischer Fachverband für Kosmetik (SFK), 이탈리아어권은 Association des esthéticiennes de la Suisse italienne (AESI) 협회가 관장하고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피부미용사 자격은 CFC로 3년 과정으로 의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입학 자격이 주어지며 이론 수업, 실기 수업, 실무 훈련이 같이

이루어진다. CFC자격 취득 이후나 도제훈련 중에 Maturité professionnelle를 취득할 수 있다. 법 32조항(Article 32)에 따라 학생들이 아닌 성인들도 CFC를 취득할 수 있는데 5년 이상의 직업 경력이나 3년 이상의 미용 관련 직업 경력이 있어야 가능하다.(ASEPIB, 2016) 도제훈련은 다른 과정과 마찬가지로 학생들과 기업체, 에스테틱이나 학교, 이론과 실기 교육을 담당하는 ASE CFC협회 및 국가 등의 3자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음의 <표 12>는 CFC의 교과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2. 피부미용사 CFC 교과목

이론수업	피부미용사 일반론과 직업윤리	화학
	위생과 응급처치	화장품학
	해부학과 인체생리학	미용 관리 테크닉
	피부학	영양학
	피부병학	일반 문화: 불어, 상업, 경제, 회계, 경영, 법 등
	물리학	판매: 상황극, 메일링, 광고 등
실기수업	전기학	눈썹과 속눈썹 염색
	고객-모델 상호 연습	왁스와 전기 기구를 사용한 제모
	클렌징과 딥클렌징	손 관리와 손톱화장
	얼굴 마사지	발 관리
	미용 관리: 진단 후 제품 사용, 픽, 각질제거제 등	바디 관리
기타수업	메이크업: 색도측정법, 다양한 메이크업	기기 사용법
	체육 수업	에스테틱에서의 실무 훈련

참고: Ordonnance du SEFRI sur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initiale d'esthéticienne avec certificat fédéral de capacité, SEFRI, 2011.

시험은 3학년 말에 시행되며 실기시험(Travail pratique), 직업지식(Connaissances professionnelles), 일반 문화 영역(Culture générale)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기시험은 7-8시간동안 진행되며 시험을 위해 지정된 업무를 수

행하여야 한다. 직업지식의 시험시간은 3-4시간으로 1시간의 구두시험과 쓰기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험에 합격하려면 실기시험과 직업지식과 직업지식의 교육경험 영역의 점수를 4점 이상 받아야 하고 총평균점수가 4점 이상 되어야 한다. 실기시험의 계수는 2, 직업지식과 직업지식의 교육경험 영역, 일반 문화의 계수는 1로 직업지식의 교육경험 영역의 점수는 성적표에 기재된 총점의 평균점수로 대체한다.(ASECFC, 2013),

스위스의 미용 국가자격은 단계별로 나뉘어져 있고 직업군도 매우 다양하다. 미용 CFC를 취득하고 2년의 미용 경력을 보유하면 미용 BF 과정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미용 이외의 CFC나 Maturité 취득 후 미용 BF 과정에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 3년 이상의 경력과 3가지 기초 모듈을 통과하여야 한다. 미용 BF의 종류는 모두 5개로 각 자격별로 요구되는 능력과 교육과정은 차이가 있다. 다음의 <표 13>은 스위스의 미용 관련 국가자격과 교육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표 13. 스위스의 미용 관련 국가자격

BF	메디컬 에스테티션	바이오바이탈 에스테티션	네일 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분장사	반영구화장
	↑	↑	↑	↑	↑
	모듈 4,5,6 메디컬 에스테티션	모듈 4,7,8 바이오바이탈 에스테티션	모듈 9,10,11 네일 스타일리스트	모듈 12,13,14 메이크업 분장사	모듈15,16,17 반영구화장
	↑				
	모듈 1 미용학	모듈 2 경영과 유지 절차		모듈 3 고객 조언	
	↑				
	2년 경력		3년 경력		
		모듈 1 미용학	모듈 2 경영과 유지 절차	모듈 3 고객 조언	
CFC	미용 CFC		미용 이외의 CFC		

이 중 피부미용사 BF 자격은 2가지로 Brevet fédéral d'esthétique médicale(메디컬 미용 고등 기술 연방 증서), Brevet fédéral d'esthétique bio-vitale(바이오 바이탈 미용 고등 기술 연방 증서)이다. BF는 스위스의 고등직업자격으로 교육과정 이수 후 직업교육 연방법 28조에 의거하여 연방 시험에 통과하여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피부미용사 BF 자격은 의사의 진단을 받은 고객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고객의 피부와 손톱, 바디의 상태와 변화를 정확하게 구별하여 필요한 관리를 진단, 수행하여야 한다. 다양한 미용 테크닉과 도제훈련생과 견습생의 교육과 업장의 수익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 중 BF 메디컬 피부미용사는 얼굴 피부와 관련하여 레이저, 여드름, 습진 등의 피부 문제, 혈관 및 피부 표면의 돌기 관리를, BF 바이오 바이탈 피부미용사는 하이드로 테라피, 비만 관리, 발반 사마사지, 림프 배농 관리 및 바디 관리를 수행한다.(ASEPIB, 2015-1, 2015-2)

피부미용사 BF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3개월의 미용교육과정 이수 후(<http://www.asepib.ch>) 연방 시험을 치러야 한다. 피부미용사 BF 행정 업무와 시험 규정은 자격검정 책임위원회(Commission chargée de l'assurance qualité: CAQ)의 8-12명의 위원들이 주관하고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조직하여 문제 출제, 구두시험, 시험 평가를 진행한다. 시험 관련 사항은 최소한 시행 12주 전에 서면으로 통지되며, 8주 전에 수험표가 교부된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며 이수한 모듈은 시험 응시를 위해 5년간 유지된다. 교육과정 교과목과 시험과목은 모두 동일하며 최종 시험을 위해 공통 모듈과 자격별 모듈을 모두 통과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며 최종 시험 응시를 위한 모듈 시험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각 모듈별 시험 결과는 합격과 불합격으로 구분되어 표기된다. BP 자격 연방시험의 세부사항은 다음의 <표 14>과 같다.(ASEPIB, 2015-1, 2015-2)

표 14. 피부미용사 BF 시험

모듈	시험과목 및 형태	시간	
공통영역	모듈 1. Esthétique 미용학	필기시험 120분	
	모듈 2. Processus de gestion et de soutien 경영과 유지 절차	필기 시험	
		마케팅 : 간단사례연구	60분
		회계학 : 간단사례연구	60분
	모듈 3. Conseil au client 고객 조언	구두시험	
직원 관리 심층 면접 프레젠테이션		20분 20분	
메디컬	모듈 4. Esthétique médicale générale 일반 메디컬 미용학	필기시험 간단사례연구 45분	
	모듈 5. Acné 여드름	실기시험 피부의 노화 필기시험: 간단사례연구 60분	
		실기시험 175분	
	모듈 6. Soins des appendices épidermiques et des vaisseaux 혈관 및 피부 표면의 돌기 관리	필기시험 간단사례연구 90분	
		전기침 제도 쓰기시험 30분	
		실기시험 15분 안면호조증 관리 필기시험 15분	
바이오	모듈 4. Esthétique médicale générale 일반 메디컬 미용학	구두시험: 조언 40분	
		손을 사용한 립프 배농 필기시험: 간단사례연구 45분	
	모듈 7. Analyse du corps et cellulite 신체 분석과 셀룰라이트	실기시험 40분 피부의 노화 필기시험: 간단사례연구 60분	
		실기시험 175분	
		셀룰라이트 필기시험 90분	
모듈 8. Bien-être physique 신체적 안락	실기시험 50분 구두시험: 심층면접 20분		

참고: Le brevet fédéral d'esthétique médicale et esthétique vitale, ASEPIB, 2015.
Directive relative au règlement des examens-Esthéticienne/esthéticien avec brevet fédéral, discipline esthétique médicale ou esthétique vitale, ASEPIB, 2015.

6가지 모듈을 모두 통과하면 최종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최종시험은 사례연구, 고객 조언, 견해 제시와 직업 면접의 3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직업능력과 방법론적 분석능력이 요구하며 사례연구 시험은 3시간동안 진행되는 필기시험으로 모듈 2: 경영과 유지 절차(Processus de gestion et de soutien)과 관련이 있다. 고객 조언은 모듈 3: 고객 조언(Conseil au client) 시험으로 상황 대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구두시험으로 60분간의 역할극과 30분간의 고객 불만 대응 시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견해 제시와 직업 면접은 공통 모듈과 전공별 모듈 관련 시험으로 메디컬 피부미용사 시험은 미용학, 일반 메디컬 미용학, 여드름, 혈관 및 피부 표면의 돌기 관리 과목이 출제되며 바이오바이탈 피부미용사는 미용학, 일반 메디컬 미용학, 신체 분석과 셀룰라이트, 신체적 안락 과목이 출제된다. 제시된 주제에 맞는 관리 프로그램 작성과 피부 분석은 60분, 실기시험은 90분, 직업 면접과 견해 제시는 30분간 진행된다. 3가지 시험 총점의 평균점은 최소 4점을 받아야 하고 3번째 시험에서는 1점을 획득하여야 하고 불합격된 시험은 재시험을 보아야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ASEPIB, 2015-1, 2015-2)

원칙적으로는 BF를 취득하게 되면 좀 더 높은 수준의 Diplôme fédéral (고등 기술 연방 자격) 과정에 지원 가능 하지만 스위스 내에서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는 미용 학교가 아직은 존재하지 않고 스위스 연방정부가 공고한 BF/DF 목록에도 피부미용사 DF 자격은 없는 것으로 보아 DF 자격은 추후에 시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캐나다 퀘벡주

(1) 직업교육과 자격제도

퀘벡(Québec)주는 캐나다 내에서도 그 언어, 문화 및 기관에 의해, 캐나다 연방 내에서 독자적인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특수한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역사적 사실을 통해 이해 가능하다. 캐나다 퀘벡주는 과거 프랑스인들이 정착하여 개발한 지역으로 지금도 프랑스계 주민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영어가 아닌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데 캐나다가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두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캐나다 인구 중 25%가 프랑스어를 쓰고 있지만 프랑스에서 사용하는 프랑스어와 퀘벡의 프랑스어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림 3>에 붉게 표시된 지역이 퀘벡주이다.



그림 3. 퀘벡주의 위치

출처: <http://www.mining.com/quebec-okays-750m-phosphate-mine/>

한편, 연방국가인 캐나다에서의 교육은 연방정부가 아닌 각주 및 지방별로 조직·감독되고 있기 때문에 주마다 교육과정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의무 교육과정은 6세에서 16세까지이다. 캐나다 정부에는 교육담당 부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 교육장관이 교육문제를 관장한다.(D. Lucie *et al.*, 2015), (외교부, 2014)

퀘벡의 교육 시스템은 유럽의 학제 시스템과 유사하게 전개된다. 6년 과정의 초등교육(Enseignement primaire: 유치원과 초등학교 포함), 5년 과정의 중등교육(Enseignement secondaire: 일반교육과 직업교육 포함: 중학교와 고등학교 통합), 컬리지 교육(Enseignement collégial: 전문학사와 기술 교육 포함), 대학교육(Enseignement universitaire: 학사, 석사, 박사 포함)의 4단계 과정으로 구분되는데 컬리지 교육은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의 중간 단계에 위치하며 대학준비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직업교육과정에는 직업학교학위(Diplôme d'études professionnelles: DEP), 직업전문인증서(Attestation de spécialisation professionnelle: ASP), 직업학습증명서(Attestation d'étude professionnelle: AEP), 직업교육증명서(Attestation de formation professionnelle: AFP), 컬리지 교육학위(Diplôme d'études collégiales: DEC), 컬리지 교육증명서(Attestation d'études collégiales: AEC)등이 있으며 과정을 이수하면 위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학생들을 위한 직업교육은 다른 프랑스어권 국가와 비슷하게 중등교육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주로 교육위원회(Commissions scolaires)가 운영하는 공립직업교육센터나 퀘벡주정부 교육, 여가, 체육부(Ministère de l'Éducation, du Loisir et du Sport: MELS)가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사립기관이 교육을 주관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공식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학생들은 중등과정 3학년 또는 4학년부터 직업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600-1800 시간의 교육과정 이수 후 퀘벡주정부 교육, 여가 체육부로부터 DEP를 받게 된다. DEP를 보유한 학생들은 컬리지나 ASP, AEP 과정에 진학할 수 있다.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는 ASP는 선택한 직업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직업교육으로, DEP나 이와 등등한 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과정에 따라 330-1185 시간의 교육을 받아야한다. 240-720 시간의 AEP 과정은 보다 완벽한 업무능력을 위한 교육으로 DEP, ASP를 Ministère de l'Éducation, du Loisir et du Sport가 주관하는 것과는 달리 Commissions scolaires가 자격을 발부하며 Ministère de l'Éducation, du Loisir et du Sport가 이를 인증하고 있다. AFP는 반전문가 직업교육으로 빠른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한 과정으로 일-학업을 병행하는 도제훈련이 가능하여 직무에 대한 빠른 습득을 통해 노동 시장에 바로 진입할 수 있다. 적어도 15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중등교육 2년 과정 이상을 이수한 사람만 지원할 수 있다. DEC는 3년간의 기술교육과정 이수 후 취득할 수 있으며 철학, 언어, 문학 등의 일반 교육과정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몇몇 대학교에서는 DEC를 대학준비과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원하는 경우 일반 대학으로의 진학이 가능하다. AEC는 컬리지에서 자체적으로 수여하는 일종의 수료 증명서로 교육 기간과 과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유연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http://www3.education.gouv.qc.ca>), (<http://www.toutpourreussir.com>)

2015년 기준 퀘벡 내에는 177개의 공립직업교육센터와 30개의 사립직업교육기관이 존재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140여 가지의 DEP, 25여 가지의 ASP, 26여 가지의 AEP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Fédération des syndicats de l'enseignement, 2015) 다음의 <그림 4>는 퀘벡의 단계별 교육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앞서 언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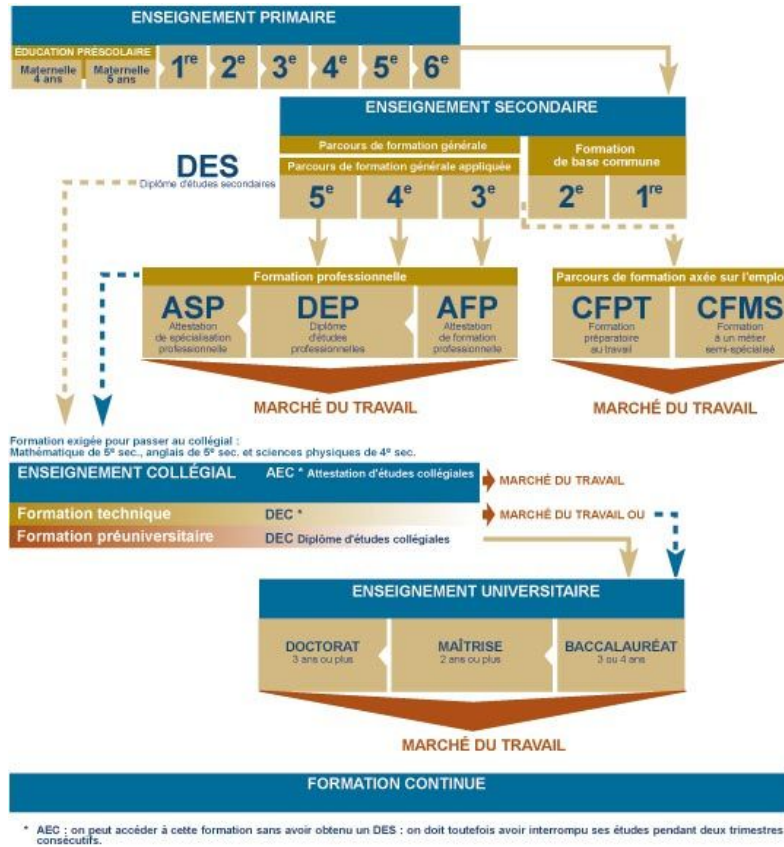


그림 4. 퀘벡주의 단계별 교육과정

출처: 퀘벡주정부, 2011.

한편, 퀘벡주정부 고용부(Emploi-Québec)는 각각의 직업 영역에서 직업 표준(Norme professionnelle)을 지정하여 각 분야별 위원회가 주관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에 한해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직업능력증서(Qualification professionnelle: CQP)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은 2가지가 있다.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 내 도제훈련 프로그램(Programme d'apprentissage en milieu de travail: PAMT)을 통해 훈련자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아 인증서를 취득할 수

있다. 필요한 직업능력을 발전시키고 실무경험을 통해 일에 대한 빠른 습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게 노동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이 도제훈련 프로그램의 큰 장점이다. 실무 경력을 이미 보유한 경우 인력 능력 인정 (Reconnaissance des compétences de la main-d'œuvre: RCMO)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직종에 대한 이론 지식과 실무 능력을 증명하고 위원회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아 인증서를 수여받을 수 있다.

Norme professionnelle(직업 표준)은 필수 능력과 부가 능력을 평가하는데 직업능력증서(Certificat de qualification professionnelle: CQP)는 업무 환경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능력인 필수 능력(Compétences essentielles)이 검증된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 반면 필수능력 중 일부가 검증되거나 부가 능력(Compétences supplémentaires)만 검증된 경우 개별 능력에 대한 직업능력인증서(Attestation de qualification professionnelle)만 발급된다.(<http://www.emploi.quebec.gouv.qc.ca/>) 직업능력 인정은 대개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진행되지만 전기나 가스 등의 몇몇 직업군에서는 법규에 따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2)미용교육과 자격제도

퀘벡에서 대부분의 피부미용사는 공립이나 사립기관에서 일반 직업교육을 받고 노동 시장에 진출한다.(Ministère de l'Emploi et de la Solidarité sociale, 2015) 피부미용사가 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자격은 Diplôme d'études professionnelles en Esthétique(DEP, 미용분야 직업학교학위)로 미용 DEP 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중등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여야 한다. 16세 미만의 경우 교육과정 중에 있거나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의 프랑스어, 영어, 수학에서 중등교육과정 4학년 과정을 이수한 경우, 교육부에서 인정되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경우 입학이 가능하다. 18세 이상이거나 일반 발전 시험(Test de développement général)에 통과한 경우 DEP와 직업교육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때문에 입학이 가능하다.

DEP는 Ministère de l'Éducation, du Loisir et du Sport이 인정하는 국가 자격으로 지정된 직업교육센터(Centres de formation professionnelle: CFP)나 사립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수업 시간은 총 1350시간으로 마지막 학기에 3주간의 실무 훈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미용 DEP의 교육 목적은 얼굴 관리, 메이크업, 제품과 도구들을 사용하기 위한 관련 지식과 필요한 자세들을 습득하고 손과 발의 미용 관리, 제모, 경영, 고객의 요구에 맞는 직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과업을 실행하는 것으로 이론, 실기, 실무 훈련 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미용 DEP의 교과목은 다음의 <표 15>과 같다.

표 15. 미용 DEP 과정 교과목

교과목		시간
Métier et formation	직업과 교육	15
Hygiène et sécurité	위생과 안전	30
Appareils et équipement	기구와 장비	30
Systèmes du corps humain	인체 시스템	90
Communication interpersonnelle	개인 상호간 커뮤니케이션	30
Examen de la peau	피부 검사	60
Relations professionnelles	직업 관계	15
Cosmétologie	화장품학	90
Massage manuel	수기 마사지	60
Facial de base	기초얼굴관리	120
Gestion quotidienne	일상 관리	30
Vente personnalisée	개인 맞춤 판매	45
Maquillage de base	기초 메이크업	105
Manucure	손톱 화장	60
Épilation à la cire	왁스 제모	105
Traitement facial	얼굴 트리트먼트	120
Maquillage personnalisé	개인 맞춤 메이크업	60
Soins esthétiques des pieds	발 미용관리	30
Soins du visage	얼굴 관리	90
Soins du dos	등 관리	30
Information sur les soins du corps	바디 관리 지식	30
Intégration au milieu de travail	직무 환경 통합	105
		1350

참고: <https://www.csmv.qc.ca/formation-professionnelle/programmes/>

<http://www.soinspersonnels.com/esthetique/formation/>

<http://www.inforoutefpt.org/progSecDet.aspx?prog=5035&sanction=5>

미용 DEP를 취득하면 전기 제모(épilation à l'électricité) 직업전문인증서 (Attestation de spécialisation professionnelle: ASP)과정이나 바디관리(Soins du corps) 직업학습증명서(Attestation d'étude professionnelle: AEP)과정에 진학할 수 있다. 전기제모 ASP는 Ministère de l'Éducation, du Loisir et du

Sport가 인정하는 자격으로 과정을 이수하고 나면 전기분해 제모사 (Electrolyste)로 일을 할 수 있다. 공립교육기관이나 사립학교에서 교육이 진행되며 교육과정을 통해 관련 지식의 습득, 다양한 전기 제모 기술, 사용되는 기술의 효과 구분, 안전하고 효과적인 전기 제모 방법, 병리학과 피부 기능의 관계 이해, 심리학 및 직업윤리에 관한 역량 등을 습득할 수 있으며 450 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http://www.soinspersonnels.com>) 전기 제모 ASP의 교과목은 다음의 <표 16>와 같다.

표 16. 전기 제모 ASP 교과목

교과목		시간
Éthique professionnelle	직업 윤리	15
Hygiène et sécurité	위생과 안전	15
Appareil pilo-sébacé	모피지선 기기	15
Consultation	상담	45
Épilation - membres inférieurs	하지 제모	75
Épilation - régions du corps	몸의 부위 제모	90
Courant galvanique	갈바닉 전류	30
Courants combinés	혼합 전류	105
Visage et cou	얼굴과 목	60
		450

참고: <http://www.cfpee.com/index.php/formation/electrolyse/5-epilation-electrique-mels>

바디관리 AEP 과정은 615시간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며 Ministère de l'Éducation, du Loisir et du Sport에 의해 인정되는 과정으로 직업교육센터나 사립학교에서 교육이 시행된다. 교육과정의 목표는 제품사용에 필요한 지식과 자세를 습득하여 과정이수 후 고객에게 상담, 바디 마스크, 각질제거, 림프 배농, 보습 관탄력, 바디라인, 순환 개선, 셀룰라이트 개선, 보습 목적의 특별 바디관리를 위한 기기관리, 순환 관리, 비만 관리, 탄력관리, 셀룰라이트 관리

실행, 개인 맞춤 프로그램 실행,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바디 관리사(Massothérapeute)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은 사립 학교에서만 진행된다. Ministère de l'Éducation, du Loisir et du Sport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중등직업교육과정과 자격은 아직 없으며 DEP 취득 후 바디관리 AEP를 통해서 관련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http://www.soinspersonnels.com>)

한편, 피부미용영역에서도 퀘벡주정부 고용부가 발급하는 직업능력증서(Certificat de qualification professionnelle, CQP)를 받을 수 있다. 직업표준은 실무 경험을 통해 획득한 다양한 업무 능력 및 업무 지식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피부미용사 직업 표준(Norme professionnelle)은 인간 관리 서비스 인력 분야 위원회(Comité sectoriel de la main-d'œuvre des services de soins personnels)가 고안하고 2014년 10월 8일 Emploi-Québec(퀘벡 고용부)가 승인하였다. 다른 직업군들과 마찬가지로 기업 내 도제훈련 프로그램인 PAMT와 인력 능력 프로그램인 RMCO를 통해 고용부가 제시하는 필수 능력이 검증되면 인증서를 취득할 수 있다. 경력이 없는 피부미용사의 경우 능력 발전(Développement des compétences)을 위한 PAMT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경력자의 경우 능력 인정(Reconnaissance des compétences)을 위한 RMCO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도제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훈련생들이 피부미용사 DEP 자격을 보유해야 참여가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장의 훈련자들 대부분은 DEP를 취득한 훈련생들을 고용하고 있다. 도제훈련 기간은 DEP 소지자의 경우 최대 12개월, 일반 사립미용학교 학위 소지자의 경우는 18-24개월이다. 훈련자들은 CQP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며 DEP를 취득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경력, DEP 미취득자의 경우 8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훈련생을 교육할 수 있다. 모든 필수 능력 평가를 통과하면 CQP를 취득하게 되지만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각각

의 능력에 대한 직업능력인증서(Attestation de qualification professionnelle)를 발급받게 된다. DEP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 일반 사립미용학교 학위 취득 후 4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피부미용사들은 RCMO 프로그램을 통해 이론 시험과 실기시험에 통과하면 CQP를 취득할 수 있다. 2시간의 이론시험을 먼저 진행하여 통과하면 3시간 30분간 진행되는 실기시험을 볼 수 있으며 미용 분야의 전문가들이 능력을 평가하게 된다.(Emploi-Québec, 2015), (D. Bouffard *et al.*, 2014)

퀘벡에서는 한국이나 프랑스, 스위스와는 달리 피부미용사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국가자격이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CQP시험은 몇몇 영역을 제외하고는 지원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이다. 또한 DEP와 관련하여서는 퀘벡 고용부가 제정한 직업 표준 규정에 미용 CQP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미용 DEP 자격 미보유자도 일정기간의 관련 경력이 있으면 능력검정을 신청할 수 있고 도제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피부미용사 중에는 미용 DEP를 취득하지 않고 일반 사립학교에서 미용교육을 받은 훈련생도 찾아볼 수 때문이다. 그러나 미용 DEP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고용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고 도제훈련기간도 더 짧다. 또한 경력자들의 CQP 취득을 위한 인력 능력 인정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경력도 단축되기 때문에 미용 DEP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더욱 유용할 것이라 사료된다.

4) 벨기에

(1) 직업교육과 자격제도

벨기에는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 수도인 브뤼셀을 기준으로 북쪽의 플라망드 지방은 네덜란드어를, 남쪽의 왈롱 지방은 프랑스어를, 독일에 인접한 동쪽지역에서는 일부 독일어를 사용한다. 수도인 브뤼셀은 네덜란드어와 프랑스어를 함께 사용하지만 프랑스어를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교육언어도 해당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플라망드 지방에서는 네덜란드어를, 프랑스어 지역에서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벨기에는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연방국가로 연방정부, 3개의 지방정부(Régions)와 3개의 언어공동체(Communautés), 10개의 주(Provinces), 589개의 최소행정구역(Communes)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정부는 플라망드(Flamande), 왈롱(Wallon), 브뤼셀(Bruxelles-capital)로 나누어지며 언어공동체는 네덜란드어권 언어공동체(Communauté Flamande), 프랑스어권 언어공동체(Communauté Wallonie-bruxelles), 독일어권 언어공동체(Communauté Germanophone)로 구분되어 있다. 지방정부와 언어공동체는 각각의 국회와 정부를 가지고 있는데 플라망드 지방정부와 언어공동체는 국회와 정부가 하나로 통일되었다. 연방정부는 가장 상위 정부로 벨기에 국민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결정짓는다. 연방정부는 각각의 권한을 지방정부와 언어공동체에 분산시켰다. 지방정부는 경제, 환경 농업 교통 등 주로 ‘토지’에 관련된 정책을 관장하며 언어공동체는 교육, 문화, 언어 등 주로 ‘사람’에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http://www.levotepourtous.be>), (외교부, 2013) 다음의 <그림 5>와 <그림 5>는 각각의 지방정부와 언어공동체를 나

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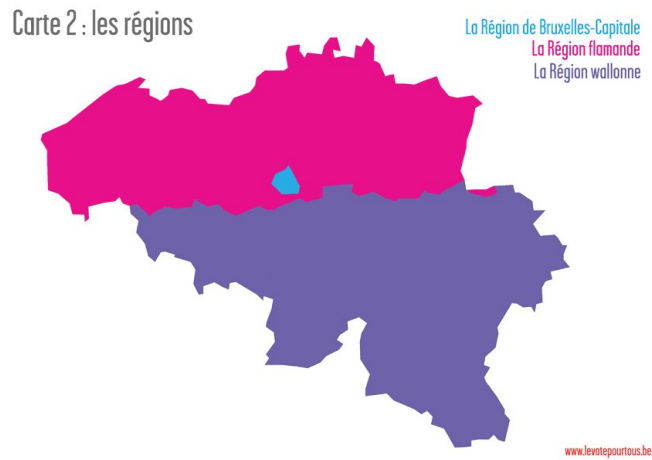


그림 5. 벨기에의 지방정부

출처: <http://www.levotepourtous.be/Les-Regions-et-les-Communautes>



그림 6. 벨기에의 언어공동체

출처: <http://www.levotepourtous.be/Les-Regions-et-les-Communautes>

벨기에의 교육과정과 내용은 각 언어공동체가 조직,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공동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벨기에의 의무교육은 6-18세까지로 15세까지는 풀타임으로 교육을 받고 이후 18세까지는 파트타임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교육과정은 일반적으로 2-6세까지의 유아교육(Enseignement maternel), 6세에서 12세까지의 초등교육(Enseignement primaire), 12-18세까지의 중등교육(Enseignement secondaire), 고등교육(Enseignement supérieur)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기초교육증서(Certificat d'études de bases: CEB)를 수여받고 중등교육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다. 중등교육과정은 관찰 단계(Degré d'observation: 12-14세), 방향결정 단계(Degré d'orientation: 14-16세), 결정 단계(Degré de détermination: 16-18세)의 3기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기술, 예술, 직업분야를 선택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일반교육과정은 고등교육과정에 진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론과 일반 지식에 관한 수업이 대부분이다. 일반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고급 중등교육증서(Certificat d'enseignement secondaire supérieur: CESS)를 취득할 수 있으며 고등교육과정에 진학해 학업을 계속하거나 취업을 할 수 있다. 기술,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하면 CESS나 자격증서(Certificat de qualification: CQ), 6학년 교육증서(Certificat d'études de sixième année: CE6P)자격이 수여되는데 학업을 계속 이어가거나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7학년 과정에 등록하거나 일반 대학(Université), 전문대학(Haute école), 예술학교(Ecole artistique)등의 고등교육과정에 진학할 수 있다. 전문대학에서 학생들은 과학이나 공학 분야에서 장기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1기 과정은 3년 과정으로 학사학위를, 2기 과정은 2년 과정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3년 과정인 단기 교육과정을 선택할 경우 이론 교육과 실기 교육으로 진행되며 학사학위를 취득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1년간 교육을 받게 되면 전문화 증서(Diplôme de spécialisation)를 취득할 수 있다. 일반 대학과정에서는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http://mavoieproeurope.onisep.fr>) 다음의 <그림 7>은 프랑스어권 공동체의 교육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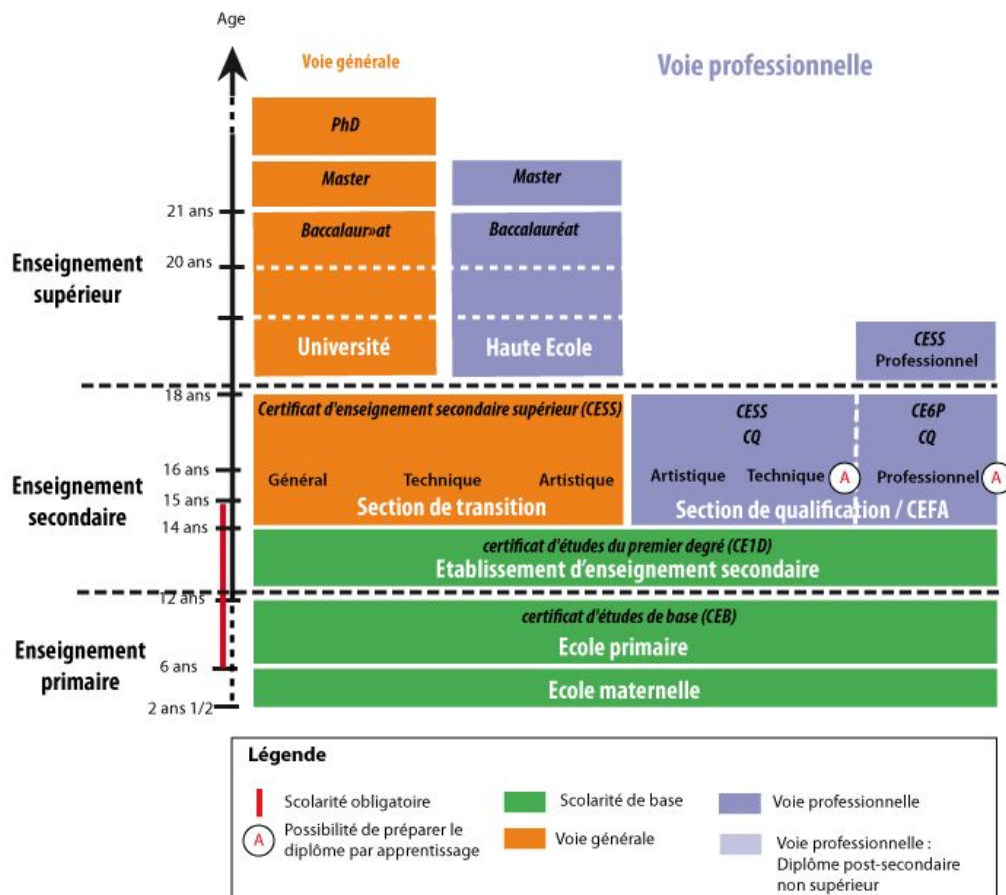


그림 7. 프랑스어 언어공동체의 교육과정

출처: <http://mavoieproeurope.onisep.fr/la-voie-pro-en-europe/belgique/>

벨기에의 직업교육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며 관련 학위와 자격체계도 매우 복잡하다. 언어공동체와 지방정부의 기관들, 노사 협약에 의거하여 구성된 사회 협력단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직업교육이 시행된다.

프랑스어권의 지역은 직업교육은 왈롱-브뤼셀 연방(Fédération Wallonie-Bruxelles)을 중심으로 왈롱 지방정부(Région wallonne), 브뤼셀 지방정부(Région de Bruxelles-Capitale)가 함께 관장하고 있다. 2011년부터 프랑스어권 언어공동체는 명칭을 Communauté Wallonie-bruxelles에서 Fédération Wallonie-Bruxelle(왈롱 브뤼셀 연방)으로 지칭하고 있다. 같은 프랑스어 사용지역이라도 지방정부나 언어공동체에 따라 관련 기관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직업교육 관련 자격은 취득 기관과 대상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취득기관과 관련하여서는 중등교육기관이나 사회지위향상교육(Promotion Sociale)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위, 언어공동체나 지방정부의 직업교육 관련 기관, 프랑스어 언어공동체 위원회의 중소기업을 위한 교육 서비스(Service formation pour l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SFPME)나 왈롱 지방정부의 왈롱 일-학습 병행교육 및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교육원(Institut wallon de formation en alternance et des indépendants et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IFAPME) 등의 교육을 마치고 수여받는 자격, 언어공동체나 지방정부의 중앙심사위원단(Jury central)의 시험을 통과하고 취득한 학위 혹은 자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대상에 따라서는 일반학생들을 위한 의무교육,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 직업교육(Formation Professionnelle Spécialisée), 고등교육(Formation supérieure),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Formation professionnelle contenue), Institut wallon de Formation en Alternance et des Indépendants et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의 병행교육, 일-학습 병행 도제훈련(Formation professionnelle en alternance), 사회지위향상교육(Promotion Sociale)과정에서의 직업중등교육, 근로자, 자영업자 및 사업자를 위한 병행 직업교육(Formation de chef d'entreprise), 경영자격 교육(Connaissances de gestion de base)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벨기에의 직업교육과정은 법령으로 명시된 자격 개요(Profil de Qualification: PQ)와 교육 개요(Profil de Formation: PF)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PQ는 법령에 의거하여 각 직업별로 수행업무에 대한 기능(Fonctions), 직무범위(Activités), 실행 능력(Compétences)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실전 경험을 토대로 각 직업에 필요한 능력들을 제시한 것이다. PF는 자격 증서를 취득하기 요구되는 직업능력을 구조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요구 능력들을 분류하여 등급화 한 것이다. 이는 교육과정 중에 자유자재로 구사해야하는 능력(Compétence à Maîtriser: CM), 훈련해야 하는 능력(Compétence à Exercer: CE)으로 구분되며 CE는 차후 추가적인 교육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능력(Compétence à acquérir lors d'une ou plusieurs Formations ultérieures: CEF)과 직업 활동을 통해 익힐 수 있는 능력(Compétence à acquérir dans le cadre d'activités Professionnelles: CEP)으로 구분된다.(<http://www.icmr.be>), (Ministère de la Communauté française,, 2009), (http://www.google.be/url?sa=t&rct=j&q=&esrc=s&source=web&cd=2&ved=0ahUKEwiFq8K2sZfQAhWlUbwKHeVKAqkQFgglMAE&url=http%3A%2F%2Fenseignement.catholique.be%2Fsegec%2Ffileadmin%2FDocsFede%2FFESEc%2Fspecialise%2FDuProfilAuProgramme2005.ppt&usg=AFQjCNFtyI4S3NaAcJX-DBMDTHNC_LlpQw&bvm=bv.137904068,d.dGc) PQ가 규정하는 기준은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반영되며 PQ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PF가 구성되는 것이다. 직업교육과정의 전공들은 PQ에 따라 기술자격교육(Enseignement technique de qualification)과 직업교육

(Enseignement professionnel)으로 분류된다.

학생들을 위한 직업교육은 14세 중등교육단계에서부터 시작되며 앞서 언급한 기술자격교육과 직업교육의 2가지 양상으로 전개된다. 기술교육의 경우 이행(Transition)과 자격(Qualification) 영역이 있고 이행영역 기술교육과정에서는 2기, 3기 과정을 수료하면 6학년을 마치고 CESS를 취득하게 된다. 자격영역 기술교육과정에서는 6학년을 마치고 CESS를 취득하거나, 6학년이나 7학년을 마치고 자격증서(Certificat de qualification: CQ)인 CQ6나 CQ7을 취득할 수 있다. 직업교육과정은 자격 교육영역에 속하며 관련 자격으로는 CESS, CQ6, CQ7, 경영부가능력증서(Certificat complémentaire de la gestion d'entreprise: Gestion)등이 있는데 선택 직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6학년 과정이 끝나면 CQ6가 수여되며 1년의 추가 교육을 통해 7학년 과정을 이수하고 CESS를 취득할 수 있다. 선택 과정에 따라 7학년 수료 후 CQ7 자격이나 Gestion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중등직업교육과 중등기술교육의 기초 선택 전공과 7학년 자격과정의 일람표는 프랑스어권 언어공동체 정부에 의해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다.(<http://www.enseignement.be/>), (Ministère de communauté française, 2004)

중등교육 2년 과정을 이수하거나 16세 이상의 학생들은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파트타임 수업을 선택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일-학습을 병행하는 파트타임 형태의 기술 및 직업교육과정의 경우 1-3년의 훈련기간이 소요된다. 프랑스어 언어공동체의 경우에는 일-학습 병행 교육 센터(Centres d'éducation et de formation en alternance: CEFA)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서의 2일간의 기술교육, 3일간의 기업체에서의 실무훈련을 병행하거나 브뤼셀 지방정부의 중소기업 교육센터(Espace formation PME: EFP), 중소기업을 위한 교육 서비스(Service formation pour l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SFPME) 활동 지방정부의 활동 일-학습 병행교육 및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교육원

(Institut wallon de formation en alternance et des indépendants et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IFAPME)등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도제훈련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Paul Cotton, 2001)

일반 성인들을 위한 직업교육은 구직자 및 직업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프랑스어권 언어공동체는 비영리협회(Association sans but lucratif: ASBL)를 구성하여 저급기술자나 노동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교육에 관여하고 있다. 성인 직업교육에는 경영자 및 자영업자 교육, 사회적 지위 향상 교육, 구직자 교육 등이 포함되는데, 경영자 및 자영업자를 위한 교육은 경영과 관련된 직업교육으로 관련 기관으로는 브뤼셀 지방정부의 Espace formation PME, 왈롱 지방정부의 Institut wallon de formation en alternance et des indépendants et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등이 있다.(Paul Cotton, 2001), (Centre européen pour le développement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2015) 사회적 지위 향상 교육(Enseignement de promotion sociale: EPS)은 성인들에게 일반, 기술, 예술, 직업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제공하여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자격이나 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교육으로 우리나라의 학점은행제나 평생교육원 학사학위제도와 비슷한 성향을 나타낸다. 모듈 시스템(Système modulaire)과 순차 시스템(Système linéaire)의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모듈 시스템은 학점(Unités de formation: UF) 단위로 진행되며 한 가지 영역에서 단일 또는 다수의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순차 시스템은 일반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학년 단위로 진행되며 프랑스어권 언어공동체는 점차적으로 순차시스템이 모듈시스템으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이며 프랑스어권 언어공동체에는 162개의 관련기관이 있다.(<http://www.epsperuwelz.be/>), (<http://www.enseignement.be/>)

벨기에에는 언어공동체와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중앙 심사위원단(Jury

central)이라는 시험제도가 있다. 일반, 예술, 기술, 직업 중등교육과정과 고등교육과정의 학위 및 자격, 다양한 직업자격을 관장하는데 중등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해 중등교육과정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직업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영역별 직업능력(Compétence professionnelle sectorielle)과 기초경영지식(Connaissances de gestion de base)을 보유해야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일반적인 고등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 심사위원단의 국가시험을 통과하면 학위나 직업자격 등을 취득할 수 있다.(<http://economie.wallonie.be>), (<http://www.enseignement.be/>) 그러나 고등교육 학위와 관련된 중앙 심사위원단의 시험은 프랑스어 언어공동체에서만 진행되며 네델란드 언어공동체에서는 초등교육과정과 중등교육과정의 시험을, 독일어 언어공동체에서는 중등교육과정의 시험을 치를 수 있다.(<http://www.belgium.be/>)

중등교육학위의 경우 각각의 중등교육 1기, 2기 3기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취득할 수 있다. 일반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2기 중등교육증서(Certificat d'enseignement secondaire du deuxième degré: CES2D)시험, 3기 중등교육증서(Certificat d'enseignement secondaire du 3e degré: CESS) 시험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시험을 치를 수 있다. 2기 시험은 프랑스어, 수학, 과학, 역사와 지리학, 현대 언어I(네델란드어, 영어, 독일어 중 선택), 라틴, 고대 그리스, 현대 언어II(네델란드어,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중 선택), 경제 과학, 사회과학 과목으로 구성된다. 3기 시험은 일반, 기술, 예술 직업교육과정으로 프랑스어, 수학, 현대 언어I,II,III, 역사 및 지리학, 기초 과학(생물학, 화학, 물리학), 라틴, 그리스, 경제 과학, 사회과학, 심리학, 일반 과학 등의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http://bruxelles-j.be/>)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학위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중앙 심사위원단의 시험을 통과하여 직업자격을 취득하여 노동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기

본 경영 지식 시험의 경우 30문항이 출제되며 시험 직후 결과를 알 수 있고 영역별 직업능력 시험은 이론 시험으로 법으로 규정된 직업능력과 관련이 있으며 직업별로 요구되는 능력은 각기 다르다. 시험에 통과하면 기업체 창구(Guichet d'entreprises)를 통해 벨기에 사업자 등록부(Banque-Carrefour des Entreprises)에 등록할 수 있다.(<http://economie.wallonie.be/>)

벨기에의 직업교육은 경력이 없는 입문자와 학생부터 구직자, 및 경력자와 기업체의 경영자까지 포괄하는 여러 단계의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다각적으로 교육체계가 발달되어 있어 교육이 단절되었다 할지라도 개인의 능력과 여건에 따라 교육과정에 다시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사회위 향상 교육이나 중앙 심사위원단의 시험제도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열 수 있고 원하는 경우 고등교육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교육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직업교육 또한 지방정부, 공공기관, 언어공동체, 기업체 등의 상호 협력을 통한 도제훈련제나 고용연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직업교육과정이 정착되어 근로자나 훈련생뿐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자나 자영업자들을 위한 경영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훈련 역량을 높일 수 있어 직업능력 향상과 능력 평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2) 벨기에의 미용교육과 자격제도

벨기에의 미용교육은 중등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학생이 국가에서 인정되는 중등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은 아니며, 비전공자, 일반 성인들의 경우에도 직업에의 접근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시스템을 통하지 않아도 자격을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국가가 인정하는 중등 미용교육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미용사 자격이 인정되어 국가시험이 면제된다. 중등 미용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했거나 국가가 인정하는 중등 미용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 Jury central이 관장하는 시험을 통해 미용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벨기에의 중등교육에서의 미용교육은 중등교육기관이나 사립 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EPS를 통해서도 중등교육과정의 미용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미용 전공의 교육기간은 6-7년으로 1기, 2기, 3기 과정을 이수하면 6년이 소요되지만 추가 교육과정을 선택할 경우 1년이 연장되며 풀타임과 파트타임 도제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중등 미용교육과정은 총 3가지 형태로 풀타임과 파트타임 형태의 도제훈련, 성인들을 위한 EPS로 구분할 수 있다.

1기 중등교육과정은 1기 분화과정(1er degré Différencié)과 1기 공통과정(1er degré Commun)으로 나누어진다. 1er degré Différencié는 초등교육과정에서 기초 교육증서(CEB)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2년 과정으로 CEB 합격을 위한 과정이다. 1학년 말에 시험에 통과하여 CEB를 보유하게 되면 1er degré Commun을 이수할 수 있다. 1er degré Commun는 CEB를 보유한 학생들을 위한 과정으로 모든 학교에서 동일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초등교육에서 연장된 기초 지식을 배우는 과정으로 전공을 선택하는 2기 과

정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1기 과정을 이수하면 1기 교육증서 (Certificat d'études du 1er degré: CE1D)을 취득할 수 있는데 1기 공통과정 2학년을 이수했지만 CE1D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들은 보충 학년(Année complémentaire)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다음의 <표 17>은 공통과정과 분화과정의 교과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7. 공통과정과 분화과정 교과목

공통과정	분화과정
종교/윤리	
프랑스어	
수학	종교/윤리
역사와 지리학	프랑스어
현대 언어	수학
과학 입문	현대 언어
물리학	물리학
기술 교육	기술 교육
예술 교육	

참고: Circulaire n° 4492 du 25/07/2013: Circulaire générale relative à l'Organisation de l'enseignement secondaire ordinaire et à la Sanction des études - Cette circulaire abroge la circulaire n°4140 du 13 septembre 2012, Fédération Wallonie-Bruxelles, 2013, pp. 15-22.

한편, 2기 중등교육과정부터 각 영역별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데 공통 교육 교과목과 전공에 따른 선택교육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피부미용과정과 헤어(Coiffeur)과정은 인간서비스(Services aux personnes)영역에 속한다. 피부미용 과정은 학교와 지역, 세부 전공과 학년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종교와 윤리, 프랑스어, 역사와 지리학, 과학과 기술교육, 현대 언어, 물리학, 응용과학, 해부학, 화장품학, 영양학, 미용학과 건강상태,

경영 지식, 얼굴 및 바디 관리, 손과 발 관리, 메이크업, 손톱화장, 제모 등의 미용테크닉과 이외 전공 관련 교과목 등을 이수할 수 있다.

피부미용 2기 과정은 3, 4학년 과정으로 학교에 따라 2가지 전공으로 구분되는데 바이오 미용(Bio-esthétique)전공은 기술자격교육(Enseignement technique de qualification)으로 분류되며 뷰티 관리(Soins de beauté)전공은 직업교육(Enseignement professionnelle)과정에 속한다.

3기 중등교육은 5, 6학년 과정으로 기술자격교육인 피부미용사(Esthéticienne) 전공과 직업교육인 뷰티 관리(Soins de beauté)전공이 있다. 3기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나면 CESS와 피부미용사 자격증서(Certificat de qualification d'esthéticien(ne): CQ)를 취득할 수 있는데 학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 7학년 선택과정에 진학하여 CQ7을 취득할 수 있다.

벨기에에서 7학년 과정은 숙련과정(Qualifiantes)과 보충과정(Complémentaires)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Qualifiantes은 기술(Technique qualifiante)과 직업(Professionnelle qualifiante)분야로 세분화 된다 기술과정을 이수하면 CQ7 자격증서와 기술중등교육 7학년 졸업 증서(Certificat d'études de 7e année de l'Enseignement secondaire technique)를, 직업과정을 이수하면 CESS와 CQ7을 취득할 수 있다.

Complémentaires은 자격개요(PQ)나 교육개요(FQ)가 명시하는 직업군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충과정 역시 기술(Technique complémentaire)과 직업(Professionnelle complémentaire)과정으로 나누어진다. 기술과정을 이수하면 Certificat d'études de 7e année와 6학년 자격증서에 대한 부가능력 증명서(Attestation de compétences complémentaires au certificat de qualification de 6e année)가 발급되며 직업과정을 이수하면 CESS와 7학년 과정에 진학할 수 있는 CQ6를 받게 된다. (Ministère de la Communauté française, 2009)

피부미용 관련 7학년 과정에는 7e TQ Gestionnaire d'institut de beauté(에스테틱 경영자)전공이나 7e TQ Esthécien social(사회복지 피부미용사)전공, 연극, 영화, 방송매체와 관련된 7e Complément d'esthétique orientation artistique(예술미용)전공, 7e Complément en vente en parfumerie(향수 화장품 판매), 7e Complément en pédicurie-manucurie(손, 발 관리사)등의 전공이 있다. 다음의 <표 18>은 프랑스어권 언어공동체의 피부미용 중등직업교육과정을 단계별로 나타낸 것이다.

표 18. 프랑스어권 언어공동체의 단계별 피부미용 중등직업교육과정

학년	구분	취득 자격	
1er degré	1er degré Commun	1C	2C
	1기 공통과정		
1기 (1/ 2학년)	1er degré différencié	1D	2D
	1기 분화과정 Année complémentaire 보충 학년		CE1D
2ème degré	Bio-esthétique	3TQ	4TQ
	2기 바이오 에스테틱 Soins de beauté		CE2D
(3/ 4학년)	뷰티 관리	3P	4P
	3ème degré	5TQ	6TQ
3기 (5/6 학년)	피부미용사 Soins de beauté		CESS CQ6
	뷰티 관리	5P	6P
7ème 7학년	Gestionnaire d'institut de beauté	TQ	
	에스테틱 경영자		
	Esthécien social	TQ	
	사회복지 피부미용사		
	Complément d'esthétique orientation artistique	P	CESS CQ7
	예술 미용 보충과정		
	Complément en vente en parfumerie 향수 화장품 판매 보충과정	P	
Complément en pédicurie-manucurie 손발 관리사 보충과정	P		

참고: Ministère de la Communauté française, Enseignement de plein temps: Humanités professionnelles et techniques enseignement professionnelles 7e année complémentaire, 2009, p. 4.

벨기에의 중등 미용교육과정은 P나 TQ의 교육과정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전공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본 중등교육과정을 이수한 이후에도 원하는

직업군에 따라 보충과정에 진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무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들을 기업체나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해 PQ와 FQ에 구체화시켜 이를 교육과정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교육 목적과 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집약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자영업이나 창업을 위한 경영교육을 중등교육과정에서부터 이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근로자로서 피부미용업에 종사한다 할지라도 경영 능력을 습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무에 유익할 것이라 판단된다.

2. 피부미용사 직무범위 비교

1) 한국

미용 관련 국가기술자격은 기능장 자격의 미용장과 기능사 자격의 미용사로 분류된다. 미용사(네일)가 2014년 국가자격으로 승격되면서 미용사 기술자격에 포함되어 업무 영역이 세분화되었다. 미용사 자격은 2015년 현재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미용사(네일)로 구분된다. 2015년 1월 21일 개정 사항에 따라 미용사(메이크업) 종목은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다. 미용사의 업무 영역은 미용 자격과 관련하여 머리 손질과 피부 관리, 네일, 메이크업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호는 미용업(피부)을 ‘의료기기나 의약품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 피부 관리, 제모, 눈썹손질을 행하는 영업’이라 명시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 제4호는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의 직무범위를 ‘의료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분석, 손을 이용한 피부 관리, 기기를 이용한 피부 관리, 팩, 제모, 눈썹 손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부상태를 분석하여 피부를 관리하는 것은 가능하나 보건복지부령 제 283호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안마사의 업무범위인 안마, 마사지,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하다. 또한 현행법상 의료법에서 의료기기로 분류되어지는 피부미용기기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피부미용사의 수행 직무를 ‘얼굴 및 신체의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보호·개선·관리하기 위하여 각 부위와 유형에 적절한 관리법

과 기기 및 제품을 사용하여 피부미용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시험 출제기준에 따르면 피부미용사의 직무 내용은 '고객의 상담과 피부분석을 통해 안정감 있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얼굴, 신체 부위별 피부를 미용기와 화장품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무수행'이다. 한국은 피부미용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이나 직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따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실기시험 출제 기준이 제시하는 피부미용사의 국가자격의 수행준거는 다음의 <표 19>와 같다.

표 19. 한국 피부미용사의 국가자격의 수행준거

수행준거	내용
1	피부미용 실무를 위한 준비 및 위생사항 점검을 수행 할 수 있다.
2	피부의 타입에 따른 클렌징 및 딥클렌징을 할 수 있다.
3	피부의 타입별 분석표를 작성 할 수 있다.
4	눈썹정리 및 왁싱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다.
5	손을 이용한 얼굴 및 신체 각 부위(팔, 다리 등)관리를 수행 할 수 있다.

참고: <http://www.q-net.or.kr/>

현재 국내 에스테틱과 스파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피부미용업소에서 의료기와 더불어 각종 피부미용기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의료기와는 구분되는 피부미용기기 관련 법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피부 미용의 직무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 짓기 위해서도 미용기기사용 합법화 및 미용기기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2) 프랑스

RNCP(국가자격직업명부)는 피부미용사 직업 및 CAP, BP, BTS, BM 등의 피부미용사 자격과 관련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격별로 요구되는 자질이나 능력은 각각 차이가 있다. 자격과 관계없이 Esthéticien(피부미용사)라는 직업에 대해 RNCP는 ‘피부미용사 혹은 미용 회사 담당자의 고용인으로 일반적으로 에스테틱이나 향수화장품 상점에서 에스테티션이나 코스메티션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직무범위와 요구되는 자질은 다음의 <표 20>과 같다.

표 20. RNCP가 제시하는 피부미용사 국가직무능력표준

	- Réalisation des soins fondamentaux et spécifiques du visage 기본 및 특수 얼굴관리 실행
	- Réalisation des soins fondamentaux et spécifiques manucurie beauté des pieds épilations cire chaude, cire froide, avec des strips 기본 및 특수 손·발관리와 왁스 스트립 제모 실행
	- Réalisation des soins fondamentaux et spécifiques du corps 기본 및 특수 바디관리 실행
직무범위	- Conseil des clients et vente des produits et prestations de l'institut 고객 조언 및 제품 판매와 서비스 제공
	- Des fonctions de gestion et d'assistance à la direction dans les différents domaines d'activité de l'institut peuvent lui être confiées 경영 업무 및 부여된 다른 영역의 관리 보조 업무 수행
	: Négociation avec les fournisseurs 납품업체와의 협상
	: Comptabilité 회계
	: Gestion des stocks de produits 제품 재고 관리
	: Gestion du personnel de l'institut 직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naît et maîtrise les techniques de soins (du visage, des pieds, du corps, du dos) 얼굴, 발, 몸, 등 관리 테크닉을 알고 숙련되게 구사할 것 - Connaît et maîtrise les techniques de maquillage, de manucure, d'épilation 메이크업, 손관리, 제모 테크닉을 알고 숙련되게 구사할 것 - Est capable d'identifier les besoins du client et de lui proposer des réponses appropriées 고객의 요구를 식별할 줄 알고 적절한 답변을 제시할 것
요구자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naît les techniques de gestion du personnel et de gestion comptable de l'institut 직원 관리와 회계 관리 테크닉을 알고 숙련되게 구사할 것 - Maîtrise les techniques de vente 판매 기술을 숙련되게 구사할 것 - Connaît et maîtrise les techniques de gestion des stocks de produits de l'institut et d'acquisition de matériels adaptés 제품 재고 관리와 필요한 용품 구입 기술을 알고 숙련되게 구사할 것 - Connaît et maîtrise les techniques de négociation avec les fournisseurs. 납품업자와의 협상 테크닉을 알고 숙련되게 구사할 것

참고: <http://www.mcp.cncp.gouv.fr/>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INSEE, 국립 통계 경제 연구소)가 제정한 Le code NAF (Nomenclature d'activités française, 프랑스 업무 목록 법규)는 'Soins de beauté(뷰티 관리)를 뷰티 분야에 대한 조언, 미용목적의 얼굴과 피부 관리, 손과 발 관리, 제모, 바디 관리, 자외선과 적외선 트리트먼트와 위생서비스를 포함'하는 영역이라 규정하고 있다.(F. Régine, 2014)

프랑스에서는 피부미용 영역에서 Massage 단어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Massage 단어 대신에 Massage (de) Bien-être

혹은 Massage (de) relaxation 등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법으로 명시된 Modelage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1996년 7월 5일 법 Art 16-1는 미용적인 관리를 ‘사람에게 행해지는 미용관리는 의료 및 준의료 관리와는 달리 의료적인 목적이 아닌 미용적이고 안락한 모듈라쥬 관리로 직업적으로 자격이 부여된 사람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1998년 법령(Décret) 98-246에 따르면 ‘뷰티 관리 직무영역에 포함되는 행위들 중 하나를 수행하는 자 혹은 자격이 부여되지 아니한 자의 직무활동을 관리하는 자는 CAP나 BP 자격이나 직업 수행을 위해 동등하거나 상위단계의 승인된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https://www.legifrance.gouv.fr/>)

이처럼 프랑스에서 피부미용사 직무활동은 미용 화장품 향수 분야의 CAP 자격 취득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프랑스에서 피부미용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격은 CAP이기 때문에 CAP 자격의 직무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 교육부가 발표한 CAP Référentiel des activités professionnelles(직무 지침)에 따르면 미용 화장품 향수 분야 CAP 소지자는 자격이 부여된 자로 미용 테크닉과 조연 및 화장품 및 향수 제품 판매, 조연 및 미용 서비스 제공의 전문가로 직무범위는 다음의 <표 21>과 같다.(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2008)

표 21. 미용 화장품 향수 분야 CAP자격의 직무범위

-
- Réaliser des soins esthétiques du visage au décolleté, des mains et des pieds, des maquillages du visage et des ongles, des épilations

얼굴과 데콜레 및 손과 발의 미용관리, 얼굴 및 손톱 메이크업, 제모 실행하기

- Activité1 - Réaliser des soins esthétiques, du visage au décolleté

얼굴과 데콜레 미용관리 실행하기

- Activité2 - Réaliser une épilation

제모하기

- Activité3 - Réaliser une prestation bronzage UV

태닝 관리하기

- Activité4 - Réaliser un maquillage, visage et décolleté

얼굴과 데콜레 메이크업 하기

- Activité5 - Réaliser des soins esthétiques et des maquillages des mains et des pieds

손과 발의 미용관리와 메이크업 하기

-
- Accueillir, conseiller le (la) client(e), vendre des produits cosmétiques et de parfumerie, des prestations de services

고객 접대하기 및 조언하기, 화장품 및 향수제품과 서비스 판매하기

- Activité1 - Accueillir, prendre en charge et prendre congé du ou de la client(e)

고객 접대, 담당 및 고객 배웅하기

- Activité2 - Conseiller et vendre des produits et/ou des prestations

조언과 제품 및 서비스 판매

- Activité3 - Mettre en valeur des produits et/ou des prestations

제품과 서비스 운용하기

-
- Assurer la gestion des rendez-vous, du stock, des encaissements et du suivi de clientèle

예약 관리, 재고 관리, 영수, 고객 관리 업무 수행하기

- Activité1 - Gérer les rendez-vous 예약 관리하기

- Activité2 - Gérer les stocks 재고 관리하기

- Activité3 - Gérer le poste de travail 작업장 관리하기

- Activité4 - Gérer les encaissements 영수하기

참고: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Référentiel CAP Esthétique Cosmétique Parfumerie, 2008, pp. 5-18.

프랑스에서는 피부미용사의 직무범위가 우리나라에 비해 넓고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메이크업과 손톱 화장이 포함되어 있고 미용관리 이외에도 고객 응대 및 관리 및 서비스의 조언과 제품 판매 등이 직무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단순 관리만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의 상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숙달시켜 보다 전문적인 미용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직업윤리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회계 및 재고 관리 등의 경영 능력도 요구되는데, 피부미용 업무이외에도 실무와 관련하여 에스테틱 경영 및 매니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위 자격을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 능력으로 판단된다. 주목할 것은 프랑스에서는 태닝 관리를 피부미용사의 직무범위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태닝 기구를 사용할 경우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주의사항과 지침들이 있고 그것들이 피부 미용 및 피부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아직 관련 자격이 없다. 프랑스에서는 과거 태닝 관리가 피부미용사의 직무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격 취득을 위해 관련 교육을 따로 받고 태닝 기구 사용 교육증명서 (Attestation de formation à l'utilisation des appareils UV)를 제출해야 했지만 교육과정의 개편을 통해 태닝 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면서 보다 합리적으로 실제 현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CAP 자격은 원칙적으로 바디관리 직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위 자격인 BP나 BAC pro를 취득하여야 피부미용사로서 바디 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스위스

각 칸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제네바 정부는 Esthéticien(ne)을 미용 영역에 종사하는 남성 및 여성 근로자로서 에스테틱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피부미용사와 네일 아티스트, 헤어샵 등에서 근무하는 미용사 등을 직업 정의에 포함시켜 피부미용사를 Esthéticien(ne)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http://www.ge.ch/legislation/>) 그러나 스위스에서 Esthéticien(ne) 명칭은 주로 피부미용사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스위스에서 피부미용사 직무 수행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국가자격은 CFC 자격이다. 중등직업교육 단계에서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이 규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성인들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스위스 교육, 연구, 기술혁신부(Secretariat d'Etat à la formation, à la recherche et à l'innovation: SEFRI) 법령에 따르면 CFC를 취득시 법적으로 Esthéticien(ne) CFC 자격을 보유할 수 있다.(SEFRI, 2016) CFC는 시험, 자격취득까지 연방 정부와 칸톤, 피부미용전문협회의 3자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며 CFC를 관장하는 프랑수어권 지역 협회는 스위스 피부미용사 업무능력 연방자격증 보유자 협회(Association Suisse des Esthéticiennes avec Certificat Fédéral de Capacité: ASE CFC)이다.

ASE CFC는 피부미용사를 '고객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 에스테틱이나 살롱에서 뷰티관리를 실행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남성등과 여성들이 아름다워지는 것과 이목을 끄는 것,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용모를 유지하는 것을 도우며,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피부미용사는 미용관리를 숙련되게 실행하고 생활의 건강관리와 제품 판매를 위한 조언을 제시하는 직업'이라 정의하고 있다. 또한 피부미용사는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신체적 건강과 근육이 발달한 다리와 등이 필요하며 고객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요구와 바람을 인지하고 고객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주목할 것은 피부미용사의 육체노동을 위한 체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고객과의 관계와 의사소통을 매우 중시하고 있는데 제품 판매 이외에도 고객에게 건강과 위생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또한 한국과는 달리 스위스 피부미용사의 직무범위에 손과 얼굴 메이크업, 눈썹, 속눈썹 등의 반영구 화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SE CFC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피부미용사의 직무범위는 다음의 <표 2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2. ASE CFC가 제시하는 피부미용사의 직무범위

직무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관리: 손톱화장, 부러진 손톱 보수, 인조 손톱 연장, 마사지, 파라핀 관리, 온장갑 관리, 육조관리 및 각질제거 등의 특수 관리 -발관리: 뷰티관리, 마사지, 각질제거, 팩, 찜질 관리 -제모: 다리와 허벅지, 팔, 얼굴 등의 핫, 쿨왁스, 족집게, 전기제모 -염색: 눈썹, 속눈썹 -얼굴관리: 클렌징, 피부진단, 세정, 각질제거, 마사지, 마스크, 이온토포레시스 특수 관리 -메이크업: 낮, 밤, 웨딩, 연극 -바디 관리: 마사지, 각질제거, 팩, 찜질 -상체 관리: 마사지, 마스크 -특수 관리: 눈썹 반영구, 속눈썹 퍼머넌트, 인조속눈썹, 반영구 화장, 립프 배농관리, 분장사, 메이크오버
------	---

참고: <https://www.asecfc.ch/>

SEFRI 법령에 따르면 CFC 피부미용사는 자율적으로 뷰티 관리와 고객에

대한 조언을 숙련되게 실행하며 제품에 대한 적응증과 금기 징후에 대해 숙지하여 제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팀의 직무와 고객을 위한 업무를 이해하여 이를 구분하고 경제 논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조직의 과업을 수행하고 직무범위에서 위생법, 직업 안전, 건강 보호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SEFRI, 2016) CFC는 피부미용사에게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제시하여 지정된 기준에 따라 직무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교육과정동안 직업능력(Compétences professionnelles), 방법론적 능력(Compétences méthodologiques), 사회적 개인적 능력(Compétences sociales et personnelles)에 대한 직무능력평가가 시행되는데 SEFRI 법령에 의거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23>와 같다.

표 23. CFC가 요구하는 직무능력

<p>Compétences professionnelles 직업능력</p>	<p>a. 경제, 조직과 기업 테크닉 b. 직무에 대한 위생과 안전, 보호 수단 c. 커뮤니케이션, 조언과 판매 d. 화장품 관리 e. 특수 관리 f. 직업과 연관된 자연 과학, 인체에 대한 지식</p>
<p>Compétences méthodologiques 방법론적 능력</p>	<p>a. 직무 테크닉과 문제 해결 b.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학제적 행위와 접근 c.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전략 d. 체계적 사고 e. 학습 전략 f. 조언과 판매 방법 g. 창의성 테크닉 h. 프레젠테이션 테크닉</p>
<p>Compétences sociales et personnelles 사회 개인적 능력</p>	<p>a. 자율성과 책임 b. 평생 학습 c. 커뮤니케이션 능력 d. 분쟁 관리 능력 e. 팀내 직무능력 f. 예의 g. 신체적, 정신적 지구력 h. 환경 존중 능력</p>

참고: Formation professionnelle initiale d'esthéticienne/esthéticien avec CFC. du SEFRI, SEFRI, 2016, P. 1.

<표 22>에서 요구하는 세 가지 능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자질을 결합시켜 표현하고 있다. 팀 내 직무능력과 분쟁 관리 능력에 대한 항목을 통해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서는 팀워크와 팀원 간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팀워크를 통해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이는 기업체의 발전과 연결되기 때문에 리더쉽을 학습하고 효과적인 인적자

원관리 능력 습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환경 존중 능력은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의 양립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인식과 의지를 반영하는 항목으로 판단된다.

CFC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BF d'esthétique médicale, BF d'esthétique bio-vitale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이처럼 상위단계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메디컬 영역에서 피부미용사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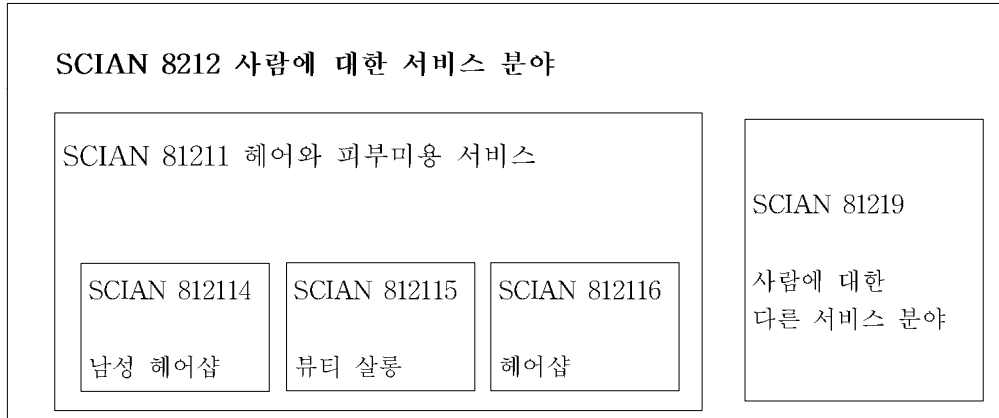
4) 캐나다 퀘벡주

퀘벡 내에서 피부미용분야의 직업 환경과 관련 직무가 기술적으로 변화하면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가 점차 확대되었다. 지속되는 변화로 인해 미용 산업이 점차 발전하게 되고 미용 인력은 7년간 2004년 7,300명에서 2011년 기준 12,900명으로 거의 2배가량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퀘벡 고용부는 미용 분야의 직업표준을 마련하게 되었고 미용분야의 도제훈련 교육도 PAMT 제도를 통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퀘벡 고용부의 피부미용 직업표준에 따르면 피부미용사는 국가직업분류 6562(Classification nationale des professions: CNP 6562)가 규정하는 유사 근로자들, 피부미용사(Esthéticien(ne), 전기분해제모사(Electrolystes)와 연관이 있다. 피부미용사와 전기분해요법 관리자, 유사 근로자들은 신체적인 용모를 개선하기 위한 얼굴 및 바디 관리를 수행한다. 헤어샵이나, 전기분해요법 스튜디오, 두피관리 및 모발이식 클리닉, 이외의 관련 기관, 약국이나 백화점 등의 뷰티 제품 판매, 자영업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Ministère de l'emploi et de la Solidarité sociale, 2014), (A. Pedraz-Delhaes *et al.*, 2011)

Système de classification des industries de l'Amérique du Nord (SCIAN, 북아메리카 산업 분류 체계)에 따르면 피부미용사는 8212 헤어와 피부미용 서비스 분야의 사람에 대한 서비스 영역의 뷰티살롱에 해당한다. SCIAN 분류에 따른 피부미용분야는 다음의 <표 24>과 같다.

표 24. SCIAN 분류에 따른 피부미용분야



참고: Norme professionnelle: Esthéticienne ou esthéticien, Ministère de l'emploi et de la Solidarité sociale, 2014, p. 8.

퀘벡 고용부는 피부미용사의 직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피부미용사는 제품과 소도구, 특수 기구 등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일련의 테크닉을 통해 미용 관리를 숙련되게 실행한다.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얼굴과 신체 부위의 용모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관리를 적용하기에 앞서 피부미용사는 예방조치를 위해 고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피부, 손톱, 체모 상태를 먼저 진단하여야 한다. 고객에게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평안을 주고 피부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관리 및 제품, 건강관리 습관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여야 한다.(Emploi-Québec, 2015)

피부미용사 직업표준은 피부미용사에게 요구되는 6가지의 필수 능력과 3가지의 부가 능력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CQP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6가지 필수 능력을 증명하여야 하며, 3가지 부가능력은 CQP 취득과는 관계없이 각각의 능력에 대한 검정을 통해 직업능력인증서(Attestation de qualification professionnelle)를 받을 수 있다. 피부미용사 직업표준이 요구하는 직무능력은 다음의 <표 25>과 같다.

표 25. 피부미용사 직업표준이 제시하는 직무능력

필수능력	1-Établir des relations interpersonnelles en contexte professionnel 직업 환경에서 개인상호간 관계 성립하기
	2-Conseiller la clientèle sur les services et les produits offerts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 조언하기
	3-Effectuer des soins esthétiques de la peau 피부 미용 관리 실행하기
	4-Effectuer des soins des mains et des pieds 손발 관리 실행하기
	5-Épiler à la cire 왁스 제모하기
	6-Effectuer des activités administratives 관리 및 경영 직무 수행하기
부가능력	7-Épiler à l'électricité 전기 제모하기
	8-Épiler par photoépilation 레이저 제모
	9-Réaliser un maquillage 메이크업 하기

참고: Emploi-Québec(퀘벡 고용부), Esthéticienne ou esthéticien, 2015. pp. 1-2.

한편, 퀘벡의 피부미용사가 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국가자격인 DEP는 고객에게 메이크업, 손톱화장, 왁스 제모, 손을 이용한 마사지를 통한 얼굴 관리 등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이를 직무로 제시하고 있다. (<http://www.inforoutefpt.org/>) DEP 자격이 요구하는 직무능력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고 직업교육기관이나 퀘벡 피부미용사 협회는 피부미용사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일반적인 역량으로 직업표준이 제시하는 능력을

소개하고 있다.

퀘벡에서도 피부미용사의 미용 관리 직무 이외에도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강조하고 있는데 미용적인 조언을 넘어서서 고객의 건강관리 습관에 대한 상담과 정보 제공을 직무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지식의 전문성을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전기분해제모사’라는 직업이 피부미용영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와는 달리 피부미용사에게 메디컬 분야의 업무를 일부 허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전기분해제모사는 전류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제모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직업으로 ASP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Ministère de l'Éducation, du Loisir et du Sport가 인정하는 전기분해제모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5) 벨기에

벨기에의 경우 공식적으로 피부미용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중등 미용직업교육과정을 통해 학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중앙 시험위원회의 시험을 의무적으로 보지 않아도 피부미용사로 자격이 인정된다. 두 번째 방법은 중앙 시험위원회의 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다.(<http://www.haute-ecole-esthetique.be/>)

1993년 3월 3일 이후부터 법령에 의해 공식적으로 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관장하는 중앙 Jury central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http://www.ecoleprivee-terredaure.com/>) 따라서 벨기에의 피부미용사 자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등교육과정이 규정하는 직무범위와 중앙 시험위원회가 요구하는 능력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피부미용사 교육과정은 직업과 자격 공동체 위원회(Commission Communautaire des Professions et des Qualifications: CCPQ)와 관련이 있다. CCPQ는 직업 실무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분석하여 PQ와 교육과정을 고안하는데 PQ와 교육과정은 중등교육과정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http://www.belgium.be/fr/>) 피부미용사 중등교육과의 연관성 이외에도 CCPQ가 실제 직업현장을 바탕으로 직무활동을 정의하고 실무에 필요한 능력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CCPQ는 피부미용사 직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피부미용사는 일반적으로 에스테틱이나 고객의 자택에서 직무를 수행하지만 팔라쏘 테라피 센터와 같이 여러 가지 영역을 다루는 그룹과 협력하여 일하기도 한다. 피부미용사는 에스테틱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관리(얼굴, 발, 바디, 상체,

여러 가지 제모, 메이크업, 바디 모듈라쥬)를 실행하며 고객과 직업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피부미용사는 서비스와 제품, 관리와 메이크업 등을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음의 <표 26>는 CCPQ가 규정하는 피부미용사 직무범위를 정리한 것이다.

표 26. CCPQ가 규정하는 피부미용사 직무범위

1. Respecter les règles d'hygiène et de sécurité	
위생과 안전 규칙 준수하기	
2. Respecter les règles de déontologie	
직업윤리 준수하기	
3. Travail en institut ou domicile du client	
에스테틱 혹은 고객 자택에서의 직무	
-Fonction de préparation 준비 작업	-Effectuer la coloration, la décoloration, le traitement des phanères 염색, 장식, 표피기관 트리트먼트 시행하기
-Effectuer un soin visage 얼굴 관리 시행하기	-Effectuer un soin de beauté des pieds 발 관리 시행하기
-Effectuer une épilation 제모 시행하기	-Effectuer un soin de beauté des mains 손 관리 시행하기
-Effectuer un maquillage simple 간단한 메이크업 시행하기	-Effectuer un modelage du corps 바디 모듈라쥬 시행하기
-Effectuer la maquillage de correction 수정 메이크업 시행하기	-Effectuer un soin de beauté spécifique (corps, visage, buste, pieds) 바디, 얼굴, 상체, 발등의 특수관리 시행
-Effectuer un maquillage du soir 저녁 메이크업 시행하기	-Effectuer un soin du corps 바디관리 시행하기
4. Travailler en collaboration avec une équipe pluridisciplinaire	
여러 영역의 그룹과 협력하여 일하기	
-Effectuer un soin dans le cadre d'une collaboration avec un spécialiste 전문가와 함께 협력하여 관리 시행하기	
-Travailler en institution de soins et en collectivités diverses 관리 기관과 다양한 단체에서 일하기	
-Pratiquer l'aqua- esthétique -아쿠아 에스테틱 실행하기	

5. Communiquer durant les soins

관리 중 의사소통하기

-Avec le client

고객과의 의사소통하기

-Au téléphone

전화 응대하기

-Avec les collègues de travail

직장 동료와 의사소통하기

6. Vendre

판매하기

-Vendre

판매하기

-Facturer

청구하기

7. Nettoyer et ranger le matériel et le poste du travail

용품과 작업장 청소하고 정리하기

8. Travailler en équipe pluridisciplinaire

여러 영역의 팀에서 일하기

참고: CCPQ Esthéticien/ Esthéticienne, CCPQ, pp. 4-44.

프랑스어 언어공동체는 피부미용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피부미용사는 아름다움과 안락(Bien-être)의 전문가로 고객이 자신의 외모를 유지하고 이를 돋보이게 하도록 돕는다. 고객의 요구를 분석한 후, 피부미용사는 접합한 관리를 결정하고 이를 실행한다. 관리들을 통해 얼굴과 바디 등을 유지하고 더욱 아름답게 하며 제모, 메이크업, 미용 및 긴장 완화 마사지, 손톱 화장, 발 관리, 인조 손톱 연장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기초 제품과 메이크업 제품의 사용과 적용에 관련된 전문적인 조언을 하며, 에스테틱의 영수, 재고관리, 물품관리 등의 일상 관리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하며 스케줄과 고객의 예약을 관리하여야 한다. 프랑스어 언어공동체가 제시하는 직무범위는 다음의 <표 2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7. 프랑스어 언어공동체가 제시하는 직무범위

	-Effectuer des soins de beauté du visage 얼굴 관리 실행하기
	-Corriger, par le maquillage, certains défauts 수정화장 및 결점 커버하기
	-Effectuer des soins de beauté des mains, des pieds, du corps 손, 발, 바디 관리 실행하기
	-Effectuer des massages 마사지 실행하기
직무	-Epiler différentes parties du corps 각기 다른 바디 부위 제모하기
	-Colorer ou décolorer cils et sourcils 속눈썹과 눈썹 염색 및 탈색하기
	-Maquiller pour différentes occasions 각각의 상황에 맞는 메이크업하기
	-Vendre des produits de soins esthétiques 제품 및 미용 관리 판매하기
	-Participer à l'organisation quotidienne d'un institut 에스테틱의 일상 조직에 참가하기

참고: http://www.enseignement.be/index.php?page=27189&fm_id=21

한편, 언어공동체는 직업표준을 지정하여 각각의 직업에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여 자격을 인정하는데 법령에서 고지하는 관련 학위나 경력을 통해 직업능력을 증명할 수 있다. 학위나 경력을 통해 자격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 위원회의 영역별 직업능력시험을 통해 언어공동체가 인정하는 피부미용사(Esthéticien/Esthéticienne)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피부미용 사업자나 기업체로서 벨기에 사업자 등록부(Banque-Carrefour des Entreprises)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영역별 직업능력(Compétence professionnelle sectorielle)과 기초경영지식(Connaissances de gestion de base)이 요구되는데 Jury cnetral의 시험을 통과하면 사업자 창구(Guichet d'entreprises)를 통해 사업자 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 중앙위원회에서는

시험 준비 교육과정을 진행하지 않으며 시험을 위한 책이나 자료도 배부하지 않는다.(<http://economie.wallonie.be/>) 중앙 시험위원회가 피부미용사에게 요구하는 능력은 4가지로 다음의 <표 28>과 같다.

표 28. 피부미용사에게 요구되는 영역별 능력

1	인체조직, 골조직, 체형, 골격, 관절, 근육, 체세포, 장기, 생체 기능에 대한 기초 지식
2	피부에 대한 올바른 지식: 구조, 기능, 역할, 발달, 표피성 기관, 선과 분비작용, 체모와 모발, 수분지질막, 폐하, 조직, 피부타입, 피부트러블과 피부병, 태닝 원리, 주름과 원인
3	손톱, 위생법, 화학제품과 에스테틱에서 사용되는 제품 사용법, 숙지해야할 대책에 대한 올바른 지식
	역량
4	-표피 관찰 및 분석하기 , 진단표와 미용 관리 작성하기 -남성과 여성을 위한 보편적인 미용 테크닉과 필요한 비의료기기 적용하기

참고: Formulaire d'inscription à l'épreuve sur la compétence professionnelle pour les activités d'esthéticien(ne), SPF Economie/Jury central, 2016, p. 2.

안마사(Masseur/Masseuse)자격도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데 국가에서 인정되는 정식 교육과정에는 안마사 전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서만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외에 중앙 시험위원회를 통해 취득 가능한 미용관련 자격에는 헤어미용사(Coiffeur/Coiffeuse), 발 관리사(Pédicure) 등이 있다.(<https://www.leforem.be/>)

독학을 통해서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시험 관련 미용교육을 받는 것을 권장하는 편이다. 미용학교의 교육 연한과 과정은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장기 교육과정을 채택하는 학교의 경우 CEES 등의 보유한 중등교육과정의 학위 등급과 내용에 따라 교육과정과 기간에 차등을 두고 있다.

벨기에의 경우에도 피부미용사에게 관리 테크닉, 직업윤리와 위생 및 안전,

고객과의 의사소통능력이 직무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다른 프랑스어권 국가들과 달리 피부미용사 직무 환경에 고객의 자택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여러 영역의 전문가나 그룹과의 협력을 직무에 포함한다는 사실을 통해 다양한 수준에서 피부미용사의 직무범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각국의 피부미용사 제도 비교분석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장 기본이 되는 피부미용사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은 각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다음의 <표 29>은 주요 교육기관과 취득 방법을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29. 각 국가별 피부미용사 교육기관과 자격취득방법

국가	교육기관	취득방법	비교
한국	대학 및 전문대학의 뷰티관련학과, 각 지역의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업훈련학교, 미용학원, 미용고등학교, 실업고등학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취득	단기 교육과정을 통해 자격취득 정규 미용직업교육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 취득 가능 학위-자격 연계 교육과정 없음 필기/ 실기 교육 단계별 자격제도 없음
프랑스	직업학교, 사립학교	교육과정 이수 후 국가 시험을 통해 CAP 자격취득 자율지원자로 국가시험을 통해 CAP 자격취득	장기 교육과정을 통해 자격취득 학위-자격 연계 교육과정 시행 정규 미용직업교육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 취득 가능 필기/실기/실무 교육 단계별 자격제도 시행
스위스	직업학교, 사립학교	교육과정 이수 후 ASEFC가 권장하는 칸톤의 연방시험을 통한 CFC 자격취득	장기 교육과정을 통해 자격취득 학위-자격 연계 교육과정 시행 필기/ 실기/ 실무 교육 단계별 자격제도 시행
캐나다 퀘벡	공립직업교육센터, 퀘벡주정부 교육, 여가, 체육부가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사립기관	교육과정 이수 후 DEP 취득 퀘벡주정부 고용부의 PAMT과 RCMO 프로그램을 통해 피부미용사 CQP 취득	장기 교육과정을 통해 자격취득 학위-자격 연계 교육과정 시행 필기/ 실기/ 실무 교육 단계별 자격제도 시행

벨기에	중등교육기관, 사립 학교, EPS	교육과정 이수 후 CQ6 취득	장기 교육과정을 통해 자격취득 학위- 자격 연계 교육과정 시행
		Jury central을 통해 피부미용사 자격취득	정규 미용직업교육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 취득 가능 필기/ 실기/ 실무 교육 단계별 자격제도 시행

한국에서는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에서 미용교육을 받게 되면 미용사 면허가 발부되지만 피부미용사 자격을 취득할 수 기본 교육이 제공되기 때문에 포함시켰으나 엄밀히 말하면 다른 프랑스어권 국가들과는 달리 교육과정을 통해 피부미용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은 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시험을 통해 피부미용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피부미용 교육기관은 학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프랑스는 직업고등학교와 사립학교가 교육을 주로 담당하며 교육과정 이수 후 CAP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정규 미용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자율지원자로 CAP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스위스의 경우에는 각 칸톤마다 교육과정과 시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칸톤에서 관장하는 연방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스위스 프랑스어권 지역의 CFC 피부미용사 직업교육과 연방시험은 ASE CFC 협회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지정된 교육과정 이수 후 연방시험을 치룬 뒤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캐나다 퀘벡에서는 공립직업교육센터와 퀘벡주정부 교육, 여가, 체육부가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사립기관에서 주로 교육이 이루어지며 교육과정 이수 후 미용 DEP 취득하거나 퀘벡주정부의 PAMT과 RCMO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피부미용사 CQP를 취득할 수 있다. 벨기에에서는 공식적으로 피부미용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미용직업교육과정을 통해 CQ6 학위를 취득하거나 정규 미용직업교육과정을 이

수하지 않았을 경우 독학 및 미용학교의 단기 교육과정을 거쳐 Jury central의 시험을 통과하면 피부미용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프랑스어권 국가의 미용교육은 일반적으로 중등교육과정 단계에서 시작되며 학위와 자격이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 학생들을 위한 직업교육이 주를 이루지만 성인들의 경우에도 의무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각 학교의 입학 자격에 부합하는 경우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한국과 비슷하게 미용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직업고등학교나 사립학교의 미용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도 벨기에의 Jury central과 비슷하게 자율 지원자(Candidat libre)로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시험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 시험영역도 다양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격을 보유하지 못했던 경력자가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는 단기교육이라도 이수한 뒤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벨기에에서도 독학을 통해 응시할 수 있지만 네델란드어권인 플라망드 지방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시험에 관련되는 경우가 있어 프랑스어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실기 시험 등의 이유로 인해 시험 대비 교육과정의 힘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공식적으로는 정규교육과정을 거쳐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자격이 없는 경력자 및 독학, 자율 지원자에게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을 허용하는 것은 자격미보유자에게도 기회를 부여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결과적으로 능력이 검증된 인력들을 배출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일 것이다.

한편, 국가별로 피부미용사의 직무범위에는 차이가 있는데, 다음의 <표 28>은 교육과정이나 국가 수준의 시험에서 요구하는 직무범위와 요구 능력을 정리한 것이다. 각 국가별로 제시되는 직무범위와 요구 능력을 단일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 캐나다 퀘벡과 벨기에의

경우에는 학위에서 수반되는 국가자격 이외에도 국가가 관장하는 자격시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의 목적은 업무 수행에 기본이 되는 피부미용사 자격 및 교육과정에서 규정하는 구체적인 직무 내용과 국가가 실질적으로 허용하는 직무범위를 파악하는데 있기 때문에 관련 정부 기관과 교육기관이 제시하는 내용을 통합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한국은 공중위생관리법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규정하는 직무범위와 수행 직무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표 30. 국가별 피부미용사의 구체적인 직무범위 비교

국가	구체적인 직무 내용
한국	의료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분석, 손을 이용한 피부 관리, 기기를 이용한 피부 관리, 팩, 제모, 눈썹손질, 얼굴 및 전신의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보호·개선 관리하기 위하여 각 부위와 유형에 적절한 관리법과 기기 및 제품을 사용하여 피부미용을 수행
프랑스	얼굴과 데콜레 및 손과 발의 미용관리, 얼굴 및 손톱 메이크업, 제모, 태닝, 고객 접대 및 조언, 화장품 및 향수제품 서비스 판매, 제품과 서비스 운용, 예약 관리, 재고 관리, 작업장, 영수, 고객 관리, 경영 업무 및 부여된 다른 영역의 관리 보조 업무 수행, 직원 관리와 회계 관리, 납품업자와의 협상
스위스	손톱화장, 부러진 손톱 보수, 인조 손톱 연장, 마사지, 파라핀 관리 등의 손 관리, 마사지, 각질제거, 팩, 찜질 등의 발관리, 전기제모와 왁스, 족집게 제모, 눈썹과 속눈썹 염색, 얼굴관리와 메이크업, 바디관리와 상체관리, 눈썹 반영구 손눈썹 퍼머넌트 인조 속눈썹 등의 반영구 화장, 립프 배농관리, 메이크 오버, 제품 판매 및 제품에 대한 조언, 생활의 건강관리와 뷰티 관리에 대한 조언
캐나다 퀘벡	피부, 손톱, 체모 상태 진단, 얼굴 관리 및 바디관리, 메이크업, 손톱화장, 손과 발의 미용 관리, 왁스 제모, 제품 판매 및 조언, 경영 직무, 뷰티 관리 및 제품, 건강관리 습관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
벨기에	위생과 안전 규칙 준수, 직업윤리 준수, 얼굴 관리, 메이크업, 제모, 속눈썹과 눈썹 염색 및 탈색, 손 발 관리, 바디 관리, 고객과의 의사소통, 동요와의 의사소통, 제품 판매 및 영수, 용품과 작업장 청소 및 정리, 여러 영역의 팀과 협력업무, 여러 영역의 팀과 일하기, 표피 관찰 및 분석, 진단표와 미용 관리 작성하기, 남성과 여성을 위한 보편적인 미용 테크닉과 필요한 비의료 기기 적용

구체적인 직무 내용을 살펴보면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얼굴관리와 바디관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기본 자격인 CAP만으로는 바디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위 단계인 BP나 Bac pro를 취득하여야 바디관리를 실행할 수 있다. 프랑스는 태닝을 피부미용사의 직무범위

에 포함시키고 있고 스위스는 눈썹, 속눈썹 등의 반영구 화장을 피부미용사에
게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 프랑스어권 국가들은 메이크업과 손톱 화
장을 피부미용사의 직무로 여기는 반면 한국은 메이크업 미용사 자격이 따로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프랑스어권 국가에도 메이크업, 분장사 등의 관련 미용
자격은 별개로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것은 메이크업과
손톱화장은 피부미용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헤어이외의 미
용과 관련된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 판단된다. 미용관리 이외에도 고객 응대와 서비스의 조언 및
제품 판매, 회계, 영수와 재고 관리 등의 경영 업무도 피부미용사가 습득하여
야 할 직무로 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직무범위가 상세하지 않고 요구 능력
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어권 국가들이 피부미용사의 직무범위와 요
구 능력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공중위생관리법과 한국
산업인력공단이 제시하는 직무범위만을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한국 피부미용사 자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직업교육체제

한국의 미용교육은 직업학교와 미용학원,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 중등 혹은 고등 수준의 직업교육과 대학 및 대학교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피부미용사 자격취득과 관련된 정규 교육과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단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프랑스어권 국가들은 중등교육과정에서부터 직업교육을 진행하며 자격이 학위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업교육은 주로 장기교육과정에 해당된다. 사립학교나 미용학교, 직업학교 등에서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단기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제한적이고 대부분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직업교육이 이루어진다. 프랑스어권 국가들은 지정된 교육연한과 과정을 이수한 뒤 국가에 따라 국가시험이나 연방시험 등을 치른 뒤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과정에는 이론교육과 실기교육, 실무교육 등을 포함되어 있다. 실무교육을 통해 직업현장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고, 국가에 따라 실무교육은 자격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전일제 학생의 경우도 명시된 실무 교육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제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학교와 기업체에서의 일-학습 병행교육이 가능하고 계약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기관과 정부, 기업체 등이 협력하여 직업교육이 진행되며 기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실무 교육과 도제훈련제도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16년부터 국가가 인증한 대학의 미용학과나 직업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일-학습 병행교육을 통해 과정평가형 미용사(일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과정평가형 제도는 미용사(일반)자격에 국한되었고, 피부미용

사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에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도 프랑스어권 국가들처럼 국가자격과 학위를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아 미용교육과정에 학위-자격 연계 체제를 도입한다면 보다 고급 미용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프랑스어권 국가들의 직업교육체제에서 활용되는 일-학습 병행체제 교육과정이 시행되면 실무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빠르게 습득하여 현장 투입 시 실무에 효과적으로 적용 할 수 있다. 일-학습 병행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학위-자격 연계 제도를 통해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측면에서 피부미용사 직업의 전문화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2) 미용기기 사용과 직무 기준

한국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피부미용사는 미용기기가 아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호는 미용업(피부)을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 피부 관리, 제모, 눈썹손질을 행하는 영업’이라 명시하고 있고 피부미용사의 직무범위를 ‘의료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분석, 손을 이용한 피부 관리, 기기를 이용한 피부관리, 팩, 제모, 눈썹손질’로 규정하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피부미용사의 직무를 ‘얼굴 및 신체의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보호·개선·관리하기 위하여 각 부위와 유형에 적절한 관리법과 기기 및 제품을 사용하여 피부미용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시험 출제기준에 따르면 피부미용사의 직무 내용은 ‘고객의 상담과 피부분석을 통해 안정감 있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얼굴, 신체 부위별 피부를 미용기기와 화장품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무수행’이다. 피부미용사가 관리를 위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미용기기 관련 규정이 없다. 에스테틱이나 샵에서 실제 사용되는 대부분의 미용기기가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미용사들이 불법으로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은 항상 제기되어 왔다. 피부미용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고, 의료법상으로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이다.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미용기기와 의료기기가 같은 제조업체에서 생산되어 구분하기 어렵고, 인터넷에서는 미용의료기기, 의료미용기기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가 전자부품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이미용기기 제도도입 및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피부미용실의 약 95% 이상이 피부미용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대표발의) 등 국

회의원 15명은 2014년 12월 22일 피부미용기기를 합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중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3145)을 발의하였다. 미용기기를 새롭게 정의하고 미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미용기기로 분류해 미용사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제시된 개정안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피부미용 등의 목적으로 여러 미용기기가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미용기기와 관련한 규정이 없고, 현재 대부분의 피부미용업소가 소비자의 요구를 이유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고·저주파 자극기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미용기기를 새롭게 정의하고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미용기기로 분류하여 미용업을 하는 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용기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면서도 소비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미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 제안의 목적이다. 미용기기 법제화의 세부내용은, 미용기기를 ‘얼굴·머리카락·피부·손톱·발톱 등 신체를 아름답게 하거나 그 상태를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기계·장치·재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새롭게 정의했다.(<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2015. 01. 08), (<http://www.healthtomato.com/>, 헬스토토마토, 2015. 02. 02) 그러나 이 개정안은 2016년 현재까지 입법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미용기기가 합법화되려면 미용기기와 의료기기의 사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서로 합의하여 기준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안마사와 피부미용사의 직무범위 역시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안마사의 업무 한계)에 의하면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포함한다.(<http://www.law.go.kr/>, 국가법령

정보센터) 피부미용사 자격제도가 시행되면서 안마사와 피부미용사는 직무범위를 두고 갈등구조에 놓이게 되었다. 안마사들은 마사지나 지압이 안마사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피부미용사는 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험출제 기준에 따르면 피부미용사는 영양물질이 피부에 흡수되도록 할 수 있으며 피부상태와 부위에 따라 적절한 리듬, 강약, 속도, 시간, 밀착 등을 조절하여 매뉴얼테크닉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해당부위는 얼굴, 손과 팔, 발과 다리와 등 부위로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등이나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것은 일반적인 ‘피부미용’ 대상 부위로 볼 수 없어 피부미용사들이 의료법을 위반하는 안마 행위를 행한 것으로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근육을 풀어준 행위 이외에도 피부 관리는 주로 얼굴, 목, 팔, 다리 등 옷 밖으로 노출돼 상하기 쉬운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데 피고인이 시술한 등과 승모근 등은 전형적인 피부 관리 대상 부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아로마 오일 외에 다른 화장품이나 오일이 쓰이지 않아 피부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http://news.mk.co.kr/>, 매일경제, 2016, 01, 20)하였는데 실제로 등은 피부미용사 자격검정을 위한 실기 시험에 포함된 관리 부위로 피부 미용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아로마 오일은 화장품의 재료로 많이 사용되며 에스테틱이나 샵에서 아로마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화장품과 오일을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에서도 피부미용사와 물리치료사간의 분쟁으로 인해 피부미용사는 법적으로 마사지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사지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relaxation(이완/ 휴식), détente(이완/ 휴식), bien-être(웰빙/ 안락) 등의 단어와 함께 사용하거나 모델라쥬(Modelage)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 마사지라는 단어를 안마사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면 한국도 프랑스처럼 마사지라는 용어의 사용을 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미

용 마사지, 미용 마사지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마사지라는 용어는 피부미용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며, 고객의 관점에서도 매뉴얼테크닉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생소하게 느끼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해도를 높이고 피부미용과 관련된 마사지임을 명시하기 위해서라도 용어 사용에 대한 재고는 반드시 필요하다.

3) 직무범위

한국의 경우 다른 프랑스어권 국가에 비해 구체적인 직무범위와 요구 능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른 프랑스어권 국가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피부미용사의 직무범위와 요구 능력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시하는 직무내용은 간략할뿐 더러 기기 관련 사항처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어권 국가는 피부미용사의 직무범위가 넓고 상세한 편이다. 프랑스어권 국가들은 메이크업과 손톱 화장을 피부미용사 직무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미용관리 이외에도 고객 응대 및 관리 및 서비스의 조언과 제품 판매 등을 직무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회계 및 재고 관리 등의 경영 업무도 포함되는데, 미용관리 업무이외에도 경영 및 매니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자 함으로 판단된다. 다른 프랑스어권 국가들과 같이 실제 직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술이나 직무범위, 실무에 필요한 요구 능력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4) 단계별 자격제도

프랑스어권 국가들은 피부미용사 자격을 단계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거나 피부미용사 자격을 기반으로 상위 자격과 전문 직업이 파생되는 반면, 한국에는 피부미용사 이외에 관련 자격으로는 미용장 자격만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미용장 자격은 피부미용장이 아닌 토탈 뷰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미용사 상위 자격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프랑스어권 국가들은 교육부, 노동부, 고용부, 관련 위원회 등의 여러 기관에서 자격을 부여하고 국가에서 인정해주기 때문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다양한 자격이 존재한다.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프랑스의 RNCP에 등록된 피부미용사 관련 자격의 종류도 상당하며 직업군과 직무범위도 구체적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프랑스어권 국가들은 기본 자격 취득 후 상위 단계의 교육과정에 진학하여 고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자격 단계 및 수준에 따라 직무범위와 종사할 수 있는 직업군에 차이가 있고 상위 단계의 직업교육은 보다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직무영역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은 실장이나 원장, 매니저급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피부미용사 경력을 필수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프랑스는 피부미용사와 관리자, 매니저 업무를 구분지어 인식하기 때문에 관련 자격이나 학위를 보유한 경우 피부미용사 경력이 없어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경력이 요구되는 자격 또한 교육과정을 거쳐 취득하여야 하기 때문에 같은 경력자라 할지라도 자격보유자와 미보유자 간에는 차이가 있다. 스위스도 CFC 피부미용사 자격 취득 후 레이저와 같은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 BF 메디컬 피부미용사 등의 상위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벨기에
도 중등직업교육과정에서 단계에 따라 전공을 구분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퀘벡의 경우에도 미용 DEP를 취득하면 전기 체모 ASP과정이나 바디관리
AEP과정에 진학할 수 있다. 한국도 직업교육과정을 세분화하여 단계별 자격
제도를 도입한다면 자격의 전문화와 고급수준의 인력을 배출하는데 많은 기
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

직무범위의 근본적인 차이를 수용하는 피부미용사 자격제도에 대한 답론은 2008년 이전의 피부미용 관련 연구에서 꾸준히 진행되었다. 주로 피부미용사의 관리기준 및 자격제도의 결여에서 비롯된 문제점이나 자격제도의 정비를 논의하였는데 이는 피부미용사의 직무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 짓는 자격 분리에 관한 고찰로 이어졌다. 미용직무의 전문화, 국민의 건강권 보장 및 보다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2008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미용 국가기술자격이 미용사(일반)과 미용사(피부)로 분리되면서 자격제도와 직무범위가 세분화되었다. 그러나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부터 자격제도에 관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거론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의 미용직업교육 및 피부미용사 자격제도를 직업교육 체제와 국가자격제도가 발달된 프랑스어권 국가들의 미용직업교육과 피부미용사 자격제도와 비교하여 한국의 국가자격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여 비교한 결과, 한국의 미용직업교육과 자격제도는 프랑스어권 국가에 비해 불안정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상의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피부미용사 직업교육-학위의 연계 교육체계이다. 한국은 학위와 자격과의 연관성은 낮은 편으로 미용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학위와 함께 미용사(일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데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프랑스어권 국가들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국가직업능력표준(NCS)제도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일-학습 병행 과정평가형 자격은 피부미용사 자격이 아닌 미용사(일반)으로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을 위한 과정은 아니다. 한국의 피부미용사 직업교육은 단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프랑스어권 국가들처럼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행 자격제도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 능력을 검증하여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자격 취득 후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관리 테크닉을 구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자격취득만을 위한 교육과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무와 연관된 관리 테크닉과 지식은 직업 현장에 투입되면서부터 습득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자격과 학위가 연관된 교육체제가 정착되면 다양한 교과목과 지식, 실무 능력을 습득하여 보다 전문적인 미용 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 실제 직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현상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는 미용기기의 합법화 추진과 명확한 직무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미용기기와 의료기기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분류 체계와 관련 법규가 제도화되어 안전성이 확보되면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미용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뷰티 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미용기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은 결과적으로 피부미용사들이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생기는 부작용과 유사의료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안마사와 피부미용사의 직무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안마사들은 마사지나 지압이 안마사들의 고유 영역이라 주장하면서 피부미용사가 안마사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피부미용사가 수행하는 마사지 방법은 매뉴얼테크닉이라는 생소한 용어로 규정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이해를 어렵게 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피부미용의 목적과 안마의 목적, 피부미용사의 직무범위와 안마사의 직무범위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여 서로 양립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직무범위와 요구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프랑스어권 국가들은 피부미용사 직업 기준과 더불어 구체적인 직무범위와 피부미용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들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반면 한국은 직무범위나 요구 능력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른 프랑스어권 국가들과 같이 직업교육단계에서 효율적으로 실무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피부미용사의 업무범위를 세분화하여 기본 직무와 하위 내용, 요구 능력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단계별 자격제도의 도입이다. 프랑스어권 국가들의 경우 피부미용사 자격은 단계별로 나누어져 있다. 한국의 피부미용사 관련자격에는 피부미용사와 미용장이 있다. 그러나 미용장은 피부미용장이 아니기 때문에 피부미용사의 상위 자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프랑스어권 국가들은 피부미용사 기본 자격과 보다 전문적인 상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미용직업교육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 피부미용사 자격 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 자격제도는 피부미용사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본교육과 최소한의 능력만을 검증하고 있다. 기본 피부미용사 자격 취득 후 진학할 수 있는 심화 교육과정과 상위 자격, 기존의 경력자와 관리자 등을 위한 전문 자격과 다양한 미용 테크닉 관련 자격 등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단계별 자격제도가 도입된다면 실제 현장에서도 업무 분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미용자격의 전문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국가직업능력표준(NCS)제도가 도입된 지금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 습득한 직업능력과 자격이 평가 절하되거나 자격과 실무 능력의 등가 연계가 낮은 경우 노동시장에서 외면당하거나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문제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안정적인 직업교육과 자격제도를 운영하여 학습자가 노동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취득한 자격을 가지고 활발한 진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한국의 미용직업교육과 국가자격제도를 프랑스어권 국가들의 미용직업교육 및 국가제도와 비교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

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를 수행함에 있어 한정된 국가들에 집중하여 모든 프랑스어권 국가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으며, 미용직업교육과 자격제도를 거론함에 있어 피부미용사 주제만을 개별적으로 다루었다. 때문에 프랑스어권 국가의 미용직업교육과 국가자격을 총체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그러나 영어권 국가들에 비해 연구가 미진했던 프랑스어권 국가들을 주제로 삼았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 프랑스어권 국가들의 피부미용사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연구를 기대해보며, 프랑스어권 국가로의 미용유학을 위한 기초자료 및 앞으로의 국내 연구에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 학술지

- 강순희. (2014). 스위스의 일학습 듀얼시스템과 시사점, 국제노동브리프 12(5), 한국노동연구원, pp. 18-33
- 김기연. (2005). 피부미용사제도 신설방안에 관한 연구, 아시안뷰티화장품학술지 3(2), pp. 187-195.
- 김은정. (2010). 무시험 미용사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60, pp. 56-62.
- 나승일, 김강호. (2008). 직업교육연구 학회지 논문의 분석과 종합: 1998-2007년, 한국직업교육학회 27(2), 2009, p. 51-75.
- 유현주. (2001). 한국 미용사 국가기술자격검정의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인체예술학회지 2(2), pp. 125-147.
- 이한용. (2008). 미국 미용사면허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피부미용학회지 6(2), pp. 75-94.
- 장석인. (2010). 선진국들의 청년층 실업과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프랑스·독일·일본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20(4), pp. 211-244.
- 전현중. (1998). 프랑스의 자격제도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창간호, pp. 193-218.
- 전현중, 이용순. (2014). 프랑스 중등직업교육의 일·학습 연계 체제와 시사점, 한국직업교육학회 33(1), pp. 179-199.
- 정환희, 장미숙. (2015).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미용교육 및 취

업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미용학회지 11(1), pp. 41-63.

주혜라, 김영훈, 소현아. (2009). 에스테틱과 연계된 피부과의원의 디자인 아이덴티티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8(4), pp. 124-131.

진정화. (2011). 한국 뷰티 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예측, 대한피부미용학회지 9(4), pp. 179-190.

차의진, 안홍석. (2011). 한국과 독일 및 영국의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증 제도의 비교 연구, 대한피부미용사면허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피부미용학회지 6(2), pp. 75-94.

2. 국내 학위논문

배윤희. (2011). 피부미용의 국가자격제도 및 업무실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나희. (2010). 「피부미용대체요법인식과 교육 형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국내 보고서 및 참고 자료

강순희, 김안국, 박성재, 김주섭, 김승택, 김덕호, 정주연, 박충렬. (2003). 자격제도의 비전과 발전 방향, 한국노동연구원, pp. 95-109.

고경화. (2012). 뷰티산업 관련 교육기관 현황, 한국보건산업진흥원, p. 1.

김동자, 박재련, 안세움. (2012).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동향분석: 2011년도 수험자 대상, 한국산업인력공단, p. 요약 15.

김미경. (2010). 프랑스의 직업교육과 훈련, 한국산업인력공단, p. 3.

- 김은정, 정기혜, 김정선, 정진욱, 윤시문, 신정훈. (2009). 이·미용 관련 학교 학과 교과목 이수규정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3.
- 박태준, 김덕기, A. Boudier, JL. Kirsch. (2000). 한불 자격제도 비교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p. 12-15.
- 송창용, 김민경. (2009). 주요국의 직업교육 동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 6.
- 신명훈. (2001). 자격제도 국제비교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요약.
- 안인환, 황순욱, 김병진, 장준은, 정태영, 윤초희, 이승희, 임수진, 이상원, 김현철. (2011). 뷰티테마(산업)단지 지정방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요약문 p. 1.
- 외교부. (2013). 벨기에 개황, pp. 3-19.
- 외교부. (2014). 캐나다개황, p. 106.
- 이승희. (2012). 뷰티산업관련 교육기관 현황, 한국보건산업진흥원, pp. 1-4.
- 조정윤. (2012). 제3차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 기본계획수립 의의 및 방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 8.
- 전승환. (2014). 글로벌리포트 스위스의 직업교육훈련 체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p. 151-156.
- 황순욱, 정윤택, 정아영, 강태건, 이근찬, 김용우, 박순만, 최은정. (2008).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피부미용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p. 16.

4. 해외 단행본

- G. Vigarello. *Histoire de la beauté - Le corps et l'art d'embellir de la Renaissance à nos jour*, Seuil, 2009, p. 255.
- G. Jones. *Beauty Imagined: A history of the global beauty industry*,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 9.

V. Matéo. *Les métiers de l'esthétique et de la beauté, la ligne de l'étudiant*, 2006, p. 7.

F. Benhamou. *La chirurgie esthétique est-elle la solution?*, édition grego, 2008, p. 18.

P. Cotton. *Les systèmes de formation professionnelle en Belgique*, Cedefop Panorama series, 2001, p. 16-17.

5. 해외 학술지

A. Jacques, R. François. «Le développement de l'éducation et de la formation(1980-2000): quels effets pour quelles efficacités?»;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en Suisse et à Genève Politique publique - pratiques d'acteurs*, RAPPE, 2002, pp. 1-29.

6. 해외 학위논문

B. Durantet, *Evolution du concept de beauté à travers les siècles*, Diplôme inter universitaire de médecine morphologique et anti-âge, Paris XIII, 2010.

7. 해외 보고서 및 참고 자료

A. Michel. (2008). *Contrat d'apprentissage ou contrat de*

professionnalisation approche comparative. pp. 1-10.

- A. Pedraz-Delhaes, N. Ouellet, D. Bouffard, C. Drolet. (2011). Diagnostic sectoriel pour les sous-secteurs de l'esthétique, de l'électrolyse et des soins du corps, Comité sectoriel de la main-d'œuvre des services de soins personnels. pp. 1-94.
- ASECFC. (2013). Plan de formation esthéticienne CFC/ esthéticien CFC, pp. 1-36.
- ASEPIB. (2015-1). Le brevet fédéral d'esthétique médicale et esthétique vitale, pp. 1-22.
- ASEPIB. (2015-2). Directive relative au règlement des examens -Esthéticienne/esthéticien avec brevet fédéral, discipline esthétique médicale ou esthétique vitale, pp. 1-52.
- ASEPIB. (2016). Formation art. 32 CFC d'esthéticienne Conditions de participation, pp. 2-31.
- Assemblée fédérale de la Confédération suisse. (2015). Loi fédérale sur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pp. 1-26.
- Centre européen pour le développement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2015). Regards sur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belge, p. 2.
- D. Bouffard, C. Drolet, C. Larose, M. Lehoux, S. Bibeau, S. Châtelain, M.A. Moreau. (2014). Programme d'apprentissage en milieu de travail Esthéticienne ou esthéticien Guide du compagnon ou de la Compagne d'apprentissage, Soins personnels Québec.
- D. Lucie, C. Monnet, B. Campos, N. Schouwey. (2015). Education comparée: approche thématique; Le système scolaire du Canada, Université de Fribourg Suisse, pp. 3-4.
- Emploi-Québec. (2015). Esthéticienne ou esthéticien, pp. 1-6.

- F. Régine. (2014). La réglementation en esthétique beauté, Bien-être, Confédération nationale de l'esthétique parfumerie, p. 8.
- Fédération des syndicats de l'enseignement. (2015). Les orientations actuelles en formation professionnelle (FP) : modèle allemand, stages et loi du 1 %, 2015. pp. 1-11.
- Fédération Wallonie-Bruxelles. (2013). Circulaire n° 4492 du 25/ 07/ 2013: Circulaire générale relative à l'Organisation de l'enseignement secondaire ordinaire et à la Sanction des études - Cette circulaire abroge la circulaire n°4140 du 13 septembre 2012, pp. 15-22.
- M. Abhervé. (2008). Contrat d'apprentissage ou contrat de professionnalisation: Approche comparative, pp. 1-10.
- Emploi-Québec. (2015). Esthéticienne ou esthéticien, pp. 1-6.
- Ministère de la Communauté française. (2004). Le système des qualification en belgique francophone, pp. 7-103.
- Ministère de la Communauté française. (2009). Enseignement secondaire ordinaire de plein exercice: Humanités professionnelles et techniques; enseignement professionnelle 7e année complémentaire, p. 4.
-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2008). Référentiel CAP Esthétique Cosmétique Parfumerie, pp. 5-18.
-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2012). Brevet de technicien supérieur métiers de l'esthétique cosmétique parfumerie; Option A: management Option B: formation-marques, Option C: cosmétologie, pp. 1-108.
-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2015). Guide du candidat individuel et du candidat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contenue CAP

Esthétique Cosmétique Parfumerie. pp. 1-5.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2015). Note à l'attention des candidats Brevet professionnel Esthétique Cosmétique Parfumerie (Session 2016), pp. 1-2.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2015). Note à l'attention des candidats CAP Esthétique Cosmétique Parfumerie(Session 2016), pp. 1-6

Ministère de l'emploi et de la Solidarité sociale. (2014). Norme professionnelle: Esthéticienne ou esthéticien, pp. 8.

Pôle-emploi. (2015). Le contrat de professionnalisation. pp. 1-4.

SEFRI. (2011). Ordonnance du SEFRI sur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initiale d'esthéticienne avec certificat fédéral de capacité, pp. 1-10.

SEFRI. (2014).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en suisse, pp. 1-24.

SEFRI. (2016). Formation professionnelle initiale d'esthéticienne/esthéticien avec CFC. du SEFRI, p. 4.

SPF Economie/Jury central. (2016). Formulaire d'inscription à l'épreuve sur la compétence professionnelle pour les activités d'esthéticien(ne), p. 2.

8. 참고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Accessed 2016. 11, 14),
[Keyword: 안마사에 관한 규칙]

뉴스 및 광고 사이트, <http://www.mining.com/>, (Accessed 2016. 11. 24),
[Keyword: canada québec plan]

벨기에 교육 기관 사이트, <http://www.icmr.be/>, (Accessed 2016. 10, 15),
[Keyword: PQ, PF]

벨기에 교육 및 직업 안내 사이트, <http://blog.siepe.be/>, (Accessed 2016. 10,

15), [Keyword: gestion de base belge]

벨기에 미용학교, <http://www.haute-ecole-esthetique.be/>, (Accessed 2016. 10, 21), [Keyword: examen de jury central esthéticien]

벨기에 미용학교, <http://www.ecoleprivee-terredaure.com/>, (Accessed 2016. 10, 21), [Keyword: examen de jury central esthéticien]

벨기에 사회지위 향상교육, <http://www.epsperuwelz.be/>, (Accessed 2016. 10, 17), [Keyword: enseignement de promotion sociale]

벨기에 왈롱 지방정부 교육 및 구인 공공 서비스, <https://www.leforem.be/>, (Accessed 2016. 10, 22), [Keyword: formation bio-esthétique, 2e esthétique formation]

벨기에 왈롱 지방정부 경제부, <http://economie.wallonie.be/>, (Accessed 2016. 10, 17), [Keyword: examen de jury central, jury central communauté française, jury central compétence professionnelle]

벨기에 장애인 사회복지 협회, <http://www.levotepourtous.be/>, (Accessed 2016. 10, 13), [Keyword: régions belges, communautés belges, plan linguistique belge]

벨기에 정부, <http://www.belgium.be/fr/>, (Accessed 2016. 10, 17), [Keyword: examen jury central, profils de qualification, profils de formation]

벨기에 브뤼셀 교육, 직업 종합정보 사이트, <http://bruxelles-j.be/>, (Accessed 2016. 10, 17), [Keyword: examen de jury central enseignement secondaire]

<https://www.legifrance.gouv.fr/>, (Accessed 2016. 09, 17), [Key word: code du travail]

벨기에 프랑수아르퀀 언어공동체 교육부, <http://www.enseignement.be/>, (Accessed 2016. 10, 16), [Keyword: enseignement professionnel belge, enseignement de promotion sociale, PQ, PF]

스위스 제네바 주정부, <http://www.ge.ch/>, (Accessed 2016. 09, 21),

[Keyword: législation suisse esthétique]

스위스 정부, <http://www.bfs.admin.ch/>, (Accessed 2016. 10. 04), [Keyword: population suisse, langue suisse]

스위스 시사 관련 사이트, <https://wirtschaftssprachen.hslu.ch/>, (Accessed 2016. 10. 06), [Keyword: équivalence des diplômes suisses et français]

스위스 정부 기업체 및 일자리 종합정보 사이트, <https://www.orientation.ch/>, (Accessed 2016. 10. 04), [Keyword: système éducatif suisse, schéma du système éducatif suisse]

스위스 정부 외국사업부, <https://www.eda.admin.ch/> (Accessed 2016. 10. 04), [Keyword: population suisse, plan linguistique suisse]

스위스 피부미용사 에스테틱 운영자 협회, <http://www.asepib.ch/>, (Accessed 2016. 10. 06), [Keyword: CFC estéticienne, brevet fédéral d'esthétique]

캐나다 프랑스어 스쿨 보드, <https://www.csmv.qc.ca/>, (Accessed 2016. 10. 11), [Keyword: programme DEP esthétique]

퀘벡 개인 관리 서비스 인력 부문 위원회, <http://www.soinspersonnels.com/>, (Accessed 2016. 10, 11), [Keyword: attestation de spécialisation professionnelle en épilation]

퀘벡 고용부, <http://www.emploiuebec.gouv.qc.ca/>, (Accessed 2016. 10, 10), [Keyword: qualification professionnelle québec]

퀘벡 교육부 직업교육, <http://www3.education.gouv.qc.ca/fpt/>, (Accessed 2016. 10. 06), [Keyword: attestation de spécialisation professionnelle, ASP]

퀘벡 주정부 직업교육과 직업정보 사이트, <http://www.toutpoureussir.com/>, (Accessed 2016. 10. 06), [Keyword: DEP, ASP]

퀘벡 주정부 교육프로그램 및 학교 안내 사이트, <http://www.inforoutefpt.org/>, (Accessed 2016. 10, 11), [Keyword: programme DEP esthétique, formation DEP esthétique]

퀘백 미용 직업학교 사이트, <http://www.cfpee.com/>, (Accessed 2016. 10, 11),
[Keyword: programme ASP en épilation]

프랑스 가내수공업 및 직업 회의소, <http://www.cma-paris.fr/>, (Accessed
2016. 09. 25), [Keyword: brevet de maîtrise]

프랑스 고용국, (<http://www.pole-emploi.fr/>, (Accessed 2016. 09. 24),
[Keyword: répertoire opérationnel des métiers et des emplois,
socio-esthéticienne]

프랑스 교육 관련 사이트, <http://www.centre-europeen-formation.fr/>,
(Accessed 2016. 09. 24), [Keyword: CAP formation UV]

프랑스 국가직업자격명부, <http://www.rncp.cncp.gouv.fr/>, (Accessed 2016.
09.20), [Keyword: RNCP]

프랑스 국가직업자격위원회, (<http://www.cncp.gouv.fr/>, (Accessed 2016. 09.
20), [Keyword: CNCP]

프랑스 국립 교육직업정보사무소, <http://www.onisep.fr/>, (Accessed 2016. 09.
28), [Keyword: socio-esthéticienne]

프랑스 국립 통계청, <http://www.insee.fr/>, (Accessed 2016. 09. 16),
[Keyword: niveau de formation]

프랑스 노동부, <http://travail-emploi.gouv.fr/>, (Accessed 2016. 10. 20),
[Keyword: ministère du travail]

프랑스 미용학교, <http://www.cnaib.fr/bm-esthetique-cosmetique/>, (Accessed
2016. 09. 25), [Keyword: BM esthétique]

프랑스 사회정책 연구소, Centre d'observation et de mesure des politiques
d'action sociale <http://www.compas-tis.com/>, (Accessed 2016. 09. 16),
[Keyword: niveau de formation]

프랑스 직업경력인증제도, <http://www.vae.gouv.fr/rncp/>, (Accessed 2016.
09. 20), [Keyword :CNCP]

프랑스 파리-수도권 상공회의소, <http://www.cci-paris-idf.fr/>, (Accessed

2016. 09. 20), [Keyword: contrat d'apprentissage]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http://www.q-net.or.kr/>, (Accessed 2016. 19. 20),
[Keyword: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google.be/url?sa=t&rct=j&q=&esrc=s&source=web&cd=2&ved=0ahUKEwiFq8K2sZfQAhWIUbwKHeVKAqkQFgglMAE&url=http%3A%2F%2Fenseignement.catholique.be%2Fsegec%2Ffileadmin%2FDocsFede%2FFESEc%2Fspecialise%2FDuProfilAuProgramme2005.ppt&usg=AFQjCNFtyI4S3NaAcJX-DBMDTHNC_LIpQw&bvm=bv.137904068,d.dGc, (Accessed 2016. 10, 15),
[Keyword: PQ, PF]

9. 인터넷 신문

<http://news.mk.co.kr/>, 매일경제, 2016, 01, 20, (Accessed 2016. 11, 14),
[Keyword: 안마사, 피부미용사]

<http://www.cosinkorea.com/>, 코스인뉴스, 2013. 09. 16, (Accessed 2016. 09. 10), [Keyword: 학점은행제]

<http://www.etnews.com/>, 전자신문, 2015. 01. 16, (Accessed 2016. 11, 14),
[Keyword: 미용기기, 남인순]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2015. 01.08, (Accessed 2016. 11, 14), [Keyword: 미용기기]

<http://www.healthtomato.com/>, 헬스토마토, 2015. 02. 02, (Accessed 2016. 11, 14), [Keyword: 미용기기]

ABSTRACT

Comparative Study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Beauty Professional Training Systems and National Qualifications Systems

-Focusing on Francophone Countries-

Baek, ji-yeon

Skin care and Coordination Major

Dept. of Convergence Beauty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Beauty

Sungshin Women's University

With the prevalence of unqualified skin care due to lack of official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of skin care specialists, the necessity for a more realistic maintenance of qualification systems that can protect consumers within the legal system and objectively prove occupational ability emerged. Skin care specialists performing skin care in the beauty industry were included in general beautician qualification related to hair in the past but as the beauty industry specialized and segmented, and in 2008 it was separated from the beautician (general) qualification to a

national qualification of beautician (skin).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compare beauty profession training and skin care specialist qualification system of Korea to beauty profession training and skin care specialist qualification systems of Francophone countries with developed vocational training systems and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s to determine the problems of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in Korea and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a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 and ideal link between vocational training and qualification system. Compared to studies related to qualification systems of other various developed countries, it is difficult to find studies about skin care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s of Francophone countrie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nd because there is relatively few study results apart from France compared to and from countries, the study aimed to analyze beauty vocational training and qualification system focusing on Francophone countries.

For this the study was conducted mainly based on documentary study. For domestic skin care specialist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and vocational training, a method of utilizing existing previous studies and related literature was selected and regarding progress on countries, due to the low availability of existing data, international papers, study reports, published material, related legislations, and various government institution websites were utilized to collect secondary data.

As a result of analyzing and comparing various data, it could be determined that beauty vocational training and qualification system in

Korea was in an unstable state compared to from countries. First problem is related to the beauty vocational training system. In Korea, there are many cases where skin care specialist qualification acquisition education process is short term, and there is no vocational training process where degrees and skin care specialist qualifications can be acquired does not exist. However, Francophone countries conduct beauty vocational training from the secondary education process and includes qualification systems in long-term education process so that degrees and qualifications can be acquired through national examinations and federal exams through a specified period of education and process. Theoretical education, practical education, and practical training is included in the education process and it has the advantage that practical experience from actual training can be effectively built through apprenticeship training system and practical training. According to nations, practical training is mandatory for acquiring qualifications.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relation to degrees or qualifications in Korea and although graduating from department of cosmetology a degree and beautician(general) license is given, but because it is not acquiring qualification, there is difference from francophone countries. Also because work - study concurrent process evaluation type qualification that can be acquired through the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NCS) system at a approved college's beauty department or vocational school does not result in a skin care specialist qualification but a beautician(general) qualification and this means that it is not a degree process directly related to skin care specialist qualification system. It is determined that it will be possible to

nurture quality beauty personnel through increase of quality of education in the long-term through introducing degree - qualification link system in skincare education process in Korea. In addition, if work-study concurrent system education process utilized in vocational training system of Francophone countries is introduced, effective adaptations can be made to the field through rapid acquisition of vocational abilities necessary for practice. Also because professional and intensive education can be expected from degree - qualification link system based on work - study concurrent system, it is determined that can contribute to specialization of the occupation of skincare specialists through development of various education programs. Even today when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NCS) system has been introduced, there is still much controversy on the problem of thinking between vocational training and qualification system. When acquired vocational ability and qualification is devaluated or if it has weak connection with practical ability, one could be turned down from the labor market or cause various problems in performing the actual job. There needs to be a more efficient plan so that learners can have a favorable position in the labor market and engaged in active expansion with the acquired modifications through operating a more stable vocational training and qualification system.

Second is the problem of use of beauty equipment and unclear job standards. The public sanitation management act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states that skincare specialist can use beauty equipment for care but in Korea there is still no beauty equipment

related legislation. If a skin care specialist uses medical equipment, they receive administrative measures according to public sanitation management and it is illegal as it corresponds to unlicensed medical practice under medical law. However, most beauty equipment used in aesthetics and shops are categorized as medical equipment. Senator Nam In-sun (Initiative representative) and 15 members of Parliament initiated 'public sanitation management act partial amendment' that involves legalizing skin beauty equipment on 2014 December 22, but this remains pending. If safety is obtained through system migration of categorization system and related laws that can clearly divide beauty equipment and medical equipment, it can guarantee consumer safety and lead to qualitative improvement of beauty service and growth in the beauty industry. Also it is determined that if laws that enable legal use of beauty equipment not responding to medical equipment is established, it will be possible to reduce similar medical practices and side effects that occur due to illegal use of medical equipment by skincare specialists. In addition, the job criteria between masseuses and skincare specialists must be clearly regulated. While masseuses claimed that skincare specialists cannot perform massages or acupuncture as it is the unique domain of masseuses, because the terminology of massage is widely used internationally in the skincare field and also in the perspective of customers, there are frequent cases where manual techniques terminology cannot be understood, inventory for use of terminology is required to increase understanding and indicate massages related to skin care. Because there are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purpose of skincare and massages and between job scope of skincare

specialists and masseuses, there needs to be realistic plans to make it compatible through mutual recognition.

Third problem is the lack of detailed indication of job scope and required abilities. While Francophone countries specifically regulate job scope and required abilities of skincare specialists in various aspects, in Korea, job description suggested by public sanitation management act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is brief and it also does not have clear standards like equipment related matters. Unlike Korea, Francophone countries have wide and detailed job scope of skin care specialists. There is necessity to more actively suggest techniques used in the actual job, scope of work, and required abilities like Francophone countries.

The fourth problem is the fact that there is no step-by-step qualification system. While Francophone countries categorize and manage skincare specialist qualifications according to stages or have upper qualifications and specialist jobs based on the base skincare specialist qualification, in Korea there is only the master beautician qualification related to skincare specialist. However, because master beautician qualification holds the concept of total beauty rather than master skincare qualification, it is difficult to see it as an upper qualification of skincare specialist. Francophone countries give the opportunity to acquire advanced qualification through progressing into upper level education process after acquiring the basic qualification. There are differences in job scope and occupation available according to qualification stage and level and upper-level vocational education has the purpose of nurturing

quality personnel that can conduct a more specialized and detailed tasks. If Korea also segments vocational training process and introduce stepwise qualification system, it is determined that it will be possible to greatly contribute to specialization of qualification and nurturing of advanced level personnel.